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1995. 12.

남 궁 영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報告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서 發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 문

경제특구전략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자본주의 선진국, 수출경쟁력 확보와 대외무역의 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전환을 위한 수단으로서 개혁·개방정책하에서 이 전략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특구전략을 근간으로 경제개방정책을 시작하여 오늘날 고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러시아, 동유럽, 베트남 및 북한까지도 경제특구를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북한의 나진·선봉 경제특구정책은 '시장경제체제와의 계획되고 규제된 타협'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위기에 대응한 북한식 개방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개방은 중국의 개방과는 달리 對內經濟의 개혁이 수반되지 않고 있으며, 개방전략도 전방위적 개방이 아니라 나진·선봉에 국한된 제한적 성격의 개방이기는 하지만 주체경제와 자력갱생의 원칙을 주장해 오던 북한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변화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 경제특구의 투자환경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위하여 거시적 투자환경, 중간적 투자환경, 미시적 투자환경으로 나누어 각각의 주요 투자요소들을 분석하였으며, 북한 투자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상대평가를 위

하여 사회주의권 국가이며 외자유치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베트남과 비교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가 북한경제 실상에 대한 연구 및 對北 경제협력정책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995. 12.

民族統一硏究院

北 韓 硏 究 室

요 약

본 연구는 북한 투자환경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위하여 거시적 투자환경, 중간적 투자환경, 미시적 투자환경으로 나누어 각각의 주요 투자요소들을 분석하고, 북한 투자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상대평가를 위하여 같은 사회주의권 국가이며 외자유치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베트남과 비교 분석한 것이다.

1. 경제특구란 무엇인가?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라는 용어는 1979년 중국이 대외개방정책의 일환으로 동남부 연해 4개 지역에 대해 사용한 명칭이다. 그러나 이제 경제특구는 중국의 경제특구만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세계 각국에서 법적 또는 제도적으로 국내의 다른 지역과 구분하여 생산, 무역, 조세상의 특별한 대우가 주어지는 자유무역지대, 수출자유지역, 수출가공구와 같은 지역을 총칭하는 것으로 보편화되었다.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의 정의에 따르면 경제특구란 "어떤 한 국가 내에 정책적으로 특별히 선정된 공업단지지역으로, 이곳에 진출하여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련의 우대조치를 적용시켜 줌으로

써 국내 및 외국 기업들이 해당 지역에 진출, 기업을 설립하여 경영활동을 벌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설정된 지역"이다.

경제특구전략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자본주의 선진국, 수출경쟁력 확보와 대외무역의 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주목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을 위한 수단으로 개혁·개방 정책하에서 이 전략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경제특구전략을 근간으로 경제개방정책을 시작하여 오늘날 고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러시아, 동유럽, 베트남 및 북한까지도 경제특구를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2. 북한의 경제특구 설치 배경

북한 당국은 1991년 12월 정무원 결정 제74호로 나진·선봉 지역의 621km^{2}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함으로써 경제특구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93년에는 나진시와 선봉군을 통합하여 정무원 산하의 직할시로 승격시키는 한편,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은덕군 원정리, 훈융리를 포함하는 중국 국경 쪽의 125km^{2}를 추가함으로써 지대의 총면적을 746km^{2}로 확장시켰다.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관련, 북한 정무원 결정 제74호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나진시의 14개 동, 리와 선봉군의 10개 리를 포함하는 621km^{2}의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한다.

②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합영, 합작, 외국인 단독기업을 허용한다.

③ 투자하는 나라에 대한 제한이 없다.

④ 국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투자한 자본과 재산, 기업운영을 통하여 얻은 소득과 기타 소득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⑤ 개발지대 안의 나진항, 선봉항과 함께 인접지역에 있는 청진항을 자유무역항으로 한다.

⑥ 기업소득세의 감면을 비롯한 여러 가지 특혜조치를 취한다.

북한이 1991년 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고 1993년에는 그 면적을 확장하는 등 경제특구정책을 추진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대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첫째 대내적 요인을 살펴보면, 북한의 심각한 경제침체문제이다. 북한은 제3차 7개년 경제계획기간(1987~93) 동안 연평균 7.9%의 성장목표를 세웠으나 동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7%를 기록하였다. 또한 외화부족에 따른 원부자재의 수입감소와 에너지 부족으로 공장의 평균가동률도 30~40% 밖에 되지 않았다.

더욱이 경제침체 타개책의 일환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 직접투자 형태의 자본도입정책을 추진하였으나 1984년

9월 「합영법」 발표 이후 1993년 말까지 10년 동안 북한의 외자유치실적은 140여 건에 금액으로는 1억 5천만 달러 정도(조총련과의 합작이 90%)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경제특구의 설치는 조총련 일변도의 외자유치정책에서 탈피하여 서방 선진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경제특구설치는 일부 지역에 한정된 경제개방정책으로서 東歐와 같은 전면적 개방의 경우에 수반되는 정치체제 변화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은 746km^2 면적의 자유경제무역지대를 내부경제로부터 차단·관리하기 위하여 1993년 말부터 지대 주위에 높이 3.6m, 길이 80km의 울타리를 건설하고 있다.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입안·확장에는 대내적인 요인 못지 않게 대외적인 요인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첫째, 중국의 경제특구 성공 사례가 외화부족과 만성적인 경제부진의 어려움에 처한 북한에 영향을 주었다.

둘째, 1991년 말 북한이 나진·선봉지역에 경제특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1990년 7월 장춘에서 열린 동북아 지역개발회의에서 중국이 발표한 훈춘개발계획에 대응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중국의 훈춘개발계획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북한이 이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두만강지역개발에 대한 주도권을 중국이 갖게 되어 중계무역기지로서의 잠재력이 큰 나진·청진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게 동해로의 출로만을 열어주게 되어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외자유치 면에서도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된 것이다.

3. 북한 경제특구 투자환경

북한 경제특구지역과 중국, 베트남의 투자환경 일반을 비교분석해 보면 거의 대부분 분야에서 북한이 중국, 베트남보다 뒤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중국·베트남 3국의 투자환경비교를 위해 거시적 투자환경(시장성, 생산 Cost), 중간적 투자환경(정치·사회적 위험도, 경영관리제약), 미시적 투자환경(세제혜택, 인프라)에서 제시한 6가지 주요 항목 가운데 북한이 비교적 양호한 입장에 있는 투자환경조건으로는 생산 Cost(노동력, 지대·임대료)부문과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관세 등의 세제혜택 부문뿐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투자유치경쟁국인 중국, 베트남의 임금, 노동의 질 등을 북한과 비교해 보면 베트남은 소득수준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단순 노동력이 풍부하며 임금수준이 월 50달러 정도로 가장 낮은 편이다. 중국은 기본급(약 50~60달러) 외에 회사가 부담하는 성과금, 보험료, 연금 등 사회복지 관련 부담금이 기본급의 150~200%에 달하여 실제 지급액은 기본급의 2

~3배(100~180달러) 정도이며, 최근 들어 급격한 임금상승과 심각한 고급인력난 등의 문제가 있다. 북한 자유경제무역지대 내 임금수준은 약 100달러 정도(최저임금 75달러)로 노동의 질을 고려한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북한이 투자유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베트남에 비교하면 2배에 달하고 있어 생각보다 투자유인이 크지는 않다.

한편 토지가격체계는 지역, 용도, 토지등급, 인프라조건 등에 따라 다양하고 매우 복잡하여 평면적으로 북한과 중국, 베트남을 비교하는 데는 문제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북한의 토지 관련 비용은 중국, 베트남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장려기업에 대해서는 토지임대료를 처음 3년간 면제와 그 이후 3년간 50%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는 반면,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에는 외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토지임대료 및 건물임대료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지 관련 비용에 대해서 북한이 유리한 위치를 갖게 될 것이다.

북한은 거시적 투자환경과 중간적 투자환경 등 실질적인 투자환경이 중국보다 열세에 있음을 감안하여 세율혜택 등의 잠재적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미시적 투자환경 측면에서 중국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소득세는 전반적으로 베트남과는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낮다. 중국이 외국투자

기업에 대한 소득세를 일반 지역에서 33%를 부과하는 데 비해 북한과 베트남은 25%를 부과하고 있다. 경제특구의 경우도 북한이 14%로 중국의 15%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 또한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과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 건설부문 등과 같은 투자장려 부문의 경우 중국의 기업소득세가 15%, 베트남이 10~20%인 반면 북한은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외국인의 개인소득세에 대해서도 북한이 월 2,000북한원(약 930달러) 이하는 면세이고 소득액에 따라 초과누진세를 4~20%까지 부과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월 800元(약 95달러)까지 면세하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5~45%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베트남은 월 500만동(약 450달러)이하는 면세이고 초과소득액에 대해서는 10~50% 초과누진세를 적용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중국, 베트남과의 사이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상사주재원이나 파견 근로자의 개인소득세 납부를 면제받는 등 이중과세의 부담이 없으나 북한과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이중과세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북한은 투자환경요인으로 앞서 제시한 6가지 주요 항목 가운데 시장성, 정치·사회적 위험도, 경영관리제약, 인프라의 4개 항목에서 열악한 환경조건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속적인 경제침체와 경직된 사회주의 통제경제의

결과로 열악한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EU 등 제3국으로의 우회수출기지로서의 활용이 어려워 해외투자를 하는 필요조건에 해당하는 수출시장 확보 자체에 문제가 있는 상태이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는 개혁·개방의지가 권력 상층부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외국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최근 북한의 부분적인 개방은 체제개혁 의지 없이 자력갱생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당장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는 최근의 외자유치 성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1979년 개혁·개방이 추진되기 시작한 이래 1994년 말까지 투자유치건수 22만 1,718건에 투자계약액은 3,03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경우는 1986년 도이모이 이후 개혁·개방에 박차를 가한 결과 1988년에서 1994년 말까지 투자유치건수 1,176건에 111억 6천만 달러의 투자유치실적을 이루었다. 반면 북한은 1984년 9월 「합영법」을 발표한 이후 1993년 말까지 투자건수 144건에 총투자액은 1억 5천만 달러에 머물고 있다.

외국투자기업의 경영관리에 있어서도 북한은 물자구입, 내수판매, 외환관리 면에서 모두 중국·베트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며, 노무관리는 비슷한 수준으로 여겨진다. 베트남·중국의 경우 외국투자기업이 독자적으로 물자구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은 물자

구입시 국내물자 우선구입 강제원칙과 국내물자 구입도 국제가격기준에 따르게 하고 있다.

외국투자기업의 내수판매도 중국, 베트남에서는 제한규정이 없으나 북한은 독자적인 내수판매를 제한하고 있으며, 내수판매대금의 태환성 외환으로의 교환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북한에서는 외국투자기업은 외화수지균형 의무에 따라 필요한 외화를 자체 조달할 수밖에 없는 반면 베트남은 외화수지균형 의무가 있으나 내수판매대금의 외환교환을 부분적으로 인정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외화부족을 보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으며, 중국은 1994년 1월부터 외환매입에 제한이 없는 개방적 외환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노무관리에 있어서는 중국, 베트남에서는 직접 고용이 가능한 데 비하여 북한에서는 노동행정기관을 통한 고용만이 가능하다는 면에서는 조건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쟁의와 관련, 북한에서는 국가적 통제에 의해 파업발생 가능성이 낮은 편이나 베트남은 일반 근로자들이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새로운 노동법이 승인되었으며, 중국에서도 우리 나라의 노동조합에 해당되는 공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규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노무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인프라부문 또한 북한의 투자환경요인에서 가장 열악한 분야이다.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우도 인프라 설비의 미비가 외자

유치의 가장 큰 장애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중국에서는 개혁·개방에 따른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프라 시설 확충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프라 시설도 빠른 속도로 확충되고 있다. 해륙 연계의 관문에 위치한 나진·선봉지역은 현재에도 러시아, 중국과 철도 및 도로가 연결되어 있으며 지대 내와 인근지역에 나진, 선봉, 웅상, 청진항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철도의 대부분이 단선이며, 전력부족에 따른 철도운송 속도문제, 열악한 도장포장률, 화물처리능력, 항만하역시설 면에서 개발의 여지를 너무 많이 남겨 두고 있다. 또한 전력생산의 부족은 공장가동률 하락(30~40%)과 수송애로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통신분야는 인프라 시설 가운데 가장 취약한 상태이다.

4. 전망

이상과 같이 북한의 투자환경은 저임 노동력과 세제혜택 면에서 다소 관심을 끌 수 있으나 그 이외의 투자여건은 열악하기 때문에 북한의 외국인 투자유치 성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외자유치를 활성화시킬 수 없으며 획기적인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것은 북한의 실질적인 투자환경 제약요인이 시장성 부재나 경영관리제약, 인프라 미비 등의 문제보다도 제한적 개방노선으로 표현되

는 철저하지 못한 북한의 개혁·개방의지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대외개방과 함께 체제내적인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북한의 외자유치정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것이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침체의 극복도 어려울 것이다.

목 차

제Ⅰ장 서 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방법: 투자대상국 선택기준 4

제Ⅱ장 경제특구란 무엇인가? 7

1. 경제특구의 정의 7

2. 경제특구의 유형 8

가. 무역형 8

나. 공업·무역형 9

다. 과학기술형 11

라. 종합형 12

3. 경제특구 설치 목적 13

제Ⅲ장 북한 경제특구 설치 배경 및 개발계획 18

1. 경제특구 설치 배경 21

2. 자유경제무역지대의 법적 지위 24

3.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계획 27

가. 사회간접시설부문 29

나. 공업지구개발 34
다. 관광·서비스부문 35

제Ⅳ장 북한 경제특구 투자환경: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36
1. 거시적 투자환경 36
가. 시장성 36
1) 내수시장 37
2) 수출시장접근 39
3) 외자도입실적 47
나. 생산 Cost 56
1) 노동력 56
2) 지대·임대료 61
2. 중간적 투자환경 69
가. 정치·사회적 안정성 69
나. 경영관리제약 77
1) 물자구입 77
2) 제품판매 79
3) 외환관리 82
4) 노무관리 86

3. 미시적 투자환경 91
가. 세제혜택 91
1) 기업소득세 91
2) 소득세 감면 94
3) 개인소득세 96
4) 재투자시 소득세 감면 98
5) 관세 98
6) 송금세 101
나. 인프라 101
1) 수송망 102
2) 전력 111
3) 통신 113

제Ⅴ장 결론: 종합평가 120
1. 북한의 비교우위부문 120
2. 북한의 비교열위부문 124

참고문헌 128

부 록 139

표 목차

<표 2-1> 아시아의 주요국별 EPZ 설치 현황 10

<표 3-1> 나진·선봉지역의 인문지리적 조건 20

<표 3-2>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우대조치의 주요 내용 26

<표 3-3> 나진·선봉지역 개발계획의 투자규모 28

<표 3-4> 사회간접시설 확충계획 32

<표 3-5> 공업지구 건설계획과 유치 희망 업종 33

<표 3-6> 관광·서비스부문 개발계획 35

<표 4-1> 북한·중국·베트남의 경제성장률 추이 38

<표 4-2> 미·일·EU의 원산지 판정기준 40

<표 4-3> 미국의 MFN 및 Column 2 관세율 비교 44

<표 4-4> EU의 협정관세율 및 일반관세율 비교 46

<표 4-5> 국가별 연도별 외국인 투자현황
(1993년 말 기준) 49

<표 4-6> 업종별 투자유치 현황(1993년 말 기준) 50

<표 4-7> 베트남의 외자유치 현황(승인기준) 52

<표 4-8> 대베트남 10대 투자국(1988~94년 8월 현재) · 53

<표 4-9> 중국의 외자유치 현황 54

<표 4-10> 대중국 10대 투자국 55

<표 4-11> 북한의 임금수준 57

<표 4-12>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 임금수준 60
<표 4-13>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토지 관련 비용 64
<표 4-14> 베트남의 기본토지임대료 67
<표 4-15> 북한·중국·베트남의 토지 관련 비용 비교
(공업용지 기준) 68
<표 4-16> 북한의 외채 현황 72
<표 4-17> 합영회사의 물자구입방법 79
<표 4-18> 합영회사의 판매순위 81
<표 4-19> 북한·중국·베트남의 경영관리제도 비교 90
<표 4-20> 베트남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일반지역) 93
<표 4-21> 북한·중국·베트남의 세제혜택 비교 100
<표 4-22> 청진항 시설능력 109
<표 4-23> 나진항 시설능력 110
<표 4-24> 전화보급률 비교 115
<표 5-1> 북한·중국·베트남 투자환경 평가 121

부록 목차

<부록 1>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형태 141
<부록 2>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비교 142
<부록 3> 북한의 경제특구내 외국인투자 유치 희망
프로젝트 리스트: 인프라부문 143
<부록 4> 북한의 경제특구내 외국인투자
유치 희망 프로젝트 리스트: 공업부문 145
<부록 5> 북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각종 사용료 수준 150
<부록 6> 자유무역항(나진, 선봉, 청진) 요금 151

제 I 장 서 론

1. 연구목적

1970년대 후반 이후 구조적 침체를 보이기 시작한 북한경제는 1980년대 말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 및 소련의 붕괴에 따른 대외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하여 위기상황을 맞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들어서는 대외교역의 50% 이상을 차지하던 대소교역이 극감하였고 중국마저 우호가격이 아닌 국제시장가격 적용과 경화결제를 요구함으로써 북한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1)]

북한이 1991년 12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를 공표하면서 시작된 경제특구정책은 이와 같은 경제난 타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대외개방을 통한 선진국의 자본·기술 없이는 회복이 어려운 북한의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후 북한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유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2년 헌법개정시 외국인투자의 헌법적 근거조항을

---

1) 1970년대 후반 이후 1980년대 말까지 북한경제는 연평균 경제성장률 2~4%로 침체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1990년에 -3.7%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1994년까지 5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US CIA,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8); 통일원, 「남북한 경제지표」, 각년도.

신설하는 한편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외국인투자기업노동규정」 등 28건의 외자유치 관련 법규 및 시행규정을 제정 혹은 개정하여 법적 투자환경의 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또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규모투자를 유치하여 이 지역을 동북아지역에서의 국제화물 중계기지, 수출가공기지 및 국제적 관광기지로 개발하기 위해 미국,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등 서방 각국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나진·선봉 개발계획은 '시장경제체제와의 계획되고 규제된 타협'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위기에 대응한 북한식 개방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개방은 중국의 개방과는 달리 대내경제의 개혁이 수반되지 않고 있으며, 개방전략도 전방위적 개방이 아니라 나진·선봉에 국한된 제한적 성격의 개방이기는 하지만 주체경제와 자력갱생의 원칙을 주장해 오던 북한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변화임에 틀림없다.

남북한 경제관계에 있어서도 1991년 12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서 1992년 5월에는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실현시키기 위해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1992년 10월 제정된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및 「외국인기업법」은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

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축적인 법해석에 따라서 남한 기업들도 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놓고 있다.[2)]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미국, 일본과의 관계정상화 및 미·일과의 경협을 위한 전략의 성격이 짙고, 당국을 배제한 채 남한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북한의 대남전략은 별로 달라진게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을 통하여 상호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체의식을 고양하여 통일기반을 구축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남북 모두 실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은 우리 입장에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적절한 대북경협정책과 투자전략을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북경협정책이나 투자전략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북한 경제특구의 투자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북한 투자환경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위하여 거시적 투자환경, 중간적 투자환경, 미시적 투자환경으로 나누어 각각의 주요 투자요소들을 분석할 것이며 북한 투자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상대평가를 위하여 같은 사회주의권 국가이며 외자유치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베트남과의 비교를 시도하고자 한다.

---

2) 1984년 제정된 「합영법」에서는 "재일상공인을 비롯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도 합영법에 근거하여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남한 기업의 투자를 사실상 배제하였다.

2. 연구방법: 투자대상국 선택기준

해외투자를 위한 환경조건은 크게 거시적 투자환경, 중간적 투자환경, 미시적 투자환경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3)]

① 거시적 투자환경(macro investment climate): 시장성, 노동력, 자원 등과 같이 외국기업이 투자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에 해당하는 요소들

② 중간적 투자환경(meso investment climate): 합작 또는 외국인 기업의 운영을 제약하는 정치·사회적 위험이나 정책, 관행의 유무

③ 미시적 투자환경(micro investment climate): 조세·관세의 감면 등과 같은 인센티브 및 사회간접자본 수준

해외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차원의 모든 투자조건들이 가능한 한 충족된 곳을 투자대상국으로 선택할 것이나, 이중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해외투자의 필요조건 또는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거시적 투자환경이다.

해외투자의 목적은 분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 크

---

3) Victor F. S. Sit, "China's Export-Oriented Open Area," *Asian Survey,* Vol. XXVIII, No. 6 (June 1988), pp. 661~75; J. H. Dunning, "Explaining the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Position of the Countries: Toward a Dynamic or Developmental Approach," *Weltwirtschaftliches Archiv,* 117 (1981), pp. 30~64.

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수출시장의 확보이다. 투자대상국 자체의 내수시장 개척이나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우회수출기지로서의 현지투자 진출, 선진국에서 부과하는 수출할당(trade quotas) 등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외투자가 이에 속한다. 둘째, 자국의 경제성장에 기인하여 산업구조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지식 집약적 산업으로의 이행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을 위한 해외투자로서 이는 주로 저렴한 임금의 노동력이 풍부한 개도국에의 진출을 들 수 있다. 셋째로는 자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개발투자이다.[4)]

따라서 투자유치가 이루어지려면 투자대상국의 입장에서 시장성, 노동력, 자원 등의 면에서 비교우위적 요소가 존재해야만 하지만 이러한 거시적 투자환경이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충분조건이라 할 수는 없다. 많은 개도국들이나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체제, 산업정책, 관료적 절차 등은 외국기업의 투자기피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합작 또는 외국인기업의 운영을 제약하는 정책이나 관행의 존재유무는 투자대상국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요소라고 할 수 있다.

---

4) 해외직접투자의 목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외에 선진기술을 획득할 목적으로 선진국에 현지투자 진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투자대상국으로 사회주의 개도국(북한, 중국, 베트남)을 대상으로 함으로 제외하였다. 이러한 해외투자의 목적은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또는 세 가지가 복합적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외국투자에 영향을 주는 중간적 투자환경으로는 수출입통제, 불리한 관세·조세제도, 특정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엄격한 노동법규, 투자신청·승인·등록 절차의 복잡성(red tape)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해외자본을 유치하려는 국가가 여러 담당부서에서 처리되는 외국투자 관련 사항들을 한 기관에서 처리케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일괄처리방식(one-stop approach)을 도입하고 있는 것도 중간적 투자환경 개선조치의 일환인 것이다.

미시적 투자환경의 주요 요소는 합작 또는 외국기업의 이익을 증대시켜 주기 위한 인센티브조치로서 조세감면, 소득세율 저하, 관세혜택 등이 있으며 임금통제, 파업금지 등 노동통제를 통한 투자유인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과실송금보장, 국유화방지 보장 및 국유화시 정당한 배상, 정당한 분쟁해결 절차 등의 조치들과 운송, 통신, 동력 등 사회간접자본의 발달상태 및 사용 비용 등도 미시적 투자환경에 포함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Ⅰ장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경제특구의 정의, 유형 및 목적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북한 경제특구 설치 배경과 개발계획을 분석한다. 제Ⅳ장에서는 북한 경제특구의 투자환경을 거시적·중간적·미시적 환경요인에 따라 중국·베트남과 비교 분석하며, 제Ⅴ장에서는 북한 경제특구의 투자환경을 종합평가한다.

제Ⅱ장 경제특구란 무엇인가?

1. 경제특구의 정의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라는 용어는 1979년 중국이 대외개방정책의 일환으로 동남부 연해 4개지역에 대해 사용한 명칭이다. 그러나 이제 경제특구는 중국의 경제특구만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세계 각국에서 법적 또는 제도적으로 국내의 다른 지역과 구분하여 생산, 무역, 조세상의 특별한 대우가 주어지는 자유무역지대, 수출자유지역, 수출가공구와 같은 지역을 총칭하는 것으로 보편화되었다.[5]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의 정의에 따르면 경제특구란 "어떤 한 국가 내에 정책적으로 특별히 선정된 공업단지지역으로, 이곳에 진출하

---

5) 1960년대 후반 개발도상국들이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이용한 가공무역의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함으로써 경제특구는 수출드라이브에 의한 경제발전전략의 수단으로 급증하였다. 대만의 까오쑹(高雄) 수출가공구, 한국의 마산 수출자유지역은 1960~70년대 수출드라이브정책의 대표적 예이다. 1980년대에는 중국이 대외개방정책의 추진과 함께 종합형 경제특구를 설치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체제이행과정에서 경제특구 설치가 보편화되고 있다. 오용석, "세계 경제특구의 유형 및 전략과 남북한 경제통합에의 적응," 한국비교경제학회 編, 「남북한의 경제체제와 통합」 (서울: 박영사, 1995), p. 233.

여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련의 우대조치를 적용시켜 줌으로써 국내 및 외국기업들이 해당 지역에 진출, 기업을 설립하여 경영활동을 벌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설정된 지역"이다.[6]

2. 경제특구의 유형

경제특구의 유형은 추구하는 기능적 목표에 따라 무역형, 공업과 무역을 결합시킨 공업·무역형, 과학기술개발을 위한 과학기술형, 다목적성의 종합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7]

가. 무역형

무역형 경제특구는 국가가 어떤 특정 무역항 혹은 일부 지역을 지정해서 그곳을 통과하는 외국물자에 대해 관세를 면제할 뿐만 아니라 출입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일반 과세지역과는 구별해서 어느 정도의 자유를 인정하고, 방역업무도 면제하며 감독행위도 하지 않는 곳을 말한다. 무역형 경제특구에는 자유

---

6)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Export Processing Zones in Development Countries,* UNIDO Working Papers on Structural Changes, No. 19, UNIDO/ICIS 176, New York, August 18. 1980.

7) 오용석, "세계 경제특구의 유형 및 전략과 남북한 경제통합에의 적응," pp. 233~36.

항(free port)과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가 있으며, 여기서는 반입된 상품의 재수출, 또는 재포장·혼합·가공이 가능하다.[8]

나. 공업·무역형

공업·무역형은 자유무역지대와 공업단지의 혼합체로서, 자유무역지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대조치를 부여하면서, 한편으로는 공업단지가 갖는 관리 및 운송상 규모의 경제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대표적 형태는 외국으로부터 면세수입된 원료를 임가공하여 전량 수출하는 수출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이다.

수출가공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주도개발전략(export-drive development strategy)의 일환으로서 대만의 까오쑹(高雄), 닌쯔(楠梓)와 타이중(台中) 수출가공구, 한국의 마산과 이리 수출자유지역 등 아시아지역에서 활발히 설치되었다.[9] 세계은행에 의하면 1990년 현재 아시아지역의

---

8) Herbert G. Grubel, "Towards a Theory of Free Economic Zones," *Weltwirtschaftliches Archiv*, Band 18, Heft 1 (1982), p. 40. 최초의 자유무역지대는 13세기에 출현한 독일 함부르그(Hamburg) 자유무역지대와 브레멘(Bremen) 자유무역지대까지 소급될 수 있으나 근대적 의미에서의 자유무역지대는 1934년 미국의회에서 통과된 대외무역지대법(Foreign Trade Zone Act)에 따른 뉴욕의 브루클린(Brooklyn) 자유무역지대이다.

9) Peter G. Warr, "Korea's Masan Free Export Zone: Benefits and

수출가공구는 총 36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0] 수출가공구도 자유무역지대와 같이 특정지역을 격리하여 만드는 防柵型(fenced type)의 경우가 많으나 非防柵型(unfenced type)의 광역수출가공구도 적지않다.[11]

<표 2-1> 아시아의 주요국별 EPZ 설치 현황

	설 치 수	개 발 기 간	면 적(km^2)
대 만	3	1966~1971	1.82
한 국	2	1970~1973	1.14
말레이시아	11	1971~1980	7.00
태 국	3	1982~	1.13
인 도	2 4	1965~1975 1984~1993	1.62 1.57
파 키 스 탄	1	1980~	8.09
방글라데시	2	1980~1990	1.55
중 국	5	1979~	34,538.1
베 트 남	3	1988~	9.50

자료: World Bank

Costs," *The Developing Economies*, Vol. 22, No. 2 (June 1984), pp. 169~70. 아시아 최초의 수출가공구는 1965년 인도 정부에 의하여 세워진 칸들라(Kandla) 자유무역지대였으나 인도는 수입대체적인 공업화정책을 채택하여 수출가공구 개발에 소극적이었다.

10) World Bank, *Export Processing Zones,* Policiy and Research Series 20 (1992), p. 29.

11) 대표적인 비방책형 광역수출가공구로는 파나마의 콜론(colon) 자유무역특구, 브라질 아마존강 유역의 마나우스(manaos), 멕시코의 마킬라도라스(maquiladoras) 공단 등이 있다.

다. 과학기술형

과학기술특구는 産·學·住가 결합된 과학기술도시(Technopolis)를 형성하여 기술집약적 산업과 지식집약적 산업을 육성하고 고정밀 첨단산업제품의 개발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흔히 과학기술공업단지(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complex)로 불리는 과학기술특구의 건설을 미국, 일본, 싱가폴, 대만, 중국, 홍콩, 한국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1950년대 초에 캘리포니아주 스탠포드대학 부근에 세계 최초이며 최대의 테크노폴리스인 실리콘 밸리를 세운 이래 지금까지 전국에 걸쳐 80여 개의 과학기술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1970년대 말 규슈(九州)에 테크노폴리스 건설 프로젝트를 수립, 첨단기술제품에 대한 조세감면, 특별감가상각 인정, 자금지원보증 등의 특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테크노폴리스를 만드는데 성공하였다.[12] 그외에 대만의 新竹 科學工業園區가 있으며 중국은 52개의 高新 기술개발구를 운영하고 있다.

---

12) 오용석, "세계 경제특구의 유형 및 전략과 남북한 경제통합에의 응용," pp. 235~36.

라. 종합형

종합형 경제특구는 생산, 무역, 금융, 과학기술, 관광 등에 이르는 거의 모든 산업을 대외적으로 개방하고 외국기업의 투자와 경제활동에 대해 폭넓은 자유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광역지구이다. 따라서 종합형 경제특구는 대부분 투자촉진지역(investment promotion zone)으로서 수출가공구를 기초로 하면서 면적의 대규모성, 경영의 광범위성, 업종의 다양성, 정책의 다목적성 및 다기능성을 갖는다. 홍콩, 싱가폴, 중국의 5대 경제특구(深圳, 珠海, 汕頭, 廈門, 海南島)는 대표적인 종합형 경제특구이다.[13]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도 이러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① 자유무역항으로서의 화물중계기지, ② 제조업 중심의 수출가공기지, ③ 관광·금융·상업의 중심지로 개발하려 하고 있으며,[14] 면적에서도 일반 개도국의 수출가공구보다 훨씬 크다.[15]

---

13) 위의 논문, p. 236. 초기의 자유무역지대는 중계무역과 단순포장업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수출가공구가 보편화되면서부터는 지역 내에서 경영활동이 허용되는 업종의 범위가 다양화되었으며, 외국인기업의 투자진출도 허용되었다. 따라서 현재 자유무역지대와 가공수출구의 차이점은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황금의 삼각주, 라진·선봉 개발계획」 (1992.4), pp. 30~32.

15)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는 총면적이 746km^{2}로서 해남도(33,906km^2)를 제외한 중국의 4개 경제특구 총면적(632km^2)보다도 크다. 일반 개도국 수출가공구로서 지금까지 가장 큰 곳은 브라질의

3. 경제특구 설치 목적

경제특구 설치 목적은 국가마다 나름대로의 구체적 우선 순위에는 상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수출확대 및 수출다각화, 재정수입증가, 고용증대 효과, 선진과학기술 및 경영관리 방법 도입, 국제수지개선 및 외자도입, 지역발전 등의 측면에서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은 일치한다.[16] 오용석 교수는 경제특구전략의 목적을 내향적 동기와 외향적 동기로 구분한다. 내향적 목적은 내수시장이 크면서도 경제가 침체상태에 있는 선진국이나, 노동력과 천연자원이 풍부하면서도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이 외국인 직접투자유치와 선진기술의 도입, 고용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국내생산활동의 활성화, 국내산업발전의 가속화를 추구하는 경우이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경제특구전략은 특구지역을 격리하여 국내 여타지역과는 구별되는 우대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외자유치증대와 국내유치산업보호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나우스 수출가공구(16km^2)였다.

16) 아시아생산성기구의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경제특구 설치 목적은 단기적으로는 재정수입의 증대와 고용기회 확대에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두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선진과학기술과 경영관리경험을 도입하여, 수출을 확대하고, 국내물자를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N. Vittal, ed., *Export Processing Zones in Asia: Some Dimensions* (Tokyo: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1977).

경제특구의 외향적 목적은 수출경쟁력 확보와 대외무역의 확대이다.[17] 이를 위해서는 경제특구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가격 및 품질 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경제특구전략을 추진하는 국가는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각종 금융·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제공한다.[18]

이러한 경제특구의 목적에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것이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이다. 즉 다국적기업의 거대한 자본과 기술, 마케팅 능력과 현지의 원료 및 노동력의 결합으로 생산된 상품은 비교적 쉽게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이다.[19]

---

17) 1970년대까지만 해도 많은 개도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확대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투자승인시 제품의 일정비율 이상은 의무적으로 수출하도록 하는 수출단서(export requirement) 조항을 두어왔다. 인도의 경우 생산제품의 30% 이상을 수출하도록 하였으며, 인도네시아는 85%, 태국은 50%의 수출비율을 달성해야 했으며, 멕시코는 기업수입의 50%를 수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András Inotai, "Liberalization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rás Köves and Paul Marer, eds., *Foreign Economic Liberalization: Transformation in Socialist and Market Economy* (Boulder: Westview Press, 1991), pp. 101~04.

18) 오용석, "세계 경제특구의 유형 및 전략과 남북한 경제통합에의 응용," pp. 240~41.

19) 다국적기업이 주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Young Namkoong, "Political Economy of Korean Multinational Corporations: A Mercantilist Approach,"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1989), pp. 68~121 참조.

경제특구전략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자본주의 선진국, 수출경쟁력 확보와 대외무역의 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주목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을 위한 수단으로 개혁·개방정책하에서 이 전략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경제특구전략을 근간으로 경제개방정책을 시작하여 오늘날 고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러시아, 동유럽, 베트남 및 북한까지도 경제특구를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중국 경제특구전략의 목적 역시 등소평이 강조한 ① 선진기술 도입창구, ② 선진관리경험 도입창구, ③ 현대지식 도입창구, ④ 대외개방정책창구라는 '4개 창구'의 역할 수행을 통하여 특구 자체의 공업화를 가속화시키고 그것을 중국경제 전체에 확산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외개방지역으로는 5개 경제특구 외에도 14개 연해 개방도시와 106개 국가급 개발구(30개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국가과학위원회에서 허가한 52개 高新 기술개발구, 국가관광국에서 허가한 11개 관광개발구, 해관총서에서 허가한 13개 보세구)를 포함한 상당수의 개발구가 있다. 경제특구의 경우 종합적인 도시구조를 갖고 시장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으나 개방도시·개발구는 수출공단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20]

---

20) 대한무역진흥공사, 「북방통상정보」 (1993.8, 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편람: 증보판」 (1994), pp. 428~29.

한편 중국의 경제특구전략에는 이 지역에 시장경제체제를 도입시킴으로써 그것을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와 융합하게 하여 소위 중국식 사회주의체제를 구축하는 '경제체제개혁 실험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다.[21] 또한 경제특구를 발전시켜 홍콩·마카오의 주권을 회복하는데 있어 특구형식의 운용을 그 수단으로 삼고자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경제특구를 대만 통일전략을 위한 장기적인 포석으로 여기고 있다.[22]

아시아권의 수출지향적 공업화정책과 중국의 경제특구 개발전략은 베트남의 대외개방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다. 1986년 개혁·개방노선을 채택한 이래 수출가공구 개발정책은 베트남의 개방노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베트남은 경제특구의 명칭을 특별경제가공구(Special Economic Processing Zone)라 명명하고, 제품수출과 생산 및 수출 관련 제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업지역으로 육성하고 있다.[23]

---

21) 중국의 경제특구는 "레닌이 말한바대로 자본주의의 자금, 기술 및 경영관리경험을 이용한 사회주의 건설 이론에 관해 연구하고, 세계 각국에 설치된 자유무역구와 가공수출구의 경험을 빌려 중국경제의 구체적 상황과 결합시킴으로써 '四個現代化'를 촉진시키기 위한 중국 사회주의 경제의 일종의 보충형식"으로 정의되고 있다. 「中國經濟新聞」, 1981.6.29, 오용석, 「중국 경제특구의 평가와 한국기업의 대응」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1), p. 42에서 재인용.

22) "특구를 대만과의 무역창구로 하여 조국 통일의 전초 기지로 삼아야 한다," 「福建論壇」 (1982.2). p. 46, 中華經濟研究院 編, 白權鎬 譯, 「中國 經濟特區에 관한 研究」 (서울: 산업연구원, 1985), p. 11에서 재인용.

23) 베트남 「특별경제가공구규정」, 1991.10.18, 제1조.

베트남은 1988년 말 수출가공구 설치를 결정한 이래 그동안 남부 호치민市의 딴투언과 린쭝, 메콩델타지역의 칸토, 중부의 다낭 및 북부의 하이퐁지역에 수출가공구가 지정되었다. 이중에서 딴투언, 린쭝과 하이퐁지역의 수출가공구는 합작개발되고 있고, 다낭과 칸토지역은 최근 개발계약이 체결되어 공단조성이 시작되고 있다.[24]

24) 권율, 「베트남의 수출가공구 개발정책과 현황」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삼성경제연구소, 「베트남」 (1994.2), pp. 133~37.

제Ⅲ장 북한 경제특구 설치 배경 및 개발계획

북한 당국은 1991년 12월 정무원 결정 제74호로 나진·선봉 지역의 621km^{2}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함으로써 경제특구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93년에는 나진시와 선봉군을 통합하여 정무원 산하의 직할시로 승격시키는 한편,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은덕군 원정리, 훈융리를 포함하는 중국 국경쪽의 125km^{2}를 추가함으로써 지대의 총 면적을 746km^{2}로 확장시켰다.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관련, 북한 정무원 결정 제74호 요지는 다음과 같다.[25]

① 나진시의 14개 동, 리와 선봉군의 10개 리를 포함하는 621km^{2}의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한다.

②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합영, 합작, 외국인 단독기업을 허용한다.[26]

---

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황금의 삼각주: 라진·선봉」 (1993).

26) 일반적으로 합작투자란 지분참여방식과 비지분참여방식을 포함한다. 그러나 나라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형태를 달리 분류하기 때문에 용어는 다르지만 같은 내용일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 혼동을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합작투자(Joint Venture)라고 부르는 지분참여형 기업을 북한을 '합영기업'이라고 부른다. 북한과 비슷하게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직형태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이를 '중외합자경영기업'이라 하며, 베트남은 '합자기업'이라 부른다. 이 '합영기업'은 투자 당사자들이 공동출자하고 운영하여 이윤과 손실의 분배는 출자비율에 따르는 유한책임회사로서 북

③ 투자하는 나라에 대한 제한이 없다.

④ 국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투자한 자본과 재산, 기업운영을 통하여 얻은 소득과 기타 소득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⑤ 개발지대 안의 나진항, 선봉항과 함께 인접지역에 있는 청진항을 자유무역항으로 한다.

⑥ 기업소득세의 감면을 비롯한 여러 가지 특혜조치를 취한다.

경제특구란 개발도상국들이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선진국가로부터 도입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서 많은 개도국들이 이러한 전략을 운영했거나 또는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27]

한의 법인으로 등록된다. 이에 반해 '합작기업'은 일종의 생산분여 또는 기술공여 계약에 의한 투자기업으로서 우리 기업들이 생각하고 있는 합작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임가공사업인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은 "합작기업이란 우리쪽 투자가와 외국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쪽이 운영하며 계약에 따라 상대쪽에 투자몫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합영기업은 우리쪽 투자가와 외국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몫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라고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즉 경영권과 이윤분배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세번째 형태인 '외국인기업'은 말 그대로 외국인의 100% 단독투자기업으로 북한은 이를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다(<부록 2> 참조).

27) 그 예로는 타이완, 필리핀, 파키스탄, 타일랜드 등의 수출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 인디아의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싱가폴, 스리랑카의 공업단지, 중국의 경제특구(Special

<표 3-1> 나진·선봉지역의 인문지리적 조건

구 분	내 용
위 치	•두만강 하류 남쪽(북위 42° 05′ ~ 43° 동경 130° 07′ ~ 130° 45′ 사이)에 위치 •동쪽은 서수라에서 비소단까지 156km의 해안선을 따라 동해와 인접, 북쪽은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핫산과 인접
면 적	•개발지대의 총면적은 746km^2 •주민지구면적 2%(15km^2), 산업토지면적 3%(22km^2)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농림, 수면 토지 면적 •경사도 20° 미만의 개발구역면적 약 200km^2
기상·기후	•연평균 기온 6.3° C, 가장 추운 1월 평균기온 -8.8° C, 가장 더운 8월 평균기온 20.9° C •연간수량 770mm, 일조율 53%, 평균상대습도 70%
주 민	•인구는 약 13만명 •나진시를 먼저 약 30만명으로 늘리고 장차 개발지대의 총 인구를 100만명으로 확대 계획
자연자원	•인접지역에 철광석(무산광산 등), 석탄(아오지 탄광 등), 마그네사이트, 석회석, 고령토 등 지하자원과 산림자원, 풍부한 수산자원보유 •해안선을 따라 8개의 만, 44km^2의 자연호수가 있고 나진에서 80km 위치에 제2의 금강산이라는 칠보산이 있으며 다수의 온천, 약수터, 해수욕장이 있음.

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황금의 삼각주, 라진·선봉」 (1993) 참조 작성.

Economic Zone) 그리고 베트남의 특별경제가공구(Special Economic Processing Zone) 등이 있다.

1. 경제특구 설치 배경

북한이 1991년 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고 1993년에는 그 면적을 확장하는 등 경제특구정책을 추진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대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첫째 대내적 요인을 살펴보면, 북한의 심각한 경제침체문제이다. 북한은 제3차 7개년 경제계획기간(1987~93) 동안 연평균 7.9%의 성장목표를 세웠으나 동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7%를 기록하였다. 또한 외화부족에 따른 원부자재의 수입감소와 에너지 부족으로 공장의 평균가동률도 30~40% 밖에 되지 않았다.[28]

더욱이 경제침체 타개책의 일환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 직접투자 형태의 자본도입정책을 추진하였으나 1984년 9월 「합영법」 발표 이후 1993년 말까지 10년 동안 북한의 외자유치실적은 140여 건에 금액으로는 1억 5천만 달러 정도(조총련과의 합작이 90%)에 불과하였다. 이중 실제 설립된 것은

---

28) 북한 에너지 공급의 70%를 차지하는 석탄생산이 1991년 3,100만톤, 1992년 2,290만톤, 1993년 2,710만톤으로 계속 감소되고 있으며 구소련으로부터 연 100만톤 가까이 수입되던 원유가 최근 들어 중단상태이다. 또한 북한의 연간 전력수요는 500~600억kwh로 추정되고 있으나 1990~93년 동안의 연평균 전력생산량은 252억kwh로서 각 수요의 40~50%에 불과하다. 북한경제 실태에 대해서는 남궁영, "남북한 경제력 비교평가," 한국비교경제학회, 「남북한의 경제체제와 통합」 (서울: 박영사, 1995), pp. 56~92 참조.

100여 건 정도로 투자액은 평균 100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이며 그나마도 가동중에 있는 것은 70여 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9] 따라서 경제특구의 설치는 조총련 일변도의 외자유치정책에서 탈피하여 서방 선진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경제특구설치는 일부 지역에 한정된 경제개방정책으로서 동구와 같은 전면적 개방의 경우에 수반되는 정치체제변화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30] 이와 관련, 북한은 746km^2 면적의 자유경제무역지대를 내부경제로부터 차단·관리하기 위하여 1993년 말부터 지대 주위에 높이 3.6m, 길이 80km의 울타리를 건설하고 있다.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입안·확장에는 대내적인 요인 못지 않게 대외적인 요인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첫째, 중국의 경제특구 성공 사례가 외화부족과 만성적인 경제부진의 어려움에 처한 북한에 영향을 주었다. 중국의 경제특구정책은 ① 대외

---

29) 남궁영, "북한의 외자유치정책 운용실태와 성과분석," 「통일연구논총」, 제3권 1호 (1994) 참조. 이러한 북한의 외자유치 실적은 중국, 베트남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그 건수나 규모가 매우 저조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30) 북한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정 직후부터 나진·선봉지역과 청진항 동항지역의 주민성분 정리를 시작하여 보위부·안전부에서 정년퇴직한 사람 등과 같이 성분이 좋은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족통일연구원 간담회에서의 귀순자 증언, 1994.6.10.

무역의 확대와 대외무역업무의 축적, ② 외자이용에 의한 국면타개, ③ 외국선진기술의 도입, ④ 대외경제의 발전, ⑤ 세계각국 정부·국민과의 우호증진 및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지위향상이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둘째, 1991년 말 북한이 나진·선봉지역에 경제특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1990년 7월 장춘에서 열린 동북아 지역개발회의에서 중국이 발표한 훈춘개발계획에 대응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중국의 훈춘개발계획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북한이 이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두만강지역개발에 대한 주도권을 중국이 갖게 되어 중계무역기지로서의 잠재력이 큰 나진·청진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게 동해로의 출로만을 열어주게 되어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외자유치 면에서도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된 것이다.[31] 더욱이 북한은 중·러간에 추진되고 있는 훈춘-자루비노간 철도연결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중국의 흑룡강성과 길림성 물동량의 주요 출구가 러시아의 자루비노항이 된다면 나진·선봉·청진항이 확충된다 할지라도 충분한 물동량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1993년 이후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lan) 주도하의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물론, 자체적인 나진·선봉지대 개발에도 주력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32]

---

31) 김익수, 「두만강지역개발사업과 한반도」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p. 19.

32) 1992년 11월 중국은 러시아 극동의 자루비노항을 중계무역항으로

2. 자유경제무역지대의 법적 지위

북한은 외국인투자 유치의 부진요인 중의 하나가 북한내 투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투자환경의 미비로 파악하고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투자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최근에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출입규정」,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 상주대표사무소에 관한 규정」,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자유무역항규정」 등을 제정하였다.

관련기관(개발·운영주체)으로는 대외경제위원회와 지대당국이 있다. 대외경제위원회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 운영 및 집행대책을 수립하고 사회간접시설 건설부문에서 총 투자액 2천만원 이상의 대상과 그밖의 부문에서 총 투자액 1천만원 이상의 대상을 심의·승인한다.[33] 각종 투자법에 명시된 지대당국

이용하는 것을 러시아와 합의, 협정을 조인하였다. 이 협정에 의하면 러시아는 중국에 자루비노항의 사용권을 허용하는 대신 중국은 자루비노항의 확장 및 중국 훈춘과의 철도, 도로 건설에 모든 자금과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1993년 2월에는 상기협정에 따라 중·러간에 자루비노항 확장 및 중국 훈춘과의 철도 연결을 위한 2개의 합작회사가 설립되었다. JETRO, 「中國經濟」 (1993), p. 39.

33) 대외경제위원회 산하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1994년 4월 제9기 7차 최고인민회의 결정으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 및 외국인투자유치 전담기관이 되어 동 지대의 개발과 운영을 협의

으로서 나진·선봉시 행정경제위원회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운영을 직접관할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지대의 개발과 운영사업을 조직집행하며 지대 안의 모든 투자승인 신청을 접수하여 사회간접시설 건설부문에서 총 투자액 2천만원 이하의 대상과 그밖의 부문에서 총 투자액 1천만원 이하 규모의 대상을 심의·승인한다.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는 북한의 관할하에 있는 영토이면서도 특별히 제정되는 법적 제도와 질서에 따라 운영되는 지역이다. 즉 북한 당국은 동 지대 내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한 조정자적 역할만을 하게 되며 이 지대 안의 모든 기업체들은 경영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조정자 역할을 함에 있어서 국가기관은 종합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일부 국영기업에만 계획을 시달하며 그밖의 다수기업체들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된다. 또한 북한의 다른 지역에 비해 보다 전향적인 우대조치를 담고 있다(<표 3-2> 참조).

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이 지대에 투자하려는 기업들과 상담 및 기업창설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제공한다. 최근 산하기관으로 「경제개발총회사」를 설립하여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투자유치계약을 전담케 하고 있다.

<표 3-2>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우대조치의 주요 내용

비교항목	비자유경제무역지대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유형	•합작이나 합영기업	•100% 외국인투자도 허용
세 율	•기업소득세: 25% •기타소득: 20% •거래세: 규정세율	•기업소득세: 14% •기타소득: 10% •거래세: 규정세율의 50%
조세감면	•해당사항 감면 없음	•제조업: 3년간 면제 다음 2년간 50% 감면 •6천만원 이상 사회간접 투자: 4년간 면제, 다음 3년간 50% •수출입물자: 관세 면제
최저노임	•월 220원 (약 100달러)	•월 160원(약 75달러)
상품의 가격결정	•국제시장가격이나 국가가격재정 기관의 가격에 준거함	•판매자와 구매자의 합의로 결정(대중필수품 가격결정 제외)
외화관리	•허용 안됨	•외화유가증권거래 허용, 외화현금·외화유가증권의 자유반출입 허용
토지임대	•국토관리기관이 토지임대 •협상방법으로 임대 •장려부문: 10년 이내 범위에서 토지 사용료 감면, 면제	•지대당국이 토지임대 •입찰, 경매방법도 가능 •10년 이내 범위에서 토지 사용료 감면, 면제
외국인출입	•사증 소지	•초청장 소지자 무사증출입
사무소설치	•규정 없음	•상주대표사무소 설치 허용
은행설립	•합영은행만 설립 가능	•외국은행, 외국은행지점도 설립가능

3.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계획

1993년 3월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입안한 「라진·선봉지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을 3단계로 나누어 개발할 계획이다. 제1단계(1993~95)에서는 이 지역을 국제화물 중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시설을 정비하고, 제2단계(1996~2000)에서는 수출주도형 제조업에 외국인투자를 본격 유치하며, 제3단계(2001~10)에서는 중계무역, 수출가공, 금융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국제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34] 이에 따라 북한은 나진·선봉지대와 청진항 개발을 위해 총투자규모 69억 8,900만 달러의 사업을 외자유치를 통하여 추진할 계획이다.[35]

우선적으로 북한은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투자조건을 개선하여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한다는 목적하에 32억 3,885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합영·합작을 통한 외자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

34) 나진·선봉지역의 개발실적 부진으로 최근 들어서는 당면단계(1992~2000)와 전망단계(2001~2010)의 2단계 계획으로 발표되고 있다. 이배석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와 동북아세아 경제협력," 심양국제학술회의 북한측 발표논문, 1995.8.16~18.

3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황금의 삼각주: 라진·선봉, 투자대상안내」 (1993).

<표 3-3> 나진·선봉지역 개발계획의 투자규모

(단위: 만 달러)

	사업건수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합 계
인프라부문	19	120,227	102,088	101,570	323,885
항 만	3	37,560	40,550	87,600	165,710
철 도	6	15,812			15,812
도 로	6		20,680	13,970	34,650
공 항	1	46,765	26,092		72,857
통 신	2	4,090	14,766		18,856
전 력	1	16,000			16,000
관광부문	4	8,760			8,760
공업부문	68	284,495	11,140	70,620	366,255
신 흥	15	20,095			20,095
동 명	3	850			850
창 평	3	2,550			2,550
청 계	4	5,140			5,140
백 학	18	94,350			94,350
웅 상	4		6,590		6,590
관 곡	2		4,550		4,550
후 창	8			22,620	22,620
홍 의	2			48,000	48,000
기 타	9	161,510			161,510
총합계	91	413,482	113,228	172,190	698,900

주: 공업부문 외자유치 희망 프로젝트의 단계별 투자금액은 공업지구의 건설시기를 기준하였으며 기타지구는 1단계에 포함시킴.

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황금의 삼각주: 라진·선봉, 투자대상안내」(1993) 참조 작성.

가. 사회간접시설부문

이 계획을 단계별로 보면 1단계에서 12억 227만 달러, 2단계에서 10억 2,088만 달러, 3단계에서 10억 1,570만 달러가 소용될 전망이며, 항목별로는 항만확장 3개 사업에 16억 5,710만 달러, 선봉국제공항건설에 7억 2,856만 달러, 도로보수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3억 4,650만 달러, 통신사업 2건에 1억 8,856만 달러, 철도사업 6건에 1억 5,812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할 계획이다.[36]

북한은 港灣部門에서 현재 연간 1,300~1,400만톤 규모의 항통과능력(청진 서항 713만톤, 청진 동항 67만톤, 나진항 300만톤, 선봉항 200~300만톤)을 1단계(1993~95)에서 연간 2,500만톤(나진항 1,050만톤, 청진 서항 1,000만톤, 선봉항 400만톤)으로 확장한다. 2단계(1996~2000)에서는 연간 5,000만톤(나진항 3,000만톤, 선봉항 1,000만톤으로 확장, 청진항 1,000만톤)으로, 그리고 3단계에서는 나진항과 청진 동항의 항통과능력을 각각 연간 5,000만톤, 1,000만톤으로 확장하여 거의 1억톤에 이르는 항통과능력을 갖출 계획이다.[37] 이와 함께 각 항들의 기능을 전문화한다는 목표 아래 나진항을 연간 500만TEU(1단계에서

36) 투자방식에 있어서는 도로, 항만, 공항사업은 합작·합영형태 모두를 수용하고 있으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철도, 통신, 전력부문의 사업은 합작형태만을 허용하고 있다.

37) 청진 서항 확장공사는 1992년 하반기부터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다.

연간 15~20만TEU, 2단계에서 120만TEU, 3단계에서 360만 TEU 확장) 콘테이너화물을 취급하는 국제짐함(콘테이너) 전문항으로, 청진항은 곡물, 석탄, 광석 등 더미짐(벌크화물) 전문항으로, 그리고 선봉항은 원유전문항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鐵道部門을 보면 1단계에서 회령-학송(168km)간 철도전기화, 조산리-구룡평(13km)간 광궤신설[38], 두만강역-러시아의 핫산(590m)간 복선철교신설, 삼봉-중국 개산툰(4km)간 철도건설, 나진-구룡평간 역구내 확장, 두만강역 구내자동화, 청진-두만강(129km)간 철도통신현대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2단계에서는 나진-구룡평(33km)간 광궤를 신설하고 회령-학송간 철도를 보강하며, 3단계에서는 나진-훈융간 철도와 북부지구 순환망 철도 일부구간 복선화, 나진-회령철도 直線化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道路部門에서는 1단계에서 청진-회령(80km), 청진-나진(92km), 나진-샛별(112km), 선봉(홍의)-두만강(9km)간 기존도로를 개조 및 확장하는 한편 2단계에서는 청진-회령(82km), 나진-샛별(73km), 나진-두만강(45km), 은덕(하여평)-원정(7km)간 고속도로를 신설하며, 3단계에서는 청진-나진(67km), 샛별

38) 나진항, 선봉항, 청진항을 통해 중계무역화물 수송이 늘어나면 두만강역의 수송부담이 커지므로 두만강역 전에 조산리역을 건설하고 구룡평역까지 13.4km 구간에 러시아광궤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남양, 도문(43km)간 고속도로의 건설과 샛별-남양-회령(127km)간 북부지구 순환도로의 개선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航空部門에서는 선봉군 부포리와 굴포리 일대에 국제공항을 신설하여 1단계에서는 연간 여객수송능력 800만명과 화물수송능력 100만톤 규모의 시설을 달성하고, 2단계에서 연간 여객수송능력을 2,000만명, 화물수송능력을 250만톤 규모로 확장할 계획이다.

通信部門에서는 1단계에서 나진시 남산동 일대에 디지탈자동전화교환기(DGT) 4만회선 규모의 통신센터를 건설하고 이 지역의 국제통신을 위해 현재 이용되는 평양-나진-블라디보스토크간 통신망 용량의 대형화와 나진-훈춘간 근거리통신중계망을 정비할 계획이다.[39] 2단계에 가서는 나진에 디지탈자동전화교환기 14만 7,800회선 규모의 위성통신지구국을 설치하고 지대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선봉, 웅상, 후창 등에 통신분국을 건설함으로써 이동통신, 무선호출통신, 위성통신과 CATV의 실현을 계획하고 있다. 3단계에서는 자동통신분국의 건설과 나진-훈춘, 나진-포시에트간 광섬유케이블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40]

---

39) 북한의 1992년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안내책자에는 1단계에서 국제통신회선수 120회선, 전화자동교환능력 5만회선, 텔렉스자동교환능력 1천회선을, 2단계에서는 국제통신회선수 480회선, 전화자동교환능력 10만회선, 텔렉스자동교환능력 5천회선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진·선봉지구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현 실태와 전망에 대하여」 (1992), p. 14.

<표 3-4> 사회간접시설 확충계획

		1단계 (1993~95년)	2단계 (1996~2000년)	3단계 (2001~10년)
항만	나진항	1,000만톤	3,000만톤	7,000만톤
	선봉항	400만톤	1,000만톤	-
	청진항	1,000만톤	-	2,000만톤
철도		•회령-학송간(168km) 전철화 •조산리-구룡평간 (13.4km) 광궤신설 •두만강-핫산간 복선 철교 건설	•나진-구룡평간 (33km) 광궤신설 •회령-학송간 직선화	•나진-훈융간 복선화 •나진-회령6간 직선화
도로		•청진-회령(80km) •청진-나진(92km) •나진-샛별(112km) •선봉-두만강(9km) 등 노폭 9~12m의 도로 건설 및 확장	•청진-회령(82km) •나진-샛별(73km) •나진-두만강 (45km) •은덕-원정(7km) 등 고속도로 신설	•청진-나진(67km) •샛별-남양(43km) 등 구간 고속도로 신설 •북부지구 도로 환상망(샛별-남양-회령)구간 127km 확장
통신		•나진통신센터 신설 •나진-훈춘간 마이크로파통신 개설 •나진-블라디보스톡간 기존 마이크로파 통신 확장	•위성통신 지구국 및 통신분국 신설 •ISDN 체계 확립	•나진-훈춘, 포시에트간 광섬유 케이블 건설
공항		•선봉비행장 신설 (여객수송능력 연간 800만명)	•선봉비행장 확장	-
전력		•선봉 화력발전소 확장(40만kwh)	•선봉 화력발전소 확장 •나진 화력발전소 신설(30만kwh)	-
용수		•무창저수지 건설	•녹야저수지 건설	•금송저수지 건설 •락생저수지 건설

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황금의 삼각주: 라진·선봉, 투자대상안내」 (1993) 참조 작성.

4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황금의 삼각주」, p. 24.

電力部門에서는 현재 20만kw 시설용량의 6월 16일(선봉)화력발전소에서 연간 약 14억kwh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인접지역에 청진화력발전소(15만kw), 3월 17일 수력발전소(42만kw)가 있다. 이 지역에서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1단계에서는 선봉화력발전소의 시설용량을 40만kw로 확장하고, 2단계에서는 선봉화력발전소의 2차 확장과 함께 나진시 주변에 시설용량 30만kw의 나진화력발전소를 신설할 계획에 있다.

<표 3-5> 공업지구 건설계획과 유치 희망 업종

공업지구	주요 배치공업	단계별 개발면적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신흥지구	종합적인 경공업	200정보	확 장	
동명지구	신발, 편직, 일용품	20정보		
창평지구	선박수리, 기계	60정보		
청계지구	피복	20정보		
백학지구	전자, 자동화 업종	200정보	확 장	
웅상지구	목재가공, 보세창고		250정보	확 장
관곡지구	화학, 건재		370정보	확 장
후창지구	식료, 방직			200정보
홍의지구	금속, 기계			180정보

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황금의 삼각주: 라진·선봉, 투자대상안내」 (1993) 참조 작성.

나. 공업지구개발

북한은 또한 나진·선봉지대를 9개의 공업지구로 나누어 단계별 개발계획과 지구별 유치대상 업종을 밝히고 있다. 1단계에서 나진의 신흥지구(200정보: 종합적인 경공업), 동명지구(20정보: 신발, 편직, 일용), 창평지구(60정보: 배수리, 기계), 청계지구(20정보: 피복), 선봉의 백학지구(200정보: 전자, 자동화) 등 5개의 공업지구를 개발하고, 2단계에서 신흥, 백학지구의 확장과 더불어 선봉의 웅상지구와 나진의 관곡지구를 추가로 건설하며, 3단계에서 웅상, 과곡지구의 확장과 나진의 후창지구 및 선봉의 홍의지구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공업지구별 유치 희망 업종으로는 제1단계 개발 예정인 신흥지구에는 종합적인 경공업을, 동명지구에는 신발, 편직, 일용품 등을 창평지구에는 선박수리, 기계 등을, 청계지구에는 피복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2단계의 웅상지구에는 목재가공, 보세창고 등을 관곡지구에는 화학, 건재 등을, 제3단계의 후창지구에는 식료, 방직 등을 홍의지구에는 금속, 기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첨단기술업종, 국제경쟁력이 높은 업종, 인프라 현대화 및 건설업종, 자원개발업종, 기존설비 및 기술의 개선 등에 대해서는 투자를 장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 관광·서비스부문

관광 및 서비스부문에서는 8,760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여 1단계에서 안주(대초도)-신해(피파도)와 우암-굴포(번포)를 종합레져시설을 갖춘 관광 휴양지로 개발·조성하고, 200실 규모의 나진호텔과 행정, 무역, 금융, 통신, 상업, 회의 등 업무활동 및 서비스 종합센터인 나진·선봉 개발촉진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개발된 관광지를 확대하고, 나진과 선봉에 국제호텔을 건립하는 동시에 무역센터 건설도 구상하고 있다. 3단계에서는 웅상과 두만강에 국제호텔의 건설과 각 부문별 센터건설이 계획되고 있다.

<표 3-6> 관광·서비스부문 개발계획

구 분	관 광 부 문	서 비 스 부 문
1단계 (1993~95)	•나진호텔 건설 •안주(대초도)-신해(피파도) 관광지 개발 •우암-굴포(번포) 관광지 개발	•나진-선봉 개발촉진 센터 건설
2단계 (1996~2000)	•나진국제호텔 건설 •선봉국제호텔 건설 •안주-신해 관광지 확장 •우암-굴포 관광지 확장	•무역센터 건설
3단계 (2000~10)	•웅상국제호텔 건설 •두만강호텔 건설	•부문별 센터 건설

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황금의 삼각주: 라진·선봉, 투자대상안내」(1993) 참조 작성.

제Ⅳ장 북한 경제특구 투자환경: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본 장에서는 북한 경제특구 투자환경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위하여 거시적 투자환경, 중간적 투자환경, 미시적 투자환경으로 나누어 각각의 주요 투자요소들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북한 투자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상대평가를 위하여 같은 사회주의권 국가이며 외자유치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베트남과의 비교를 시도하고자 한다.

1. 거시적 투자환경

거시적 투자환경이란 해외투자의 필요조건 또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즉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투자대상국에 존재하는 비교우위적 요소로서 시장성 및 생산 Cost 등이 이에 속한다.

가. 시장성

수출시장의 확보는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주요 목적 중 하나이다. 투자대상국 자체의 내수시장 개척이나 제3국으로 수출하

기 위한 우회수출기지로서의 현지투자진출, 선진국에서 부과하는 수출할당 등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외투자가 이에 속한다.

1) 내수시장

북한은 1994년 현재 인구 2,300만명으로 중국의 11억 8,500만, 베트남의 7,200만 인구에 비해 협소한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다. 1인당 GNP는 923달러로 중국의 460달러, 베트남의 220달러에 비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나 최근 수년간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중국은 연평균 9.6%, 베트남은 연평균 6.7%의 고도성장을 이룩하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은 1990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어 1987년부터 1994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1.7%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 현재 체제의 특성이나 경제수준을 볼 때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수출이 기본이고 내수판매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내수판매는 원칙적으로 무역기관이나 합영·합작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여타 기관이나 기업소에 대한 판매는 국가승인을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분적인 내수판매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41] 설사 법적인

41) 북한 「합영법 시행세칙」, 1992.10.16, 제55조; 북한 「외국인기업법 시행세칙」, 1994.3.29, 제37조.

제한이 없을 경우에도 심각한 경제침체 및 북한 주민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내수판매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표 4-1> 북한·중국·베트남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연평균
북 한	3.3	3.0	2.4	-3.7	-5.2	-7.6	-4.3	-1.7	-1.7
중 국	-	11.0	4.0	5.2	8.0	13.2	13.8	11.8	9.6
베트남	3.9	5.1	8.0	5.1	6.0	8.3	8.0	8.8	6.7

자료: 통일원, 「남북한 경제지표」, 각년도;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각년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트남편람: 증보판」 (1995.3); EIU, *Country Profile 1994~95, Indochina: Vietnam, Laos, Cambodia* (1995).

중국의 경우에는 1인당 GNP는 5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深圳 6,455달러, 珠海 3,165달러, 上海 1,499달러 등 연해지역에는 1,000달러를 넘는 도시가 많으며, 이러한 도시에서는 중국 평균수준에 비해 높은 소비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내수시장으로서도 양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42]

---

42) 「韓國經濟新聞」, 1995.10.28.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구매력지수(purchasing-power parity) 측정방법

2) 수출시장접근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국과 투자대상국간의 비교우위요소를 결합하여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으며 생산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시장접근이 편리해야 한다.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을 미국, 일본, EU 등 제3국으로 수출하는데 고려할 사항으로는 ① 원산지 규정 ② 대북한 교역규제조치 존재여부 ③ 관세율 적용 및 쿼터 존재여부 등이 있다.

ㅇ 원산지규정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원산지규정이라 할 수 있다.[43] 왜냐하면 원산지 판정에 따라 대북한 교역상 규제조치가 발동될 수 있고 관세율 및 쿼터적용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경우 북한과의 교역 자체를 금지하고 있

을 이용, 중국의 1992년도 GNP는 과거 추정된 5,000억 달러의 4배인 약 4조 달러 규모로서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3대 경제국가임을 밝힌 바 있다. Steve Greenhouse, "New Study puts China Economy at 3rd Biggest,"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y 19, 1993.

43) 원산지규정의 종류로는 특혜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나 일반특혜관세(GSP) 수혜대상국가의 제품에 적용하는 특혜원산지규정과 이러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국가의 제품에 적용되는 비특혜원산지규정이 있다. 여기에서의 논의는 비특혜원산지규정을 대상으로 한다.

고 최혜국(MFN: Most Favored Nation) 대우도 공여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경우에도 북한산 제품에 불리하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이들 국가와의 교역상 개발도상국들이 수출하는 경우 제공되는 관세특혜인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원산지규정의 적용기준은 국가별로 다르고 복잡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미국, 일본, EU의 원산지 판정기준은 <표 4-2>와 같다.

<표 4-2> 미·일·EU의 원산지 판정기준

미 국	일 본	EU
·완전생산기준 ·세번(HS Code) 변경기준 ·가공도기준을 보조적 기준으로 활용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HS 4단위 세번 변경기준 ·가공도기준을 보조적 기준으로 활용	·완전생산기준 ·가공도기준 ·부가가치기준을 보조적 기준으로 활용

완전생산기준이란 1개국에서 그 제품이 완전히 생산되는 경우 당해국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것이며, 세번 변경기준은 해당

제품의 생산이 2개국 이상에 걸친 경우, 원재료로부터 제품에로의 세번(HS Code) 변경을 가져오게 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한다는 기준이다. 가공도기준은 생산과정상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가공작업이 발생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것이며,[44] 부가가치기준이란 특정공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공정이 일어나는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한다는 기준이다.

ㅇ 대북한 교역규제조치

미국은 지난 1950년 12월 적성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에 따라 북한을 적성국으로 지정한 이후 지금까지 수출입, 투자, 재정적 거래 등 제반 경제행위를 금지해 왔다.[45] 미국이 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는 관계법령은 적

44) 중요하고 실질적인 변형에는 革, 絲, 또는 직물류의 경우, 염색, 착색, 실루엣 가공 및 이에 준하는 가공과 섬유, 絲 또는 직물로부터 의류 및 의류부속품을 제조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45)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조치의 내용은 ① 무역 및 금융 거래의 실질적 금지, ② 미국내 북한 자산의 동결, ③ 경제적 지원 및 원조, ④ 최혜국 대우 부정, ⑤ 북한과의 무기거래 및 군수산업 관련 수출입 금지 등으로 대별된다.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Korea: Procedural and Jurisdictional Questions Regarding Possible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Washington D.C.: The Library of Congress, November 29, 1994), pp. 21~36 참조.

성국교역법, 외국자산통제규정(Foreign Assets Control Regulation), 수출관리법(Export Administration Act) 등이 있다.[46] 이같은 경제행위의 금지는 소재지에 관계없는 것으로 미국기업이나 이들 기업의 해외현지법인 모두에 적용된다.

미국은 예외적으로 1989년 책자, 필름, 레코드 등 일부 정보물자(informational materials)의 대북 수출입과 인도적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물품(식량, 약품 등)을 상업적으로 북한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했을 뿐이다. 한편 1994년 10월의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라 1995년 1월 미국은 무역, 금융거래, 통신 및 정보 등 4개 부문에 걸쳐 대북한 경제제재의 완화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는 전면적인 규제철폐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47]

---

46)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미국이 북한을 ① 적성국가, ② 공산국가 내지는 맑스-레닌주의국가, ③ 국제테러국가, ④ IAEA 안전협정을 위반한 핵무기 비보유국가, ⑤ 인권침해국가, ⑥ 미사일기술 확산활동국가로 규정함에 따라 각각 결정된다.

47)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신 및 정보: 미·북간 전화 및 통신 연결을 위한 거래허용, 개인여행 및 기타 여행 관련 신용카드 사용 허용, 언론인들의 사무실 개설 허용
- 금융거래: 미국에서 발생 또는 종결되지 않는 거래의 청산을 위한 북한의 미국 금융기관 거래 허용, 북한 정부에 귀속되지 않는 資産의 凍結 解除
- 기타 무역: 북한산 마크네사이트의 수입 허용
- 「기본합의문」 이행을 위한 기타 단계적 조치: 워싱턴과 평양간 연락사무소 개설과 활동을 위한 거래 허용, 미기업의 대북 경수로 지원·대체에너지 공급·사용후핵연료 해체 등 사업참여에 대한 적

베트남의 경우, 미국은 1964년 베트남전에 참전하면서 대베트남 경제제재조치를 취한 이래 1975년 베트남 공산화 이후 경제제재 조치를 확대하였으며, 1978년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하자 대베트남 경제제재조치를 더욱 강화하였다. 그러나 1989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철수를 계기로 미국은 1991년 12월 베트남에 대한 관광금지를 해제한데 이어, 1992년 12월 미국 기업들의 베트남 사무소 개설 허용, 1993년 7월 베트남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세계은행(World Bank)의 차관제공 허용, 1993년 9월 미국 기업의 현지 프로젝트 참여 허용, 1994년 2월 대베트남 금수조치 전면해제, 1995년 7월에는 국교를 정상화함으로써 미국의 대베트남 경제규제조치는 거의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48]

ㅇ 관세 및 쿼터적용

북한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의 수출시장접근을 위하여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관세율적용 및 쿼터존재유무이다. 여

용법규에 따른 사안별 검토

US Department of State, "Eas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January 20, 1995.

48)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Vietnam: Procedual and Jurisdictional Questions Regarding Normalization of U.S. Diplomatic and Economic Relations* (Washington D.C.: The Library of Congress, Jury 17, 1995) 참조.

기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 과거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가입국이 아니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도 참가하지 않은 국가로서 최혜국대우나 개발도상국들이 수출하는 경우 제공되는 관세특혜인 일반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표 4-3> 미국의 MFN 및 Column 2 관세율 비교

HS Code (의류)	대표관세율		HS Code (신발류)	대표관세율	
	MFN	C2		MFN	C2
6101	16.9	50.0	6401~5	48.0	84.0
6111	34.6	90.0			
6201	17.0	76.0			
6211	29.6	90.0			

주: 대표관세율은 해당 품목군 중 가장 높은 MFN 관세율 품목을 골라 MFN 관세율과 Column 2에 기재된 관세율을 비교한 것임.

자료: 통일원, 「남북합작 제품의 제3국시장 진출방안」 (1994).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조치는 양국간의 관계개선에 따라 결국은 해제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가 당장 완화된다 해도 북한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對美 수출은 거의 불가능하다. 미국의 1974년 「통상법」

(Trade Act)은 적성국이나 GATT(1995년 이후 WTO) 미가입국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 관세가 아닌 이보다 훨씬 세율이 높은 'Column 2' 관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olumn 2 관세율은 해당국의 수출이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금지관세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의류 및 신발류의 몇개 품목에 대해서 MFN 관세율과 Column 2 관세율을 비교해 보면 Column 2 관세율은 MFN 관세율에 비하여 최소 2배에서 최대 4배 정도까지 높다.

EU의 경우에도 <표 4-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WTO 비가입국에 적용하는 일반관세율은 가입국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에 비하여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북한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의 對EU 수출 역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점을 안고 있다.

한편 북한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제품을 EU로 수출할 경우에는 쿼터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EU는 현재 다자간 섬유협정(MFA: Multilateral Fiber Agreement)하에서 쌍무협정을 맺어 공동체차원에서 섬유류 수입쿼터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이 MFA 대상이 아닌 국영무역국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매우 제한적인 섬유쿼터 규정을 두고 있다. 일례로 섬유류 중 카테고리 4에 해당하는 셔츠나 T-셔츠류의 섬유제품의 경우, 한국에 할당된 쿼터는 1,277만 피스인데 비하여 북한에 대한 쿼터는 28만 5천 피스에 불과하다.[49]

---

4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남북합작 생산제품의 제3국 수출여건분석」

<표 4-4> EU의 협정관세율 및 일반관세율 비교

HS Code (의류)	일반 관세율	협정 관세율	HS Code (신발류)	일반 관세율	협정 관세율
6101	21.0	13.8	6401	20.0	19.4
6110	21.0	12.5	6402	20.0	19.4
6201	20.0	13.8	6403	20.0	7.4~8.0
6210	20.0	13.8	6404	20.0	19.4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남북합작생산제품의 제3국 수출 여건분석」(1995.9).

일본도 역시 북한산 제품에 대해 WTO 협정관세가 아닌 국정관세(기본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일본의 기본세율과 협정세율의 차이는 미국이나 EU와 같이 그다지 크지는 않다.[50] 그러나 북한은 중국, 대만, 태국 등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적용받고 있는 GSP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경쟁국에 비하여 일본시장 접근에도 불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현재 미국은 MFN 대우를 부여하고 있으며, 1년 단위로 이것의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일본과 EU는 중국에 대해 협정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1996년에는 중국의 WTO 가입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51]

(1995.9), pp. 27~28.

50) HS Code 61류의 경우 일본의 기본관세율과 협정관세율의 차이는 0.3~0.8%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위의 책, p. 15.

베트남은 1995년 7월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했고, 동남아국가연합(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에도 가입했다. 아직 미국으로부터 MFN 대우와 GSP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1996년 하반기 정도 이 자격을 획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베트남은 1996년 1월 1일부터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에 가입할 예정이므로 AFTA 역내 수출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활용될 수 있다.

3) 외자도입실적

1984년 9월 합영법 발표 이후 1993년 말까지 북한의 외자유치 실적은 140여 건에 금액으로는 1억 5천만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52] 이중 투자내용이 파악된 것은 116건으로 이를 중심

---

51) 미국의 론 브라운 상무장관은 1995년 10월 중국 방문중 "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을 지지하며, 1996년에는 중국을 배제한 WTO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중국의 WTO 가입 지지 의사를 밝혔다. 「중앙일보」, 1995.10.20.

52) 북한 당국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외자유치 건수 및 금액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1993년 12월 말 현재 133~144건(계약기준)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통일원, 「북한의 합영사업 추진실태」 (서울: 통일원, 1994), p. 8; 대한무역진흥공사, 「남북경제교류 현황자료」 (1994.5), p. 6. 1991년 9월 16일 합영공업총국 김창길 국장이 在美 한인연합회의 북한산업시찰단에 말한 바에 의하면 조업중인 합영회사는 150여 개로 이중 북한 내에 설립된 합영회사는 3분의 2가 된다고 했다. 「중앙일보」, 1991.10.11. 이들 자료에서의 북한의 외자유치 실적에는 합영기업 뿐만 아니라 합작기업도 포함시키고 있는

으로 북한의 외자유치실적의 추세와 특징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외국인 투자건수를 보면 1985년부터 1986년까지 12건에서 1987년 22건, 1988년 17건, 1989년 21건으로 소폭의 증가추세를 보여왔으나, 1990년에는 4건에 불과했으며 1991년 17건, 1992년 20건으로 회복세를 보이다가 1993년에는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둘째, 국가별로 보면 북한내 외국투자기업의 거의 90%가 재일 조총련계 기업에 의한 이른바 '조·조 합영'이다. 그외에 구소련, 중국, 폴란드 등이 2~4건의 투자를 하고 있으며 서방국가들과의 투자는 미국(재미교포), 덴마크, 이탈리아 등 소수의 국가로부터 1건 씩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그치고 있다.

셋째, 업종별 유치실적을 보면 식료품, 섬유, 의복 등과 같은 경공업분야가 35%, 백화점, 커피숍, 식당 등과 같은 서비스분야 30%로 경공업, 서비스분야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그외에 농수산물 분야 11%, 금속·기계분야 8%, 광업에 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합영사업이 생활필수품을 비롯한 소비재적 산업에 치중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투자규모 면에서는 총투자금액 1,000만 달러 이상이 10% 미만인 10여 개, 500~1000만 달러가 약 30% 정도이며 나머지는 대부분이 100만 달러 내외의 소규모 투자로 이루어

것으로 보인다.

지고 있으며 투자비율은 일반적으로 50:50이다.[53]

<표 4-5> 국가별 연도별 외국인 투자현황(1993년 말 기준)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합계	비율 (%)
일 본	3	8	18	16	19	3	16	17	1	101	87.1
구소련			3				1			4	3.4
중 국			1		1	1				3	2.6
폴란드				1	1					2	1.7
프랑스	1									1	0.9
홍 콩								1		1	0.9
덴마크								1		1	0.9
호 주								1		1	0.9
미 국								1		1	0.9
이탈리아									1	1	0.9
합 계	4	8	22	17	21	4	17	21	2	116	100.0

자료: 남궁영 "북한의 외자유치정책 운용실태와 성과분석," 「統一硏究論叢」, 제3권 제1호 (1994).

53)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투자실무」 (1993), p. 130.

<표 4-6> 업종별 투자유치 현황(1993년 말 기준)

(단위: 건수, %)

	경공업	서비스업	금속기계	농수산물	전기전자	화학	광업	의료	합계
건수	40	38	9	13	4	1	8	1	114
비율	35.1	33.3	7.9	11.4	3.5	0.9	7.0	0.9	100.0

자료: <표 4-5>의 외국투자기업 116건 중 업종이 확인되지 않은 백합합작회사, 광만합영회사를 제외한 114건을 분류하여 작성.

조총련계의 자료에 의하면 1992년 말 현재 북한에 투자한 재일 조총련계 기업의 계약건수는 약 120건, 투자액은 1억 달러 규모로 이중 조업중인 회사는 약 70여 건(58.3%)이다.[54]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북한이 조총련 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과 합영·합작사업을 계약한 것은 140여 건이며, 이중 실제 설립된 것은 100여 건 정도로 투자액은 100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이며 그나마도 가동중에 있는 것은 70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

54) 陳吉相, "外國投資に關する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法," 「月刊朝鮮資料」 (1993.8), p. 42. 한편 조총련 산하의 「朝鮮商工新聞」, 1992.9.1은 조총련에 의한 합영사업 계약건수는 약 110건, 이중 조업건수는 60건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며, KOTRA 내부자료에 의하면 1992년 말 현재 조총련계 기업의 북한 투자현황은 계약기준으로 106건, 투자금액으로는 201억 3,146만엔으로 이중 이미 조업중인 회사는 59개사 조업준비중인 회사는 47개사이다.

한편 북한이 나진·선봉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한 1991년 12월 이후 1995년 11월 현재까지 지대내 외국투자는 약 2억 달러(계약기준) 정도이나, 실제로 투자된 금액은 2천만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다. 서방 기업의 투자는 1995년 1월 네덜란드 ING 은행이 합영은행 설립을 합의한 것과 최근 스웨덴의 통신업체 에릭슨과 기술협력관계에 있는 태국의 록슬리그룹이 나진·선봉지역에서의 통신사업에 대한 독점계약을 맺은 것, 영국의 석유회사 셸이 10만톤 규모의 원유저장 및 공급시설 건설(200만 달러 규모)을 합의한 것 정도로서, 현재까지는 관심을 표명하고 현지투자 여건을 조사하는 상태이다.

이러한 북한의 외자유치실적은 중국·베트남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그 건수나 규모가 매우 저조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베트남은 개방 초기 연도인 1988년에 37건 3억 6,600만 달러 상당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한 이래 외자유치실적은 해마다 증가하여 1994년 말까지 투자승인 총액은 1,176건에 11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55] 투자규모 또한 1건당 평균 약 950만 달러로서 비교적 큰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국가는 총 48개국에 이르며, 투자진출의 절대적인 비중은 대만, 홍콩,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주변

55) 그러나 실제로 유치된 금액은 1993년 말 현재 전체 승인총액의 28%에 불과한 20억 8,400만 달러이며, 취소된 것이 6억 250만 달러(8.4%), 투자예정자본이 47억 4,700만 달러(63.6%)이다. SCCI, *Vietnam Investment Review*, Jan. 10~16, 1994.

국과 호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서방 선진국가가 차지하고 있다. 국별 투자현황(1994년 8월 말 기준)을 보면 대만이 약 17억 달러, 홍콩이 16억 달러를 투자하여 아시아권의 화교자본 진출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7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진출순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1995년 1월 미·베트남 연락사무소 개설 이후 미국 기업의 투자가 급증하여 미국은 7월 말 누계기준으로 투자허가실적이 41건, 9억 9,600만 달러에 달하여 대베트남 투자순위 6위국으로 부상했다.[56]

<표 4-7> 베트남의 외자유치 현황(승인기준)

(단위: 건, 백만 달러)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합 계
건 수	37	69	108	150	192	280	340	1,176
투자금액	366	539	596	1,288	1,939	2,728	3,700	11,156
평균투자금액	989	781	552	859	1,010	974	1,088	949

주: 1994년은 잠정치

자료: 베트남 국가협력투자위원회(SCCI)

56) 미·베트남 국교수교 이후 발표된 미국 기업들의 베트남투자로는 옥시덴털 케미칼의 염화비닐수지공장 합병(1억 1천만 달러), 아메리칸 인터네셔널 그룹(AIG)의 하이퐁공업단지건설(5억 6천만 달러), 포드와 크라이슬러의 자동차조립공장 건설, 엑슨과 코노코의 원유개발 등을 들 수 있다. 「韓國經濟新聞」, 1995.8.23.

<표 4-8> 대베트남 10대 투자국(1988~94년 8월 현재)

(단위: 백만 달러)

국 가 명	투 자 건 수	총 투 자 금 액
대 만	141	1,720
홍 콩	155	1,582
한 국	81	774
호 주	38	638
싱 가 폴	65	569
말레이시아	27	557
일 본	60	522
프 랑 스	52	489
네 델 란 드	13	380
영 국	14	376

자료: 베트남 국가투자협력위원회(SCCI)

1978년 12월에 개최된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개혁·개방 노선이 공식 채택되어 외자도입정책을 추진한 이래 중국의 외자도입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등소평의 '南巡講話'를 계기로 개혁·개방이 가속됨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2년부터 격증하였다. 경기과열에 따른 제반 부작용으로 중국 정부가 조정정책을 실시하면서 1994년에는 건수, 계약액 모두 전년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실제 투자유치금액은 착실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4년 말까지 중국의 투자유치는 22만건에 계약총액 3,033억 달러, 실제 투자유치총액 95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표 4-9> 중국의 외자유치 현황

(단위: 건, 백만 달러)

	1979~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합 계
계약건수	21,948	7,273	12,978	48,764	83,265	47,490	221,718
계약액	34,347	6,596	11,977	58,124	110,852	81,406	303,302
실행액	17,171	3,487	4,366	11,007	25,759	33,787	95,577

자료: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상황을 국가별로 보면 홍콩, 마카오, 대만, 싱가폴 등 화교자본과 미국, 일본 기업에 의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79~94년간의 투자를 계약기준으로 살펴보면, 홍콩, 마카오, 대만 및 싱가폴 등 화교자본이 투자건수의 74%, 계약액으로는 7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홍콩, 마카오가 1,878억 달러로 전체 직접투자 계약액의 61.9%, 대만이 219억 달러로 7.2%, 미국이 182억 달러로 6.0%, 일본이 125억 달러로 4.1%를 점하고 있다. 한국은 29억 달러로 중국의 총 직접투자 계약액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표 4-10> 대중국 10대 투자국

(건, 백만 달러, %)

	1994			1979~94년 누계		
	건수	계약액	실행액	건수	계약액	실행액
홍콩·마카오	21,389 (45.0)	40,545 (49.8)	15,877 (47.0)	133,802 (60.2)	187,764 (61.9)	54,395 (56.9)
대 만	4,429 (9.3)	3,449 (4.2)	2,268 (6.7)	25,411 (11.5)	21,886 (7.2)	7,324 (7.7)
미 국	3,035 (6.4)	3,580 (4.4)	1,456 (4.3)	15,054 (6.8)	18,240 (6.0)	6,693 (7.0)
일 본	2,228 (4.7)	3,516 (4.3)	1,730 (5.1)	9,410 (4.2)	12,450 (4.1)	6,933 (7.3)
싱가폴	-	-	-	4,159 (1.9)	7,439 (2.5)	1,510 (1.6)
영 국	276 (0.6)	1,895 (2.3)	485 (1.4)	892 (0.4)	4,907 (1.6)	1,064 (1.1)
한 국	1,019 (2.1)	771 (0.9)	376 (1.1)	3,710 (1.7)	2,944 (1.0)	926 (1.0)
태 국	-	-	-	1,843 (0.8)	2,626 (0.9)	552 (0.6)
캐나다	458 (1.0)	363 (0.4)	150 (0.4)	1,998 (0.9)	2,178 (0.7)	410 (0.4)
독 일	227 (0.5)	592 (0.7)	157 (0.5)	796 (0.4)	2,050 (0.7)	684 (0.7)
총 계	47,490 (100.0)	81,406 (100.0)	33,787 (100.0)	221,718 (100.0)	303,302 (100.0)	95,577 (100.0)

주: ( )안의 수치는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나. 생산 Cost

1) 노동력

북한의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은 "외국투자기업은 정한 노임기준에 따라 각종 직제별 노임기준, 노임지불형태와 방법, 지급금, 장려금, 상금 기준을 자체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북한 노동력은 해당 노동기관과 계약에 따라 채용·해고해야 됨으로 임금도 노동행정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지급된다.

대체로 북한의 임금체계는 일반 노동자가 70~80원(북한원), 노동강도가 높은 부문이라 할 수 있는 광부, 제철·제련공이 90~100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3년 2월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통해 전체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생활비를 평균 43.4% 인상한 것을 이에 적용하면 월평균임금은 약 100~150원(약 45~70달러) 정도라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인 합영기업의 임금수준은 월평균 150달러(평양피아노합작공장, 만경대신발합작공장 등)로 알려지고 있다.[57] 합영기업의 경우, 임금이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노동기관에 일괄 납부되고, 해당 노동기관이 국가납부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합영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 합영기업 근로자의 실수

57)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투자실무」, p. 165.

령액은 월평균 45~90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58]

<표 4-11> 북한의 임금수준

	직 책	보수(북한원)
지배인급	· 특정기업소 지배인	250~300
	· 1급 기업소 지배인 및 기사장	150~200
노동자·사무원	· 광부, 제철, 제련공	90~100
	· 일반기계공, 운전기사	75~80
	· 일반노동자	70~80
	· 사무원	60~70
편의시설 종사자	· 여관, 식당, 이발소, 상점 등	50~80

주 1): 1993년 2월 13일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통해 발표한 전체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생활비 평균인상 43.4% 적용 이전의 임금수준임.

2): 환율: US $1=2.16 북한원(매입율), 2.2493(매도율), 1993년 2월 현재 기준

자료: 통일원, 「북한개요」 (서울: 통일원, 1993).

한편 외국투자기업의 노동보수규정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저임금을 일반지역에서는 월 220원(약 100달러), 자유경제무

58) 1992년 북한이 작성한 남포공단에 대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임금을 160~400원(약 75~180달러)으로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것은 당사자들이 합의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서 임금수준은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전홍택·오강수, 「북한의 외국인투자제도와 대북투자 추진방안」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5), p. 244.

역지대에서는 160원(75달러)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기본급 외에 가급금, 장려금, 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밖에 사회보험료로 임금총액의 7%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합영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수준은 자유경제무역지대가 100달러 이상일 것이며, 일반지역은 최저임금의 차이만큼 더 높을 것이다.[59] 숙련기술인력, 관리자에 대해서는 북한이 UNIDO에 제출한 「합작투자유치희망사업목록」에서 준숙련 기술자부터 관리자까지 월평균임금을 약 150~400달러로 제시하고 있다.[60]

중국의 경우 반숙련공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기본급은 국영기업의 120~150%(약 50~60달러)로 낮은 편이나 회사가 부담하는 성과금, 시간외수당, 보험료, 연금, 주택보조금 등 각종 부대비용이 기본급의 150~200%에 달하는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실제 지급액은 기본급의 2~3배에 이르고 있다.[61] 무역협회가 위탁가공무역을 하고 있는 국내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중국의 임금지수는 한국을 100으로 했을 때 37.0으로서 북한의 38.2에 비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품질수준에 있어서는 국내생산 품질지수를 100

---

59) 북한은 계약시 일반 노동자(준숙련공) 외에 관리자, 사무원, 기술감독 등의 채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의 임금은 생산에 뚜렷한 기여가 없으면서도 300~400달러로 매우 높다. 「한국일보」, 1995.5.22.

60) UNIDO, *List of Project Profiles from the DPRK* (July 1990).

61) 대한무역진흥공사, 「북방통상정보」 (1993.5), p. 127.

으로 했을때 중국내 위탁가공생산시 품질지수는 76.0으로 북한(83.2)에 비하여 많이 떨어지고 있다.[62] 또한 중국 정부는 1995년 3월 25일 국무원령 제147호로 1995년 5월 1일부터 주5일근무, 정상근무시간 주40시간제도 도입을 공포하여 외국투자기업의 임금부담이 20% 정도 늘어났다.[63]

베트남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1992년 5월에 공포된 최저임금에 관한 국가투자협력위원회(SCCI)의 결정에 의해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정상적인 조건하에서 단순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하노이 및 호치민市에 있는 기업은 월 35달러이며, 기타 지역은 월 30달러이다.[64] 그러나 단순생산직에 있는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각 직종별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실제 지불하는 임금수준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경우 임금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의 일반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은 월 50달러 미만으로 북한, 중국에 비교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65]

---

62) 한국무역협회, 「남북경협」 (1994.11), pp. 20~26.

63) 대한무역진흥공사, 「중국통상정보」 (1995.5), pp. 6~8. 한편 휴일근무시에는 평일 급여의 2배를 지급해야 하며, 월 잔업근무시간은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중국 「노동법」, 제41조.

64) 삼성경제연구소, 「베트남」 (1994.2), p. 177.

65) 위의 책, p. 173. 아세안 노동자들의 시간당 인건비는 인도네시아 0.43달러, 필리핀 0.78달러, 태국 1.04달러, 말레이지아 1.50달러 등이며 베트남의 경우 약 0.26달러 정도로 아세안 내에서 가장 저렴하다. *Asiaweek* (July 1995), p. 46.

<표 4-12>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 임금수준

(단위: 中國元)

구 분	북 경		상 해		광 주	
	숙련공	반숙련공	숙련공	반숙련공	숙련공	반숙련공
기 본 급	600	300	600	300	750	350
성 과 급	250	100	350	150	300	200
시간외수당	100	100	200	200	300	300
의료·산재보험	160	80	90	45	126	63
연 금	160	80	200	135	158	80
주택보조금	50	50	180	90	137	72
식대·유니폼·잡비	20	25	35	35	50	50
구정보너스	112	59	136	76	147	95
계	1,457	794	1,791	1,031	1,968	1,202

주 1): 구정보너스는 구정보너스 지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임.

2): 1993년 환율은 US $1=5.8中國元

자료: *Business China,* March 22, 1993.

북한의 투자유치 경쟁국인 중국, 베트남의 임금, 노동의 질 등을 비교해 보면, 소득수준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단순노동력이 풍부하며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베트남이 투자대상지역으로 가장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기본급 외의 지나친 부대비용문제와 고급인력난이 심각하며 최근 들어 급격한 임금상승 또한 비교열세요인으로 지적된다. 노동의 질을 고려

한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북한이 투자유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베트남에 비교하여 2~3배에 달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투자유인이 크지는 않다.[66]

2) 지대·임대료

북한은 1993년 10월 「토지임대법」을 제정함으로써 외국투자기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준거법을 마련하였다. 「토지임대법」은 토지소유권으로부터 토지이용권을 분리하여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토지를 양도(매매, 재임대, 상속, 증여) 및 저당이 가능토록 하여 토지이용권을 재산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북한의 「토지임대법」은 중국의 외자기업 토지이용제도의 틀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67] 다만 중국이 내국인 기업·단

---

66) 베트남이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외자기업 진출이 급증하여 숙련노동력이 부족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한 지역에 여러 개의 수출가공구가 완성되어 외자기업 입주가 본격화되면 필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당경쟁과 임금상승 요인이 증폭될 전망이다.

67) 북한과 같이 토지국유제도를 취하고 있는 중국은 국가와 집체기업만이 토지소유권을 갖고 있으나 단체·기업·개인이 국가소유의 토지를 점유·이용·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 토지사용권을 분리시킨 兩權分離의 개념을 바탕으로 개혁·개방 이후 「土地管理法」(1986 제정, 1988 개정), 同法細則(1991), 「都市國有土地使用權 讓渡·在讓渡 暫定條例」(1990), 「外商土地投資와 開發에 관한 暫定條例」(1990) 등

체·개인에 대해서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토지이용권을 재산권으로 행사하는데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과는 달리 북한은 내국인의 토지이용권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외국과의 합영 및 합작에 참여하는 당사자로 제한함으로써 대내적 개혁을 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토지 관련 비용은 토지임대료, 토지개발비, 토지사용료, 건물임대료, 위탁건설비 등이 있다. 우선 북한은 토지임대료를 '토지이용권의 값'(제28조)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미 개발된 토지를 임대할 경우 토지개발에 소요된 제 비용(토지정리와 도로건설 및 상·하수도, 전기, 통신, 난방시설 건설 등에 지출된 비용)인 토지개발비가 포함된다(제29조). 한편 외국측이 직접 필요한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토지개발을 하여 공장이나 기업을 짓는 경우에는 토지임대료에 토지개발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비용에는 그밖에 일종의 토지세로서 매년 납부하여야 하는 토지사용료가 있다. 북한의 「토지임대법 시행규정」에 따르면 토지사용료는 4년간 변동하지 않으며, 변동시 변동폭은 20%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다. 장려부문과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투자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토지사용료가 10년간 감면된다.

의 법정비를 해왔다. 중국의 토지제도 개혁과 외자기업의 토지이용제도에 관해서는 최수웅, 「중국의 토지사용제도 분석」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참조.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적용되는 토지 관련 제 비용의 수준은 <표 4-13>과 같으나 토지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소 가변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토지관리당국으로부터 토지이용권의 획득은 협상(계약), 입찰, 경매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토지이용권의 양도가 가능하므로 초보적이나마 토지에 대한 시장가격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68]

북한의 토지임대료 수준을 <표 4-13>으로부터 도출해 보면 공업지역의 50년간 토지이용을 기준으로 할 때 토지임대료는 50년간의 토지임대료 약 40~100달러(m^2당)와 토지개발과 약 50달러를 합하여 약 90~150달러(m^2/50년) 정도이다. 그러나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자료 「황금의 삼각지, 라진·선봉」 (1993.5)에 의하면 토지임대계약을 맺은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 지불하면 임대기간에 따라 15~30% 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최장 50년 임대시 30%의 감면을 받으면 토지임대료는 약 63~105달러(m^2/50년)가 된다.[69] 토지사용료는 1년에 m^2당 1.5~3.5달러 수준이다.[70]

---

68) 전홍택·오강수, 「북한의 외국인 투자제도와 대북투자 추진방안」, p. 173. 토지임대방법으로 중국은 지역구별없이 협상, 입찰, 경매 모두를 허용하고 있으나 북한은 입찰과 경매방식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만 한정하고 있다. 북한 「토지임대법 시행규정」, 1994.9.7, 제9조.

69) 북한의 일반지역에서는 토지임차자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토지임대료 전액을 물어야 하며, 장려부문이나 임대료가 많은 토지개발부문은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의 합의하에 5년 안에 분할하여 물 수 있다. 북한 「토지임대법」, 1993.10.27, 제30조.

<표 4-13>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토지 관련 비용

구 분	용 도		비 용	
	목 적	위 치	북한원	미달러
토지임대료 (매년, m^2당)	상업용, 서비스, 호텔, 고층빌딩	- 도시중심부	7.00	3.18
		- 교외	6.00	2.73
		- 농촌지역	3.50	1.59
	주거용 및 공공건물	- 도시중심부	6.00	2.73
		- 교외	4.50	2.05
		- 농촌지역	2.60	1.18
	공업시설	- 도시중심부	4.50	2.05
		- 교외	3.50	1.59
		- 농촌지역	1.80	0.82
토지개발비 (m^2당)	상업용, 서비스, 호텔, 빌라용 토지		130	59.1
	아파트, 사무실, 공공건물용 토지		120	54.5
	공업용 토지		110	50.0
건물임대료 (매월, m^2당)	공장용		5.00	2.27
	주거용		6.00	2.73
	사무실, 공공용		8.00	3.64
	창고용		4.50	2.05
위탁건설비 (매월, m^2당)	공장건물		450~500	204.5~227.3
	주거용 건물		650~790	295.5~359.0

주: 1) 적용환율 US $1=2.2북한원
2) 장려기업의 토지임대료는 처음 3년간 면제, 그후 3년간 50% 감면
3) 토지임대계약을 맺은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임대료 일괄지불시 임대기간에 따라 15~30% 감면
4) 위탁건설비는 미개발된 토지를 계약에 의해 토지이용권으로 임차하고 공장건물과 주거용건물을 북한측에 위탁건설하는 것임.

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황금의 삼각주, 라진·선봉」 (1993.5).

---

70) 「남포경공업기지에 관한 설명자료」 (1992).

중국의 경우, 북한의 토지임대료에 해당하는 場地使用費에 북한과 마찬가지로 토지개발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장지사용비의 수준은 상해 포동신구는 50년 기준으로 90~120달러(m^2당)로 북한보다 높으며, 천진 경제기술개발구는 53달러 정도로 북한보다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토지사용비(북한의 토지사용료에 해당)는 상해는 연간 0.5~12달러, 천진은 0.5~6달러 수준이며, 최고 30% 범위 내에서 3년에 한 번씩 물가상승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71]

베트남은 1994년 12월 말 개정된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하는 토지, 내수면, 해수면 임차료에 대한 규정」에서 전국토를 도시지역은 5등급, 지방은 2등급하여 각각에 대해 기본임대료를 설정하고 있다(<표 4-14> 참조). 이에 따르면 1급지인 호치민市의 경우 연간 기본임대료는 m^2당 1.70~13.6달러이다.[72] 실제임대료는 기본임대료 외에 당해투자 프로젝트가 입지하는 지역의 인프라정비정도, 당해투자 프로젝트의 업종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가중치를 곱하여 임대료를 계산한다(연간 토지임대료 = 토지분류 × 인프라조건계수 × 투자업종계수 × 입지조건계수 × 면적).[73]

---

71) 전홍택·오강수, 「북한의 외국인 투자제도와 대북투자 추진방안」, p. 175.

72) 개정전(1992년 10월 재무부령) 1급지인 호치민市의 기본임대료는 m^2당 2.25~18달러였으며 개정전 2급지(1.50~16.50달러/m^2)였던 하노이는 개정 후에는 1급지에 속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전력 및 용수공급과 도로사정이 보통 수준(1.5)인 하노이市의 외곽지대(1.0)에서 경공업 프로젝트(1.5)를 추진할 경우, 최저 토지가격인 1.7달러를 적용하면 m^2당 연간 토지임대료는 1.5×1.5×1.7×1=3.825달러가 된다. 50년 임대할 경우에는 3.825×50(일시불로 납부하면 15% 감면)하여 약 163달러가 되는 셈이다. 한편, 호치민市 외곽에 위치한 딴투언(Tan Thuan)과 린쭝(Lin Trung) 수출가공구의 경우, 토지임대료는 50년간 m^2당 100달러(일시불)로서 일반지역에 비해서 매우 낮은 편이다.[74]

베트남에는 별도의 토지사용료는 없으며, 토지임대료를 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회에 일괄납부하면 사업허가기간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경감해 준다.[75]

토지가격체계는 지역, 용도, 토지등급, 인프라조건 등에 따라

---

73) 가중치는 1에서 2까지로서 도시지역의 경우 중심은 가중치가 2이며, 외곽지역은 1이다. 인프라조건이 양호하여 기반조성이 이미 끝난 토지의 가중치는 2, 보통의 경우는 1.5, 열악한 지역은 1이다. 또한 투자업종의 성격에 따라 하부구조건설부문은 1, 중공업은 1.2, 경공업은 1.5, 기타부문은 2를 적용한다. 대한무역진흥공사, 「베트남투자환경」 (1993), p. 140.

74) 권율, 「베트남의 수출가공구 개발정책과 현황」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p. 29.

75) 딴투언, 린쭝 특별경제가공구의 경우 매년 납부시 m^2당 연간 5달러이나, 일시불로는 50년간 m^2당 100달러이다. 일반지역에서는 토지임대료를 일괄 납부하면 투자인가사업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총임대료의 15%가 감면되고, 5~10년 기간 내의 사업일 경우 10%를 감면해 주고 있다.

다양하고 매우 복잡하여 평면적으로 북한과 중국, 베트남을 비교하는 데는 문제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북한의 토지 관련 비용은 중국, 베트남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표 4-14> 베트남의 기본토지임대료

(단위: 달러)

구 분	지 역 구 분	임 차 료(연간)
<도시지역>		
· 그룹 1	호치민, 하노이	1.70~13.6/m^2
· 그룹 2	붕타우, 비엔호아, 하이퐁	1.50~12.0/m^2
· 그룹 3	18개 도심지역	1.125~9.0//m^2
· 그룹 4	45개 지방지역	0.75~6.0/m^2
· 그룹 5	기타지역	0.375~3.0/m^2
<지방지역>		
· 그룹 1	석산, 구릉지, 황무지	30~150/ha
· 그룹 2	기타지역	150~750/ha
- 내수면	강, 연못, 호수, 만	75~525/ha
- 해수면	바다	150~600/km^2

자료: 베트남 「재무부령」, 1994.12.

<표 4-15> 북한·중국·베트남의 토지 관련 비용 비교(공업용지 기준)

(단위: 달러/m^2)

북 한	중 국		베 트 남
(나진·선봉자유 경제 무역지대) ·토지임대료: 63~105달러/50년 ·토지사용료(남포): 1.5~3.5달러/연	(상해포동신구) ·場地使用費: 90~120달러/50년 ·토지사용비: 0.5~12달러/연	(천진경제기술 개발구) ·場地使用費: 53달러/50년 ·토지사용비: 0.5~6달러/연	(딴투언, 린쭝 특별경제가공구) ·토지임대료: 100달러/50년 ·토지사용료: 없음

그러나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우, 장려기업에 대해서는 토지임대료를 처음 3년간 면제와 그 이후 3년간 50%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는 반면, 중국과 베트남 경제특구에는 외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토지임대료 및 건물임대료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지 관련 비용에 대해서 북한이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76]

76) 최근 하노이와 호치민의 중심가는 연간 주택임대료가 m^2당 2천 달러이다. 이는 1994년 초의 1천 달러에 비해 100%나 오른 것이며 방콕의 680달러, 자카르타, 마닐라의 400달러에 비교해 볼 때 매우 비싼 값이다. 교외지역 역시 하노이 교외의 집세는 연간 m^2당 400달러, 호치민의 경우 250달러에 달한다. 「韓國經濟新聞」, 1995.10.17.

2. 중간적 투자환경

중간적 투자환경은 해외투자기업이 투자대상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제약이 되는 정책이나 관행의 유무로서 정치·사회적 위험이나 경영관리상의 제약 등이 포함된다.

가. 정치·사회적 안정성

투자대상국의 정치·사회적 안정성 문제는 외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투자대상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고려하는 투자환경 조건이다. 따라서 정치·사회적 안정은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77]

북한의 정치·사회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첫째, 김정일 정권의 불투명, 둘째, 핵문제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로부터의 문제국가로의 낙인, 셋째, 만성적인 경제위기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 1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국가주석직과 노동당 총비서 자리를 비워두고 있는 상태이다. 김정일의

---

77) Jeffrey D. Simon, "A Theoretical Perspective on Political Risk,"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5 (Winter 1984), pp. 123~43; T. Aharoni, *The Foreign Investment Decision Process*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66); L. C. Nehrt, "The Political Climate for Private Investment," *Business Horizons*, 15 (June 1972), pp. 51~58 참조.

공식승계가 지연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는 김정일의 건강상 문제, 완전한 권력장악 미비 등의 이유로 승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과 김정일이 완벽한 권력장악과 실질적인 통치권 수행으로 전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승계를 위한 환경조건이 좋지 않아서 하지 않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후자의 견해에 따르면 김정일이 권좌에 오를 때는 북한 주민들에게 미래를 약속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가시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의 권력승계 지연 원인이 어디에 있건 15개월 이상이나 국가의 공식적 통수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북한정세의 불안정성, 불투명성은 북한에 투자하고자 하는 해외투자가들이 실제적인 투자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대두될 수 있다.

둘째, 북한은 장기간의 핵문제 야기,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화학무기의 다량보유 등으로 국제적으로 테러국가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마약을 수출하고 대규모 정치수용소와 20만의 정치범으로 인권유린이 심각한 국가로 인식되어 국제사회에서 '문제국가'로서의 이미지가 확대되어 있다.

셋째, 북한의 심화된 경제적 위기와 외채상환 문제는 북한의 사회적 긴장도와 국가위험도를 높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마이너스 성장률의 만성적 지속, 생산시설미비, 원자재·에너지 부족, 낙후된 기술, 공장가동률 저하, 농업생산성 하락에 따른

만성적인 식량위기 등은 단기간에 개선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한편 1994년 북한의 외채총액은 106.6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북한의 총외채 대 GNP 비율은 50%가 넘고 있으며, 외채 상환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총외채에 대한 수출 비율은 1,000%를 초과하여 이미 위험순위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표 4-16> 참조). 그결과 미국의회 산하 회계검사국(General Accounting Office)의 대외신용도 평가에서 북한은 170개국 중 167위를 기록[78]하여 북한경제 회복에 필수적인 선진 외국의 자본·기술 도입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79]

북한은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정하여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경제특구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와 같은 자세 변화는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전반적인 경제개혁·개방을 위한 조치가 아니고 경직된 북한사회의 경제적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수세적 대응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중국의 경제특구는 우

78) 「世界日報」, 1995.1.8.

79) 1986년 10월 일본 통산성은 일본의 30여 개 대북 수출업체가 10여 년간 북한으로부터 받지 못한 수출대금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987년 7월에는 영국 모건그렌펠(Morgan Grenfell)은행과 호주의 ANZ은행을 간사은행으로 140여 개 은행들이 참여한 서방채권은행단이 북한에 대하여 차관원리금 7.7억 달러의 연체사실을 공식통보함으로써 북한을 사실상 파산국으로 선고하였다. 李浩, "북한경제의 딜레마: 외채문제," 국토통일원, 「민족재결합의 모색」, 제34집 (1987), p. 50.

선적으로 경제특구 안에서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실행함으로써 다시 그 경험을 토대로 하여 다른 지역에서도 무리없이 개혁이 시행되도록 하려는 '경제체제 개혁의 실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북한은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유지하면서 체제개혁을 뒤로 미룬 채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외자유치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80]

<표 4-16> 북한의 외채 현황

	총외채	총외채/GNP(%)	총외채/수출액(%)
1975	21.0	22.5	254.5
1980	34.6	25.6	212.6
1986	40.6	23.3	299.5
1990	78.6	34.0	423.2
1991	92.8	40.5	918.8
1992	97.2	46.5	952.9
1993	103.2	50.3	1,011.8
1994	106.6	50.3	1,269.0

자료: 통일원, 「남북한경제지표」 (1993); 한국은행, 「1994년 북한 GNP 추정결과」 (1995)를 참조 작성.

80) 남궁영, "북한의 대외경제정책변화와 남북경협전망," 「통일경제」, 창간호 (1995.1), p. 45

중국의 경우는 성공적인 개혁·개방정책과 이에 따른 높은 경제성장, 공산당의 대국민 정통성과 지도력 견지 등으로 비교적 정치·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나 등소평 사후 변화가 가장 큰 정치·사회적 변동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81] 등소평은 1978년 이래 개혁·개방정책을 채택·추진하여 온 중국 최고 실력자이며 중국이 개인 지도자의 비중이 큰 人治社會라는 점에서 볼 때 등소평의 사망은 중국 정치상황 변화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강택민은 1992년 제14차 당대회에서 등소평 후계자로 공식 확정되어 당·정·군의 핵심지도부 내에 지지기반을 구축, 현재 중국 당·정·군의 최고책임자로 있으며, 아울러 중국 지도부는 등소평 사후의 권력투쟁은 공산당 지배체제에 심대한 타격을 미쳐 지도부 전체에 공멸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등소평 사후 중국에서는 강택민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82]

또한 중국의 경제개혁·개방정책은 중국의 경제건설에 있어 중요한 動因 중의 하나로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중국 지

---

81) 1995년 8월 22일로 만91세를 맞은 등소평의 근황을 가장 명확하게 대변해 온 등소평의 三女 등숙용은 New York Times와의 회견(1995.1.13)에서 등소평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82) 중국은 1994년 9월 기존 5명의 중앙서기처 서기를 7명으로 증원함으로써 서기처의 권한을 강화하였는데, 이는 등소평 사후 집단지도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상진, 「등소평 사후 중국의 국내정세 및 한반도정책 전망」(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2), pp. 3~4.

도부 내에는 현재의 경제개혁·개방노선에 대해서는 큰 대립이 없는 상태이며 중국 국민 대다수가 개혁·개방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83]

그러나 인플레, 지역·계층간 소득격차 등 개혁·개방에 따른 부작용 해소 차원에서 중국은 경제성장률의 하향조정,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연해지역에 대한 지원축소와 내륙지역개발지원 확대 등의 방향으로 외국인투자정책을 전개할 계획이다.

베트남 공산당은 독립과 통일을 쟁취하는 전쟁기간 당내 분열이 거의 없었고 베트남 역사와 민중 속에 굳건한 정통성과 뿌리를 지녀왔다. 특히 호치민(Ho Chi Minh) 사후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는 달리 레 쥬안(Le Duan), 쯔엉 찐(Truong Chinh), 응웬 반 린(Nguyen Van Linh), 그리고 현재의 도 므어이(Do Muoi)로 지도층의 안정된 권력승계를 이어왔다.[84] 이러한 베트남 공산당의 정통성과 무리없는 권력승계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베트남의 정치적 안정도는 북한에 비하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베트남은 1986년 제6차 당대회 이후 개혁·개방정책인

---

83) 중국은 14차 당대회와 1993년 14기 3중전회 등을 통해 향후 '政治左傾, 經濟右傾'을 표방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다.

84) 이은호, "베트남의 사회주의체제 변화와 개방정책," 동남아지역연구회, 「동남아의 정치변동」 (서울: 21세기한국연구재단, 1994), p. 202.

도이모이(Doi Moi)정책을 추진하였다. 도이모이정책의 성과로 1986년 775%, 1988년 394%에 이르던 인플레이션이 1989년에는 35%, 1990년에는 68%로 다소 안정을 보이는 한편 1989년 베트남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쌀을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었으며, 150만톤의 쌀을 수출하여 태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의 3대 쌀 수출국이 되었다.[85] 그러나 도이모이의 결과 지역적 격차와 계층간 격차 등 경제성장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났다. 경제개혁조치에 의해서 지역단위의 자율성이 증가하고 중앙 정부의 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 시장경제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해외자본 및 기술을 용이하게 도입하는 남부지역과 그렇지 못한 북부지역간의 격차가 두드러진 것이다.[86]

1991년 제7차 당대회에서는 도이모이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도이모이의 결과 지역·계층간 격차가 발생하고 정치·사회적 다원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간 경제격차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정치·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며, 경제적 개혁

---

85) 박종철,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경제개혁," 동남아지역연구회, 「동남아의 정치경제」 (서울: 21세기한국연구재단, 1995), p. 267.

86) 1990년 현재 북부 고원지대의 경우 부농과 빈농간의 소득격차 비율은 5.5배, 珠江 유역의 경우는 7.5배, 그리고 남부 메콩델타지역은 9.5배에 이르고 있다. Ngo Vinh Long, "Reform and Rural Development: Impact on Class, Sectoral and Regional Inequalities," William S. Tureley and Mark Seldon, eds., *Reinventing Vietnamese Socialism: Doi Moi in Comparative Percpective* (Boulder: Westview Press, 1993), pp. 190~91.

·개방은 가속화하는 도이모이 2기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 신헌법은 당과 국가기구간의 권한 배분, 입법준수 등의 정치적 문제와 함께 다부문경제(multi-sectoral economy)의 원칙,[87] 토지의 사용권, 국영부문·집단경영부문·사적 부문의 독자성 인정, 개인 및 집단의 정당한 재산에 대한 국유화 금지, 대외경제관계의 확대, 외국투자장려 등 경제개혁·개방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원칙을 재확인하였다.[88]

결과적으로 북한은 정치·사회적 안정도와 지도자의 지속적인 개혁·개방의지 등에 있어서 중국·베트남에 비추어 매우 낮은 편으로 평가되며 이는 해외투자가들의 비경제적 투자환경 조건에서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영국의 금융전문월간지 「Euromoney」 최근호에서는 국가안전도(Country Risk) 조사대상 181개국 가운데 북한을 179위, 중국 38위, 베트남을 69위로 평가하고 있다.[89]

---

87) 다부문경제원칙에 따라 베트남의 소유제도는 국영, 국영·민간합영, 집단경영, 사연, 가계경제 등 5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88) Russel Heng Hiang Khng, "The 1992 Revised Constitution of Vietnam: Background and Scope of Changes,"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14, No. 3 (December 1992), pp. 221~29, 박종철,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경제개혁," pp. 268~69에서 재인용.

89) *Euromoney* (September 1995), pp. 306~11.

나. 경영관리제약

1) 물자구입

북한은 합영회사가 생산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원료, 자재, 반제품, 설비, 경영용물자)는 북한내부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북한 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거나 또는 북한 무역회사에 위탁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합영법 시행세칙」, 제51조). 북한내부 구매는 국가계획에 맞물려 연간 물자구입계획을 해당 기관에 제출하고 합영자재상사를 통해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계획에 맞물리지 못한 물자와 합영자재상사를 통한 구매가 불리하거나 불가능한 물자의 경우 북한내 무역기관, 여타 합영·합작회사 및 그밖에 북한에서 승인된 자재공급기관을 통하여 직접 구매할 수 있다.

합영자재상사를 통해 물자구매를 할 경우 그 필요량을 전년도 3/4분기까지 합영상사에 제출하여 합영수출계획에 일치시킨 후 합영자재상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구매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정하며, 해당 기관 또는 기업소는 합영수출계획에 예견된 물자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합영법 시행세칙」, 제50조)하고 있다.

북한은 이처럼 합영기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는 북한내부에서 구입하고 생산제품의 판매는 수출하도록 하며,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에서의 물자수입과 생산제품의 내수판매를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합영회사의 외환수입을 될 수 있는 한 북한 기업으로 이전시키려 하고 있다. 북한내부에서의 물자구매에 대한 가격도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계약한다는 점은 외국인 투자가로 하여금 북한산 물자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물자구입 인센티브를 제공치 못하고 있다. 또한 합영회사 소요물자가 국가계획에 예견된 경우에 한하여 그 구입소요량이 전해 3/4분기까지 합영자재상사에 제기되어야만 북한물자의 우선 구매권이 주어진다고 규정하여 원자재조달 부족, 납기지연, 기준미달 등의 자재조달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국내물자 우선공급과 국가공급계획에 맞물려야 한다는 원칙은 중국의 경우 북한에 비해서는 훨씬 완화되어 있는 편이다. 중국은 외자기업이 독자적으로 물자구입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동일한 조건하에서는 가능한 한 중국에서 우선 구입토록 한다는 비강제적인 규정이 있을 뿐이다. 계획에 의한 공급분야도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국내조달물자가 배급품목인 경우에도 국가계획가격에 의하지만 국영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90]

---

90) 한국무역협회, 「대중국교역 및 투자안내」 (1994.8).

<표 4-17> 합영회사의 물자구입방법

구 분	물자구매처	비 고
원칙	합영자재상사	- 국가계획에 일치(우선공급)
2차	북한내 무역기관, 합작·합영기관, 자재 공급기관을 통하여 직접 구매	- 국가계획에 맞물리지 못한 물자 - 합영자재상사를 통한 구매가 불리, 불가능
3차	수입(직접 또는 위탁)	- 북한내 비생산, 구매불능 - 발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 등 선진기술

베트남의 경우에는 국내물자 구입과 원자재 수입 여부를 전적으로 외자기업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비용조건상 국내물자 구입이 유리할 경우 국가는 외자기업에 대해 이의 공급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북한, 중국에 비해 가장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다.[91]

2) 제품판매

북한은 합영회사의 생산제품 판매에 대하여 개정 「합영법

91) 그러나 국내공업기반이 취약하여 내수조달은 농·수산업, 광물 등 1차 원재료에 국한되는 실정이며, 외환부족으로 인해 관행상 외화형태의 지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행세칙」에서도 종전과 같이 수출이 기본(제53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내수판매도 가능(제55조)하다는 규정이 새로 제정되었다. 단, 내수판매는 원칙적으로 무역기관이나 여타 합영·합작회사를 대상으로 하며, 자재공급기관이나 상업기관을 비롯한 다른 기관이나 기업소에 대한 내수판매의 경우 국가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제55조)하여 부분적인 내수판매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합영회사 생산제품의 질 또는 그밖의 사정으로 수출이 불가능할 경우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까지는 합영공업총국의 승인을 받아 합영자재상사를 통하여 내수판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판매가격은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한 외화가격에 기초한다고는 하나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고 규정(제56조)하여 자의적인 판매가격결정을 배제할 수 없으며, 내수판매대금은 국가승인하에 북한 내부물자나 노임, 각종 사용료, 납부금 등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북한 화폐로 받은 판매대금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의 외국인기업은 지대 안에 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의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하여(일부 대중필수품의 가격은 국가가 정함) 초보적이나마 시장가격의 형성을 허용하고 있으나 지대 밖의 내수판매 경우에는 상품의 가격을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외국인기업법 시행세칙」, 제40

<표 4-18> 합영회사의 판매순위

구 분	제 품 판 매 처	비 고
원 칙	수출(직접 또는 위탁)	- 반출승인(수출허가 불요)
2차	무역회사, 합영·합작회사	
3차	자재공급기관, 상업기관 등	- 국가승인 필요
4차	합영자재상사를 통한 국내판매	- 영업허가 후 1년 이내 - 생산제품의 질 또는 그밖의 사정으로 수출불가 경우

조). 또한 외국인기업의 내수판매는 해당 무역기관을 통하여야 하며 상업망을 통하여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는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7조). 그러나 가장 주목해야 할 사항은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수판매조건이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국내소득수준이 낮고 경제침체와 공업기반의 취약성 등으로 북한 내수판매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외자기업이 투자허가 신청시 정관 및 계약서상에 수출 및 내수비율을 명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내수비율 범위 안에서 국내시장에 공급할 수 있으며, 생산되는 제품이 중국에서 부족하여 수입해야 하는 제품일 경우에도 국내시장 공급이 가능하다. 내수판매 가격의 결정은 물가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 국제시장가격을 참고해 결정되는데, 국영기

업과 동종의 제품인 경우 동등한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은 내수시장진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완전한 가격자유화가 되어 있지 않고 유통구조가 복잡하여 용이하지 않다. 또한 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의 특구 밖 내수시장판매에는 많은 제한이 존재하고 있다.[92]

베트남에서도 내수보다는 수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계약당사자는 소요외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품의 수출비율과 베트남시장에서의 내수비율을 합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내수판매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규정은 없는 셈이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내수판매로 벌어들인 베트남 화폐를 외화로 바꾸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93]

3) 외환관리

북한은 중국, 베트남 등의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외화의 수급을 계획에 의해 관리하는 외화집중관리제도하에서 ① 북한내 외화현금의 유통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② 외화거래, 저금, 예금, 저당 등의 외국환 관련 거래은행의 제한, ③ 외화관리기관에 의한 환율결정, ④ 외화관리기관의 결

92) 한국무역협회, 「대중국교역 및 투자안내」 (1994.8), p. 342.
93) 삼성경제연구소, 「베트남」, pp. 191~92.

제통화지정 등을 그 수단으로 삼고 있다.

북한의 「외화관리법」 및 「외화관리법 시행규정」 (이하 「시행규정」)에 의하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외화현금은 지정된 은행 또는 외환교환소에서 북한원과 바꾸어 써야만 하며 북한 내에서는 외화의 현금유통을 금지하고 있다(「외화관리법」, 제6조, 동법 「시행규정」, 제9조). 따라서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 합의하에 무역은행이나 기타 북한은행에 북한원계좌, 외화원계좌, 외화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를 통해서만 외화와 북한원 거래를 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정」, 제20조).[94]

경영활동에 필요한 외화의 조달은 ① 초기출자시 불입된 외화계정, ② 수출대금, ③ 외국은행으로부터의 외화차입 등 기업자체의 계획에 의해 조달하고, 경영에 필요한 북한원은 이 계정한도 내에서 교환하며, 그 적용환율은 북한의 외환관리당국이 정하는 공식환율에 의한다.[95]

---

94) 북한원계좌에는 북한영역 안에서 경제활동과정에서 취득한 북한원화를 넣고, 외화원계좌에는 전환성 외화를 북한원으로 전환한 돈을 넣으며 외화계좌에는 지정된 외화를 화폐별로 넣을 수 있다.

95) 북한의 환율제도는 외환 수급계획에 따라 계획기관에서 환율을 임의로 결정하며 공정환율(US $1은 약 1북한원)과 무역환율(US $1은 약 2.2북한원)을 사용하는 복수환율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은 「합영법시행세칙」에서 출자시 출자자산의 외화환산이 필요한 경우 '무역은행이 공포하는 환율'을 적용(제29조)하며, 합영회사의 회계처리 적용환율 역시 '무역은행이 정한 화폐환산비율'에 따른다(제78조)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외국투자기업의 출자, 경영상의 외환수입·지출, 이윤의 송금 등에 무역환율을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나

북한 영역 안에서 합법적으로 획득한 북한원화는 북한원계좌에 예치하며 북한원계좌의 돈은 외화로 전환할 수 없다고 규정(동법 「시행규정」, 제6조)하여 내수판매로 얻은 북한원화는 교환성통화로의 태환이 불가능하다. 또한 외국투자기업을 비롯한 외화를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기 및 연간 외화재정상태표와 외화수지 보고표를 외화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할 의무(동법 「시행규정」, 제41조)가 있어 결국 외국투자기업은 북한의 외화집중관리체계 내에서 통제를 받으며 필요 외화를 자체 조달해야 한다.

중국은 1993년 12월 29일 「외환관리체제의 진일보개혁에 관한 중국인민은행공고」를 통해 단일환율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환율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다.[96] 중국 정부는 인민폐 환율단일화 조치와 함께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적용하던 외화보유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외국투자기업이 필요에 따라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을 자유로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외환관리제도 개방을 단행하였다.[97]

공식적으로 무역환율을 적용할 것을 규정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정환율과 무역환율을 병행적용함으로써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96) 중국은 1994년 1월 1일부로 공정환율과 조절시장환율로 양분되어 있는 이중환율제를 폐지하고 공정환율을 조절시장 환율수준으로 평가절하하여 공정환율을 미화 1달러당 8.7중국원 내외로 고시하였다(종전의 공정환율은 US 1$당 5.8중국원).

97) 대한무역진흥공사, 「북방통상정보」 (1994.2), pp. 27~28. 이번 외환

한편 베트남의 경우에도 1991년 코메콘체제 붕괴 이후 대부분의 무역이 경화결제로 전환되고, 심각한 외화부족 상태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1991년 10월 '외화관리규정'을 만들어 엄격한 외환관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이 외화지출(외국인 투자가의 해외송금을 포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1993년 4월 개정된 「외국인투자법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외화수지균형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국가협력투자위원회(SCCI)의 심사에 의해 외자기업의 보유 베트남화를 외화로 바꾸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외환부족을 보충하도록 개선하였다.[98]

이와 같이 중국은 획기적인 외환관리제도 개방을 단행하였고, 베트남은 외환수지균형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데 비하여 북한은 외환수지균형 의무를 강제할 뿐 이를 보장할

관리제도 개혁조치 이전까지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수출 등을 통해 취득한 외화수입을 유상 납입제도와 유보제도를 통해 외국환은행을 거쳐 중국은행으로 집중시켜야 했다. 외화가 필요할 경우 자사의 외화보유액(즉 외화사용가능액 실링) 범위 내에서 중국은행으로부터 다시 유상으로 배정받아 사용하거나 외환조절시장을 통해 타사로부터 외화현금이나 외화유보액을 매입하여 사용해 왔다. 이때 유상납입과 자사 외화유보액 범위 내의 유상배정시에는 공정환율이 적용되며 외환조절시장에서는 거래수급에 따른 조절시장환율이 적용되는 이중환율제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외환상납제와 이중환율제로 인해 외화유보액의 상당부분은 조절시장을 통해 공정환율보다 높은 조절시장환율로 거래할 수밖에 없었다.

98) 베트남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1993.4.16, 제82조. 베트남의 심각한 외환부족상태를 감안할 때 그 실효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경직된 외화관리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경직된 외화관리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국내판매로 획득한 북한원화가 외화로 교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 외화수입이 부족한 외국투자기업은 외화부족으로 인해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많으며, 둘째, 복수환율제도하에서 시장환율이 아닌 외화관리당국이 임의로 결정하는 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외화자금운용상 환율편차에 따른 불이익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99] 셋째, 외화거래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기업활동에 제약이 크다는 것이다.[100]

4) 노무관리

북한은 1993년 12월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외국인투자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합영법시행세칙」 등에서 단편적으로 규율되어 온 외국투자기업 노동 관련 규정을 체계화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북한의 「노동규정」은 ① 전적으로 소재지 노동행정기관에 의존해야만 하는

99) 중국은 1994년 1월부터 시장기능에 맡기는 단일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정부가 부정기적으로 환율을 결정하여 시장환율과 공식환율의 차이가 심하였으나, 1988년 이후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어 현재는 공식환율과 실세환율의 차이가 크지 않다.

100) 전홍택·오강수, 「북한의 외국인 투자제도와 대북투자 추진방안」, p. 177.

노동력공급 규정, ② 북한 근로자의 고용의무화와 외국인 고용의 제한, ③ 노동당 외곽조직의 성격을 갖는 직업동맹과 노동계약체결, ④ 최저 임금제도의 도입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우선 고용에 있어서 북한의 외국투자기업은 직접고용은 불가능하며 노력알선기관과의 노력채용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노동력을 공급받아야 한다.[101] 따라서 중국이나 베트남의 외국투자기업이 주무행정기관이나 노동공급기관으로부터 추천이나 계약에 의해 종업원을 채용하는 것 이외에도 직접 공개모집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북한의 경우 채용단계에서 노동력의 질을 선별채용하는 데에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102]

물론 노력알선기관이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기업소재지 안에 있는 노동력으로 보장해 주고, 이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타지역 노력알선 기관이 이를 보장해 준다(「노동규정」, 제12조)고 하지만 「노동규정」 제14조는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소재지 노력알선기관이 보내주는 노동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투자기업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셈이다. 또한

---

101) 계약서에는 업종별·기능별 근로자수, 채용기간, 임금, 노동생활보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북한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1993.12.3, 제11조.

102) 베트남의 고용방식은 다음의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지방노동사무소의 소개로 노동자를 선택하는 방식, 둘째, 각 도시에 있는 노동공급서비스기관이나 투자서비스기관에 의뢰하는 위탁방식, 셋째, 기업이 직접 대중매체를 통하여 노동자를 공개모집하여 직접선발 후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다.

「노동규정」 제13조에는 "북한 기업소를 모체로 하여 창설하는 합작기업, 합영기업은 필요한 노동력을 그 기업소의 종업원들 가운데서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여 외국투자기업의 선별 고용을 제약하고 있다. 이는 국가계획에 따라 직장에 배치되는 노동력 이동에 대한 통제의 정도가 북한의 경우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해 훨씬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103]

한편 외국인 채용을 별도의 수속절차를 취하게 하여 가능한 한 내국인 채용을 강화하고 있는 것(「노동규정」, 제4조)과 채용기간 만료 전 종업원 해고 사유를 규정(「노동규정」, 제15조)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북한과 중국, 베트남이 크게 다를 바 없다.

단지 북한의 노동조합에 관련된 규정을 보면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종업원을 대표하는" 직업동맹과 노동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으며, 이 노동계약에는 종업원이 수행해야 할 임무, 생산량과 질의 지표, 노동시간과 휴식, 노동보수와 보험후생, 노동보호와 노동조건, 노동규율, 상벌, 사직 조항 같은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노동규정」, 제9조)고 되어 있다. 이 규정만으로는 북한 근로자들의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노동규정」 제10조에서 "이 규정 집행에 대한 감독통제는 노동행정기

---

103) 전홍택·오강수, 「북한의 외국인 투자제도와 대북투자 추진방안」, pp. 150~51.

관이 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북한 근로자들 자체의 단체행동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최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기업설립 후 1년 이내 우리 나라의 노동조합에 해당되는 공회설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규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외국투자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노무관리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다.[104] 베트남은 개혁정책 이후 사회경제적 혼란예방과 외자유치를 강화할 목적으로 근로자들의 파업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을 중심으로 노사분쟁이 빈발하자 최근 정기국회에서 일반 근로자들이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새로운 노동법을 승인하였다.[105]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장에서 현지 근로자의 노동쟁의에 따른 부담은 베트남이 가장 크고 북한이 가장 적다고 할 수 있다.

---

104) 이미 1992년 4월 전면 개정된 중국 공회법에는 "공회는 기업의 노동쟁의 알선에 참가한다"(제20조)고 규정하는 한편 "기업이 노동자·직원의 노동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공회는 의견을 제출하고 처리를 요구한다"(제21조)고 명시하여 중국 정부도 파업과 태업 등의 노동분쟁에 대한 준비를 해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무역진흥공사, 「북방통상정보」 (1994.9).

105)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노사분쟁이 일어날 경우 근로자측은 우선 기업 내의 노사화해위원회와 해당지역의 노동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해야 하나, 조정에 동의할 수 없을 경우 기업내 노동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권율, "베트남 투자환경 및 진출과제," 기업은행, 「경영과 기술」 (1995.7, 8), p. 41.

<표 4-19> 북한·중국·베트남의 경영관리제도 비교

구분	북 한	중 국	베 트 남
물자구입	·국내구입 불가능시 해외구입(국내물자 구입 강제원칙) ·국내물자구입도 국제가격기준	·같은 조건시 국내구입 ·국영기업과 동일가격	·국내물자 의무조달 규정 없음
내수판매	·독자적인 내수판매 제한 ·국가가격제정기관이 판매가격 결정 ·내수판매대금 사용제한	·제한규정 없음	·제한규정 없음
외환관리	·외화수지균형 의무 ·내수판매대금(북한 원화)외화교환 불가 ·복수환율제도 (공식환율, 실세환율 큰 차이)	·개방적 외환관리 제도 ·외환매입 제한 없음 ·단일환율제도 (공식환율, 실세 환율 같음)	·외화수지 균형 의무 ·내수판매대금 외화교환 부문허용 ·변동환율제 (큰 차이 없음)
노무관리	·노동행정기관을 통한 고용 ·직맹과 노동계약	·직접고용 가능 ·공회(노동조합) 설립 의무화	·직접고용 가능 ·노동자파업 가능

3. 미시적 투자환경

미시적 투자환경은 외국투자기업의 이익을 증대시켜 주기 위한 인센티브 조치로서 조세감면, 소득세율저하, 관세혜택 등의 세제혜택과 운송, 통신, 동력 등 사회간접자본의 발달상태 및 사용비용 등도 이에 포함된다.

가. 세제혜택

북한은 1993년 1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과 1994년 2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시행규정」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 관련 세제를 재정비하였다.[106] 북한은 외국인투자유치가 활발한 중국, 베트남 등의 국가들을 의식하여 새로 제정된 외국인투자 관련 세제에서는 경쟁국과 유사하거나 또는 다소 유리한 조세감면 혜택을 책정하고 있다.

1) 기업소득세

외국투자기업이 북한내 운영을 통하여 창출한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기업소득세는 일반지역에서 중국이 33%(지방소득세

106) 이에 따라 1985년에 제정된 「합영회사 소득세법」과 「외국인 소득세법」은 자동폐기되었다.

3%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북한은 베트남과 같은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우도 북한이 14%로 중국의 15%보다 낮다. 베트남의 수출가공구내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제조업에는 10%, 서비스업에는 15%의 기업소득세가 적용된다.

또한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과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과 같은 투자장려부문의 경우 중국이 15%인 반면 북한은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베트남은 투자장려부문에 대해서 부문별로 10~2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표 4-20> 참조).[107] 따라서 북한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율은 전반적으로 베트남과는 대동소이하며 중국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108]

---

107) 중국은 「外商人投資企業과 外國企業 所得稅法」과 同 「實施細則」, 1991.7.1에 의거하며, 베트남은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1993.4.16 참조.

108) 중국은 그동안 외자유치를 시행해 온 세제특혜조치를 폐지하고 대신 무역부문에서는 대대적인 자유화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경제특구에 대한 법인세율 차등적용도 당분간은 유지할 것이나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측이다. 「중앙일보」, 1995.11.14.

<표 4-20> 베트남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일반지역)

분 야	세 율	감면기간
○ 석유, 가스 및 희귀자원	25% 이상	1년면세, 2년 50%
○ 일반적인 외국투자 경우	25%	1년면세, 2년 50%
○ 다음 요건 중 2개를 만족시키는 프로젝트에 대해 - 500인 이상 고용 - 선진기술 사용 - 생산품의 80% 이상 수출 - 1천만 달러 이상의 법정자본	20%	2년면세, 3년 50%
○ 사회간접자본 건설 ○ 천연자원 개발(석유, 가스 및 희귀자원 제외) ○ 중공업(야금, 기초과학, 기계제조, 시멘트) ○ 다년생 산업용 작물 경작 ○ 산악지역이나 척박한 지역의 투자 ○ 프로젝트의 종결시 재산(호텔포함)을 무상으로 베트남에 이전	15%	2년면세, 4년 50%
○ 산악지역이나 척박한 지역의 사회간접자본건설 ○ 조림 ○ 특별히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프로젝트 ○ BOT	10%	4년면세, 4년 50%

자료: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시행령」, 1993.4.16; 「재무부령」, 1993.6.30.

2) 소득세 감면

조세감면(tax holiday)에 있어서는 중국과 베트남이 부문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비해서 북한은 주로 자유경제무역지대에 감면혜택을 집중시키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109]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에 따르면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한 제조업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나 국가장려부문(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 건설부문 등)의 외국투자기업이 10년 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난 해로부터 3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감면해 준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한 서비스업부문의 외국인투자기업이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난 해로부터 1년간 면제하며 그 이후 2년간은 50%에서 감면해 준다.

또한 총투자액이 6천만원 이상되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철도, 도로, 통신, 비행장, 항만 등 하부구조 건설부문의 외국

109) 자유경제무역지대 이외의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소득세율은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세금감면혜택은 오히려 삭제되었다. 종전의 「합영회사 소득세법」에서는 투자분야와 지역에 관계없이 "기업운영을 시작한 때로부터 3년까지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신규법에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난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다음 3년간은 50% 범위에서 감면해 준다.

중국의 조세감면 혜택은 기본적으로 일반지역과 경제특구지역 구별 없이 제조업분야의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이윤발생 연도부터 2년 동안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이후 3년간 50% 감면해 준다. 이외에 70% 이상 수출기업은 상기 기본감면 후 계속해서 소득세의 50%를 감면, 선진기술기업은 기본감면 후 3년간 50% 감면, 농업·임업·목축업 또한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기업은 기본감면 만료 후 10년간 10~15% 감면의 특혜를 주고 있다. 한편 경제특구에 한하여 출자액 500만 달러 이상의 서비스업이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 이윤발생 후 1년간 면제해 주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해 준다.[110]

베트남의 외국투자기업은 기본적으로 운영기간에 대한 조건 없이 이윤발생 연도부터 소득세가 1년간 면제되고 이후 2년간 50% 감면혜택을 받는다. 그외 투자장려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은 <표 4-2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득세 20% 적용부문의 경우 이익발생 연도부터 2년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해 주며, 소득세 15% 적용부문에 대해서는 2년간 면제 후 4년 동안 50% 감면, 소득세 10% 적용부문에는 4년간 소득세 면제 후 4년 동안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수출가공구 내에서는 제조업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은 이윤을 얻기 시작한 해로부

1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편람: 증보판」 (1994.10), p. 431.

터 4년간 면제해 주고, 서비스기업은 이윤발생 연도부터 2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해 준다.[111]

3) 개인소득세

북한의 외국인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기준액수로 보면 중국, 베트남에 비해 유리하다. 북한이 월 2,000북한원(약 930달러) 이하는 면세이고, 소득액에 따라 초과누진세를 4~20%(9단계)까지 부과하고[112] 있는 반면 중국은 월 800中國元(약 95달러)까지 면세하고 그 이상의 소득액에 대해서는 9단계의 초과누진세율(5~45%)을 적용한다.[113] 베트남은 월 500만동(약450달러)이하는 면세이고 초과소득액에 대해서는 10~50%(5단계) 초과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114]

그러나 과세대상의 범위를 보면 북한은 중국, 베트남에 비해

---

111) 대한무역진흥공사, 「북방통상정보」 (1993.5), p. 57.

112) 1985년 제정된 「외국인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소득세의 면세점이 월 500북한원, 초과금액에 대한 누진세율은 최고 30%였다.

113) 북한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공식환율로는 보통 1달러당 2.15북한원으로 中國元(US $1=8.5元 정도)에 비해 약 4배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북한과 교역을 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평가하기는 中國元의 1/10 수준이다.

114) US $1=VND 10,971(1994년 6월 현재). 베트남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1992년 4월 개정 이후 1994년 6월 2차로 개인소득세 인하를 단행하였다. 이전의 외국인 개인소득세 면세점은 300만동이었다.

불리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은 180일 이상 북한에 체류하면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1년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외소득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다. 반면에 중국은 1년 이상 5년 이내 거주자로서 국외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로 송금된 부분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5년 초과 거주자는 제6년도부터 모든 국외소득이 과세대상이 된다.[115] 베트남의 경우는 연간 183일 이상 현지 체류자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국외소득에 대한 과세는 없다.[116] 또한 우리 나라의 경우 중국(1994.3), 베트남(1994.5)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 대한 투자기업들은 이중과세를 면할 수 있으나 북한과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이중과세의 부담이 있다.[117]

---

115) 중국의 「개인소득세법」, 1994.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편람: 증보판」, p. 525 재인용.

1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트남편람: 증보판」 (1995.3), p. 387.

117) 1994년 3월 체결된 한·중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은 1994년 9월 양국의 국내비준절차를 거쳐 확정된 후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협정을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① 과세상 중국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며, ② 6개월 이내 건설활동과 항공운수소득에 대하여 중국 내에서 면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③ 중국에서 납부한 기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및 개인소득세 세액을 우리 나라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④ 중국에서 세액납부를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그 감면받은 세액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액을 전부 우리 나라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대한무역진흥공사, 「중국통상정보」 (1995.5), p. 32. 한편 베트남에서는 한·베트남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1994.5)로 우리 나라의 상사주재원

4) 재투자시 소득세 감면

북한, 중국, 베트남은 모두 외국투자기업의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기업의 재투자시에 소득세를 환급해 주고 있다. 북한은 외국투자기업이 이윤을 재투자하여 5년 이상 운영할 경우 하부구조 건설부문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액의 전부를, 다른 부문에 대해서는 50%를 환급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외국투자기업이 재투자하여 5년 이상 운영할 경우 재투자분에 대한 기업소득세 40%를 환급해 주며, 첨단기술 및 수출기업의 경우에는 100% 환급의 혜택이 있다. 베트남은 외국투자기업이 재투자하여 3년 이상 운영하면 재투자분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100% 환급하고 있다.

5) 관세

북한은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① 외국투자기업이 생산과 경영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자와 생산하여 수출하는 물자, ② 가공무역, 중계무역,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자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118]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특혜관세제도를

이나 파견근로자의 개인소득세 납부는 면제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트남편람: 증보판」, p. 388.

실시하여 ① 외국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상품을 팔기 위하여 들여오는 경우, ②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생산되었거나 수입한 상품을 북한의 다른 지역에 팔기 위하여 내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관세이다.[119]

중국과 베트남의 관세면제 혜택은 일반지역과 경제특구의 구별 없이 북한의 일반지역과 대동소이한 조건이다. 중국은 ① 외국측의 출자분으로 수입하는 기계, 설비, 부품, 부속품, ② 수출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원재료, 부품, 포장재료, ③ 외자기업 상품의 국외수출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120] 베트남의 경우에는 생산설비, 부품 등 자본재 수입세는 면제이나 수출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원재료, 부품의 수입은 임시수입세 과세대상이 되며 수출상품이 된 후 각각에 대해 환급한다.[121]

---

118) 북한 「세관법」, 1993.12.10.

119) 북한 「자유경제무역지대법」, 1993.4.8.

120) 중국은 외국투자기업의 기계설비·부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특례를 1996년 1월 1일부터 폐지할 것을 결정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1995.11.27, 「중앙일보」, 1995.11.29 재인용. 한편 중국은 외국투자기업의 원재료 수입에 대한 면제특혜도 1996년 1월 1일부로 폐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東亞日報」, 1995.10.26.

121) 베트남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1994.3.16, 제76조.

<표 4-21> 북한·중국·베트남의 세제혜택 비교

구 분	북 한	중 국	베 트 남
기업 소득세	·일반지역 25% ·자유경제무역지대 14% ·투자장려부문 10%	·일반지역 33% ·경제특구 15% ·투자장려부문 15%	·일반지역 25% ·수출가공구 ┌제조업 10% └서비스업 15% ·투자장려부문 10~20%
소득세 감면	·장려부문 및 지대내 제조업[1]: 3년 면제 후 2년 50% 감면 ·지대내 서비스업[1]: 1년 면제 후 2년 50% 감면 ·지대내 총투자액 6천만원 이상되는 하부구조건설부문: 4년 면제 후 3년 50% 감면	·기본: 10년 이상 운영 제조업: 2년 면제 후 3년 50% 감면 ·70% 이상 수출기업: 기본+50%감면계속 ·선진기술기업: 기본+3년 50%감면 ·농업, 임업, 목축업: 기본+10년 10~15% 감면 ·특구내 출자액 500만 달러 이상의 10년 이상 운영서비스업: 1년 면제 후 2년 50% 감면	·기본: 1년 면제 후 2년 50% 감면 ·투자장려부문: 2~4년 면제 후 3~4년 50% 감면 ·수출가공구 제조업 4년면제 서비스업 2년면제
개인 소득세	·월2천원(약930달러) 이하 면세 ·초과누진세 4~20%	·월800元(약95달러) 이하 면세 ·초과누진세 5~45%	·월500만동(약500 달러)이하 면세 ·초과누진세 10~50%
재투자 혜택	·재투자하여 5년 이상 운영시 소득세액 50% 환급(하부구조건설부문은 100%)	·재투자하여 5년이상 운영시 소득세 40% 환급(첨단기술 및 수출기업은 100%)	·재투자하여 3년 이상 운영시 소득세 100% 환급
송금세	·일반지역: 없음 (세관신고의무) ·자유경제무역지대: 없음 (세관신고의무 없음)	·일반지역: 10% ·경제특구: 10%	·일반지역: 5~10% ·수출가공구: 5%

주 1): 10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6) 송금세

북한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외국투자가는 이윤과 소득금,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외화를 북한 영역 밖으로 송금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외화관리기관의 확인문건을 세관에 제출해야 하지만 세금은 물지 않는다. 외국인은 임금과 북한 영역 안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의 60%까지 해외에 송금하거나 가지고 나갈 수 있으며 60%가 넘는 금액을 송금하거나 가지고 나가려면 외화관리기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외화관리법시행규정」, 제55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는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 외화지불수단 등을 외화교환증명문건 없이 또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자유롭게 북한 영역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다(「외화관리법시행규정」, 제53조). 이에 비하여 중국의 경우에는 일반지역, 경제특구 구별 없이 외화의 국외 송금시 10%의 송금세가 부과되며, 베트남은 일반지역에서는 5~10%, 수출가공구에서는 5%의 송금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완비되지 못한 사회기간 시설이 외국 기업의 투자진출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나. 인프라

사회간접자본 또는 하부구조(Infrastructure)란 일국의 경제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시

설이다. 특히 수송과 통신분야의 경우 인체에 있어 혈관과 같은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활동의 능률성과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이자 외국투자가에 있어서는 투자의 타당성 검토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가늠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도국의 경제특구에서는 이러한 인프라 시설을 완비하고 나서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를 유치한데 반하여 최근의 중국, 베트남, 북한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경우에는 인프라 시설 건설 자체에 외국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다.[122] 따라서 완비되지 못한 사회기간 시설이 외국 기업의 투자진출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1) 수송망

북한의 수송체계는 철도수송을 주축으로 하고 도로수송과 해운수송은 철도수송과의 연계수송으로서 보조적 역할을 담당

122) 북한, 중국, 베트남 3국 모두 사회기반건설 부문을 투자장려부문으로 정하고 조세, 임대료 등에서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 합작건설에 관한 법규를 합작법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경우에도 1992년 12월 「외국인투자법」의 개정시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위해 「건설·운영·양도계약」(Build-Operate-Transfer Contract)이란 특수한 형태를 신설하였다. 북한은 중국, 베트남과는 달리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한 별도의 조직형태를 가지는 법규를 두지 않는 대신 「외국인투자법」 제6조 및 제7조에서 사회간접자본 건설부문을 장려부문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고 있다. 화물수송의 경우 철도수송이 전체물품량의 90%를 담당하고 있다. 도로수송과 해운수송이 각각 7%, 3%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여객수송의 경우도 철도수송이 62%, 도로수송이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운수송은 1% 미만이다.[123]

ㅇ 철도·도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주변의 철도는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이루고 있는 두만강과 해안선을 따라 청진-회령-남양-학송-선봉-나진-청진으로 연결되는 총연장 405km의 순환망(북부지구 철도윤환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1995년 2월 함북 회령-남양구간 80km를 전기화한데 이어 10월에는 남양-학송간(88km) 전기화 공사를 완성하여 405km 전구간을 전기화하였다. 복선구간은 34km(8.4%)이다.[124]

러시아방면으로는 두만강역에서부터 나진항과 청진지구 남

123) 북한의 전반적 사회간접자본 실태에 대해서는 남궁영,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실태분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참조.

124) 북한의 철도전기화율은 1994년 기준으로 철도총연장 5,112km의 76%인 3,866km에 이른다. 이같이 북한이 철도전기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는 첫째, 전기기관차가 마력이 높아 경사가 심한 북한의 산악지대에 효율적이며, 둘째, 노후화되어 가는 증기기관차의 대체가 불가피한 설정이며, 셋째, 수입유류에 의해 움직여야 하는 디젤기관차보다는 전기기관차 운행으로 동력의 자급화를 기하려는 데 있다.

강덕역까지 134km 구간이 혼합선(북한 표준궤: 1,435mm, 러시아 광궤: 1,676mm)으로 구성되어 있어 러시아로부터의 화물열차가 직접 나진항과 청진지구까지 진입할 수 있다. 북한의 남양역과 중국의 도문역 사이에는 복선철길이 연결되어 있으며 삼봉역과 중국의 개산둔, 훈융과 중국의 훈춘 사이에 철도연결사업이 추진되고 있다.[125]

한편 북한의 철도체계는 높은 전기화에도 불구하고 전체노선의 대부분이 단선이기 때문에 열차운행 빈도가 높아질수록 정차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져 전체 열차운영의 효율성은 낮은 상태이며 전력난으로 철도수송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북한의 철도는 침목, 노반, 기관차 등의 문제로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문제가 있다. 평남선(평양-남포)은 38km/h, 평개선(평양-개성)은 37.4km/h 정도이며 평양과 나진간의 평라선은 이보다 더 느려서 시속 25km 밖에 되지 않는다.[126] 북한철도출판사가 펴낸 「려객렬차시간표」에 보면 평양-나진(819km)행 기차는 오후 1시 7분 서평양역을 출발, 다음날 밤 10시 25분에 나진역에 도착한다. 평라선은 '상급침대'와 '식당차'를 갖춘 고급열차로 표시되어 있는데도 국내여행에 33시

125) 삼봉과 개산둔, 훈융과 훈춘 사이에는 이미 철교 또는 철교기둥들이 건설되어 있어 쉽게 철로를 연결할 수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의 사회간접시설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제Ⅲ장 참조.

126) 張世和, 「동북아 운송체계의 현황과 전망」 (서울: 해운산업연구원, 1992), pp. 129~30.

간이 소요되는 셈이다.

북한의 도로수송은 주로 철도역이나 항구 등과의 근거리를 잇는 연결수단으로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철도나 수운이 없는 지역에서만 장거리 수송을 담당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도로는 지역간(inter-region) 교통수단으로보다는 지역내(inter-region) 연결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127] 따라서 북한의 도로건설 운영방침은 연료절약, 차량수명연장 등을 감안하여 30km 이내의 단거리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도로시설 현황을 보면 1994년 말 현재 도로총연장이 23,219km이며 이 가운데 고속도로는 524km에 불과하다. 포장도로는 약 1,861km로서 포장비율 10% 미만으로 도로시설 수준이 극도로 열악한 상태이다.

자유경제무역지대 주변의 도로는 청진-무산, 청진-회령, 청진-나진, 무산-나진 구간의 도로들에 의하여 청진-회령-온성-샛별-선봉-나진-청진을 연결하는 순환망이 형성되어 있으며, 길이는 385km이다. 그러나 도로의 대부분이 비포장도로이며, 도로폭도 차량 1대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이다.

북한은 최근 나진·선봉지역과 중국의 훈춘을 연결하는 국경도로를 새로이 개통했으며 현재 나진과 샛별간 112km의 도로

---

127) 북한에서 도로수송이 보조적 역할에 머무는 이유는 북한의 험준한 지형적 여건과 중화학공업 위주에 따른 벌크화물의 도로수송제약, 주민의 자유이동이 전제가 되는 자동차교통의 확대기피, 자력갱생 경제원칙에 따른 석유사용억제 등을 들 수 있다.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다.[128] 또한 1993년 9월 중국과 합작으로 청진-회령(95km)간 비포장도로를 너비 12m의 포장도로 확장공사가 시작되어 현재 도로 기반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화물과 승객 양자 모두 교통량에서는 도로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 화물의 62.4%, 승객의 74.1%가 도로수송에 의존하고 있다. 1993년 말 현재 베트남의 도로총연장은 약 10만 5천km이며 도로포장률은 10~20%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나마 포장도로의 ⅔ 정도는 머캐덤도로(석회석과 같은 자갈을 여러 겹으로 깔아 포장하는 공법으로 만든 도로)이다. 국도(총연장 10,800km)의 평균 노폭은 5m 정도로 1차선 중심이며 도로여건을 반영하여 규정상 최고속도는 시속 35km이나 실제로는 20km 이상 속도를 낼 수 없을 정도이다.[129]

중국의 도로총연장은 1993년 말 현재 108만 3,500km에 달하고 있으나 도로를 등급별로 살펴보면 설계속도가 시속 120km 이상인 고속도로(4차선)는 0.05%, 1급도로(100km/h)는 0.25%에 불과한 반면 설계속도 시속 40km 이하인 4급 이하 도로(1

---

128) 「內外通信」, 주간판 제975호, 1995.10.19.

129) UNDP의 조사에 의하면 베트남 간선도로의 표면상태는 13.5%만이 양호한 상태이며 약 40%의 도로가 불량 또는 매우 불량한 상태이다. 북부지역 58%, 남부지역 18%의 간선도로가 극히 열악한 상태여서 보수하거나 재건설해야 할 형편이다. 박주욱, 「베트남 운송체계의 현황과 개발과제」 (서울: 산업기술정보원, 1993) 참조.

~2차선)가 79%를 차지하고 있다.[130]

ㅇ 항만

북한의 항만시설은 동해의 청진, 나진, 선봉, 흥남, 원산과 서해의 남포, 송림, 해주 등 모두 8개의 무역항이 있으며 1994년 현재 연간 총하역능력은 만톤이다. 북한은 1991년 12월 나진, 선봉, 청진 등 3개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전진기지로 개발한 것임을 밝혔다.

청진항은 동항과 서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부두 총연장은 2,138m로서 7개 부두로 구성되어 있으며 5천톤급 선박 5척과 1만톤급 선박 8척이 동시접안할 수 있다. 연간 하역능력은 동항 87만톤, 서항 713만톤으로 총 800만톤이다. 청진항의 철도와 도로는 북부지구윤환선을 통하여 중국,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러시아 광궤철도선을 배합한 혼합선이 항까지 들어와 있다. 인입철도의 총길이는 21.6km이다.

청진항의 부지면적은 동항 19만 2,500m^2, 서항 82만 1,250m^2로 총 101만 3,750m^2이다. 항의 집보관면적은 총 12만 6,000m^2이며 그중 창고면적은 2만 7,000m^2, 야적장면적은 9만 9,000m^2이다. 청진항의 주요 설비들은 5톤급 항만기중기 16대, 10~22

13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편람: 증보판」, p. 471. 1992년 현재 중국의 전체 화물운송에서 도로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74.8%이다.

톤급 항만기중기 5대, 시간당 20량 처리능력의 화차회전기 1대, 시간당 385톤 능력의 정광상선기 2대, 시간당 150톤 능력의 양곡 상선 1대 등이다.[131] 청진 동항은 주로 곡물 및 일반 화물을 취급하고 김책제철소 가까이 위치한 서항은 주로 철강제품 및 석탄을 취급한다.

나진항은 항구가 위치하고 있는 나진만 입구에 대초도, 소초도 두 개의 섬이 방파제 역할을 대행하고 있어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항구에는 3개의 돌출한 부두가 있고 부두연장은 2,515m이다. 연간 하역능력은 300만톤이며, 5천톤급 선박 5척과 1만톤급 선박 8척의 접안이 가능하다. 항의 총부지면적은 38만m^2이고 보관면적은 20만 3,000m^2이며 그중 창고면적은 2만 6,000m^2, 야적장면적은 17만 7,000m^2이다. 나진항은 북부철도윤환선 및 주요 도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러시아 화차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다. 철도인입선의 총 길이는 16km이며 그중 광궤는 11.7km이다. 취급하는 주요 화물은 석탄, 비료, 시멘트, 파철, 원목 등이다.[132]

---

131) 청진항은 최근 항만설비·시설을 확충하여 30톤급 트레일러 및 100톤급 기중기들을 갖춘 것으로 전해진다. 「內外通信」, 1994.5.27.

13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진·선봉지구 경제무역지대의 현 실태와 전망에 대하여」 (1992). 나진항은 1965년부터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와 나홋카항이 겨울에 동결되면 러시아 극동지역의 화물(연간 100~150만톤 정도)을 중계해 왔다. 러시아의 석탄과 카리비료, 수산물 등은 화차에 의해 두만강교를 거쳐 나진항에 입항, 중국과 일본 및 동남

선봉항은 최근에 무역항으로 개항했으며 나진항과 함께 두만강지역개발사업의 중심 항만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나진에서 북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거리에 있으며, 현재는 원유하역 전문항으로 연간 20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정유공장(승리화학공장)과 북한에서 유일한 석유화력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다. 총 부지면적은 20만m^2이며 원유 입하부두와 원유제품 출하 부두

<표 4-22> 청진항 시설능력

구 분	부두연장 (m)	접안능력(척)		하역능력 (만톤)	취급화물
		5천톤급	1만톤급		
동항(합계)	754	3	2	87	
1호부두	210	2		20	일반화물
2호부두	392	1	1	37	일반화물
3호부두	154		1	30	양 곡
서항(합계)	1,384	2	6	713	
1호부두	176	1		100	양곡,모래
2호부두	308		2	150	광석,강재
3호부두	413	1	2	300	자 철 광
4호부두	487		2	163	코크스탄
총 계	2,138	5	8	800	

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진, 선봉지구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현 실태와 전망에 대하여」(1992).

아로 운반되는 한편 일본의 강관과 잡화, 호주의 알루미늄 원료 등이 나진항을 거쳐 러시아로 반출되고 있다.

로 되어 있다. 원유 입하부두는 3,263m의 해저 파이프라인과 일정 계류부표를 설치하여 25만톤급까지의 유조선을 대고 승리화학공장으로 원유를 수송할 수 있게 건설되어 있다. 원유제품 출하부두는 455m 길이에 5천톤급 유조선 2척을 동시에 대고 가공된 원유를 공장에서 유조선까지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직접 주입할 수 있도록 건설되어 있다. 이외 보조선들을 위한 100m 길이의 보조부두가 있다. 연간 하역능력은 200~300만톤이다.[133]

<표 4-23> 나진항 시설능력

구 분	부두연장 (m)	접안능력(척)		하역능력 (만톤)
		5천톤급	1만톤급	
1호부두	970	2	3	50
2호부두	965	2	3	150
3호부두	580	1	2	100
총 계	2,515	5	8	300

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진, 선봉지구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현 실태와 전망에 대하여」 (1992).

133) 위의 책.

2) 전력

북한의 전력생산은 1989년에 292억kwh를 기록한 이후 1990년대에 들어 4년 연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보아 1990년대 들어 북한의 전력사정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연간 전력수요는 500~600억kwh로 추정되고 있으나, 1990~93년 기간의 연평균 전력생산량은 252억kwh로서 총수요의 40~5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134]

북한이 이같은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이유는 공급 면에서 화력발전의 대부분이 연료로 의존하고 있는 석탄 생산력 감소와 탄질저하,[135] 수력자원의 한계와 기존 발전설비들의 노후화로 발전능력이 떨어지고 있으나, 막대한 자금의 부담으로 추가 발전소 건설이 부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력수요 면에서는 석유공급 감소로 인한 에너지의 전력의존 심화현상, 송배전시설 노후 및 에너지 관리기술 낙후로 인한 전력 손실 증대 등이 전력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

134) 러시아는 1988~90년 동안의 북한의 연평균 전력생산을 320억kwh로 추정하고 전력수요에 100~150억kwh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Marina Ye. Trigubenko, "Industry of the DPRK,"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1), p. 122.

135) 북한의 석탄생산은 1990년 3,315만톤, 1991년 3,110만톤, 1992년 2,920만톤, 1993년 2,710만톤으로 매년 감소되고 있다. 통일원, 「북한경제종합평가」, 각년도.

특히 발전의 경우 평균적으로 61.5%의 1차에너지가 손실되어 발전열효율(발전량/석탄소비량)은 38.5% 정도이며 생산된 전력의 10% 정도는 자체소비 및 송·배전과정에서 손실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석탄생산 감소에 따른 저질탄의 사용으로 인하여 유엔의 추정에 따르면 발전열효율은 30% 미만이며 생산된 전력의 최종소비까지의 전력손실도 15~16%나 된다.[136] 이러한 북한의 전력부족은 산업시설 가동에 큰 영향을 미쳐서 북한의 최근 공장가동률은 30~4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137]

베트남 역시 전력은 절대생산량에서 부족한 실정이다. 하노이, 호치민 등 주요 도시에서도 일주일에 평균 2회 정도, 1회

---

136) 한편 송·배전선의 지하매설, 동선, 절연재, 전주, 애자, 트랜스 등의 자재와 설비부족으로 인한 송전·배전·배선과정에서의 누전으로 인하여 북한의 전력손실은 80%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다. 李佑泓, 「어둠의 共和國」 (서울: 통일일보사, 1990) pp. 56~67.

137) *Far Eastern Economic Review*, October 10, 1991, p. 75. 일본 TBS TV의 북한 합영기업 관련 「보도특집」 (1993.12.26)에서 보여준 조선국제합영총회사 이사회(1992.11.9 개최)에서의 김달현 이사장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전력부족으로 인한 합영기업의 조업중단 사실을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전력부족은 심각한 상태에 있다. 지금까지는 합영기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해 왔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소리도 있었지만 그것을 무시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전력부족으로 좀처럼 생산설비를 움직일 수 없는 공장들이 많다. 그런 상태인데도 합영기업에 전력을 공급해 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소리도 강하다. 우리들은 이런 사태에 처했을 때 당신네들과 상담했다. 그러나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 지금와서 어떻게 해달고 해도 무리다."

평균 5시간씩 정전되는 것이 상례화되어 있으며, 또한 전압이 180V에서 심하면 250V까지 수시로 변해 자동화설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138] 베트남의 전력문제는 시설용량의 부족과 노후, 관리의 미비에 따른 것으로, 1992년 현재 베트남의 발전량은 총수요의 50% 정도를 충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베트남에서의 전력문제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량 부족에 따른 가용성의 문제로서 대규모공장의 건설이나 공단 건설에는 자체 발전소를 건설해야 할 정도이다.[139]

중국은 전력생산에 중점적인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전력의 생산은 약 8%의 비교적 빠른 성장을 보여 1980년에 3,006.3억kmh, 1986년에 4,495.3억kmh, 1992년에는 7,470억kmh를 생산하였다. 그러나 공업성장이 발전량 증가율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 전력부족현상이 완전히 해소된 상태는 아니다.[140]

3) 통신

북한은 공산권지역과의 통신으로 평양-북경, 평양-모스크바를 연결하는 무선망과 신의주-북경, 청진-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유선망을 이용하고 있다. 서방권과는 평양-싱가폴, 평

---

138) 「韓國經濟新聞」, 1995.10.17.
139) 삼성경제연구소, 「베트남」, p. 121.
14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편람: 증보판」, p. 481.

양-홍콩, 평양-일본 사이의 무선망과 중국을 통한 間接通信網을 이용하고 있다. 텔렉스 시설은 1980년대부터 대외무역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일본, 구서독으로부터 텔레타이프를 도입해 지방의 관공서와 주요 기업소, 무역상사 등 무역관계기관 등에 설치하고 있다.

북한은 國際通信網으로 마이크로웨이브회선과 위성통신회선을 사용하고 있다. 위성통신과 관련하여 북한은 1984년 인터스푸트니크(INTERSPUTNIK: 공산권통신위성기구)에 가입하였으며 1986년 프랑스의 기술을 도입하여 인도양의 인텔세트(INTELSAT: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에 대한 위성통신지구국을 평양에 건설함으로써 일본을 제외한 서방 여러 나라와의 衛星通信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후 1990년 11월 북한과 일본과 직통위성회선 및 국제전용회선 서비스 제공에 합의함으로써, 전화 3회선, 텔렉스 10회선, 전보 1회선이 연결되어 있다.[141]

북한의 전기통신시설 현황은 <표 4-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1년 현재 전화회선수 82만 회선으로 인구 100인당 보급률은 3.7회선이다. 이러한 북한의 전화보급률은 중국, 베트남의 100인당 전화보급률 0.76, 0.15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구소련 및 동구 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1982년부터 1991년까지 지난 10년 동안의 100인당 전화보급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북한은 3.6%에 불과하여 중국의 13.8%,

141) 통신개발연구원, 「통신정책동향」 (1991.2.18).

베트남의 9.6%, 뿐만 아니라 구소련 및 동구 국가들의 5~6% 수준에도 크게 뒤지고 있다.

평양시내 전화회선수는 8만 5천대(1990년)이며 100인당 회선수는 북한전체 100인당 회선수와 거의 같은 3.8회선이다. 북한의 國際電話는 중국, 구소련, 일본 등을 통해 연결되는데 1984년에 약 33회선 정도였으며 1990년 현재 약 50회선이 운용되고 있다.[142]

<표 4-24> 전화보급률 비교

	1982 (천)	1991 (천)	평균 증가율(%) (1982~91)	100인당 보급율		평균 증가율(%) (1982~91)
				1982	1991	
북 한	510.0	820.0	5.4	2.70	3.69	3.6
중 국	2,342.5	8,450.6	15.3	0.23	0.76	13.8
베 트 남	36.0	100.0	12.0	0.06	0.15	9.6
구 소 련	20,883.0	33,287.0	5.0	10.0	15.0	5.0
헝 가 리	655.0	1,128.8	6.23	6.13	10.92	6.62
폴 란 드	2,108.6	3,565.3	6.01	5.82	9.32	5.37
체코슬로바키아	1720.0	2,464.4	4.08	11.19	15.82	3.92

자료: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Asia-Pacific Telecommunication Indicators* (1993); DATAPRO, *Telecommunication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1993).

142)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Asia-Pacific Telecommunication Indicators* (1993).

최근 북한의 전기통신시설이 어느 정도 현대화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전화망의 自動化率은 아직도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국내외 통신이 모두 평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전담요원들도 주로 평양에 있으면서 자주 왕래하는 실정이라고 한다.[143] 최근 들어 북한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현대적 통신망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1995년 3월 1만m^2 규모의 나진 국제통신센터의 기초건설공사를 완료한데 이어 4만 1천m^2 규모의 선봉 통신분소와 1천5백m^2의 원정 통신사무소 건설공사를 착공했다. 한편 1994년 11월 착공한 나진-훈춘간 광케이블 통신회선 부설공사를 1995년 9월 완료하였다.[144]

베트남의 통신사정도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통신시설은 전화를 설치하는데 신청 후 약 6개월 내지 1년, 팩스는 최소한 8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낙후되어 있다.[145] 베트남의 전화보급

---

143) 낙후된 통신분야는 열악한 투자환경임은 물론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훌륭한 투자분야이기도 하다. 특히 통신분야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중요성과 함께 그 설비의 특성상 일단 특정기종이 설치되면 추가적인 설비확대 과정에서도 같은 기종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기종을 들여올 경우 접속의 어려움은 물론 유지·보수에도 심각한 난점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같은 일종의 '선점=독점'의 성격으로 인해 최초의 선점업체는 시장지배자로 나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업추진시점을 실기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144) 「內外通信」, 주간판 제975호, 1995.10.19.

145) 「韓國經濟新聞」, 1995.10.17.

정도는 1993년 6월 현재 100명당 0.3대 정도이며, 1995년에는 100명당 1대, 2000년에는 100명당 4대로 전화보급율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팩스의 경우 약 3,000회선이 가입되어 있다. 베트남은 단기간에 급속한 전화시설의 확충을 위해 서방의 주요 통신업체들의 상이한 시스템을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상호교환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도 안고 있다.[146]

중국의 전화보급대수는 1993년 말 현재 2,613만대로 인구 100명당 전화보급율은 1982년 0.23대, 1991년 0.76대에서 2.2대로 대폭 증가하였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 매년 평균 전화보급증가율은 39%에 달하고 있다.[147] 특히 중국 내에서 심천 경제특구는 전화보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1993년 말 현재 인구 100명당 16대이다. 한편 중국은 전송로에 광케이블과 디지탈마이크로를 도입하고, 위성회선을 이용함으로써 1992년 말 현재 전국 23,000여 개의 시와 현 중 1,476개의 시와 현에서 시외자동접속(DDD)이 가능하며, 876여 개 시, 현은 세계 195개 국가 및 지역과 국제자동회선(IDD)이 가능하다.[148]

이제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도로·통신·전기 등 열악한 인프라 시설은 북한이 외자유치를 위하여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난제임을 알 수 있다. 베트남 역시 오랜 전쟁과 투자부진으

---

146) 삼성경제연구소, 「베트남」, p. 133.

147) 중국의 1994년 말 현재 전화기 보급대수는 4,900만대(실제통화회선 3,630만대)로 보급률은 3.2%이다. 「문화일보」, 1995.10.12.

14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편람: 증보판」, p. 501.

로 인프라 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으며, 중국은 북한, 베트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나은 인프라 환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북한, 중국, 베트남 3국은 나름대로의 의욕적인 인프라 시설 확충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급조달측면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북한이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인프라 건설에는 거대한 투자재원이 필요함으로 중국, 베트남은 이를 위하여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 Development Bank) 등의 국제금융기구나 선진국의 원조성 공적 차관을 통해 조달할 수 있으나 북한의 경우는 정치·외교상 미해결문제(미·일과의 수교, 남북관계개선 등)로 인하여 이러한 자금원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중국과 베트남은 인프라 시설 확충에 따른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각 「토지성편개발제도」와 「건설·운영·양도방식」(일명 BOT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에 상응하는 제도가 없다. 중국의 토지성편개발제도란 외국투자기업이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 개발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토지를 인프라 시설이 갖추어진 공업단지 및 기타 건설용지로서 개발한 다음 토지사용권을 실수요자에게 재양도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BOT 방식은 교량, 도로, 항구, 발전소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베트남 내에 건설되기 위하여 외국투자

가와 베트남 정부기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가는 일정한 시한에 사회간접자본을 건설, 운영하여 투자자본을 회수하고 이윤을 창출한 후 이를 보상 없이 베트남 정부에 양도하는 인프라 시설 투자의 외자유치방식이다.[149]

149) 베트남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1993.4.16, 제55조. BOT 방식의 자세한 내용은 안희완, 「베트남 외국인투자법 BOT계약제도의 도입」 (서울: 베트남경제연구소, 1994) 참조.

제Ⅴ장 결론: 종합평가

북한 경제특구지역과 중국, 베트남의 투자환경 일반을 비교분석해 보면 <표 5-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 분야에서 북한이 중국, 베트남보다 뒤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환경조건에서 북한의 비교우위부문과 비교열위부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북한의 비교우위부문

북한·중국·베트남 3국의 투자환경비교를 위해 거시적 투자환경(시장성, 생산 Cost), 중간적 투자환경(정치·사회적 위험도, 경영관리제약), 미시적투자환경(세제혜택, 인프라)에서 제시한 6가지 주요 항목 가운데 북한이 비교적 양호한 입장에 있는 투자환경조건으로는 생산 Cost(노동력, 지대·임대료)부문과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관세 등의 세제혜택 부문뿐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투자유치 경쟁국인 중국, 베트남의 임금, 노동의 질 등을 북한과 비교해 보면 베트남은 소득수준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단순 노동력이 풍부하며 임금수준이 월 50달러 정도로 가장 낮은 편이다. 중국은 기본급(약 50~60달러) 외에 회

<표 5-1> 북한·중국·베트남 투자환경 평가

부 분	주요 항목	세부항목	평 가		
			북 한	중 국	베트남
거시적 투자환경	시장성	내수시장	X	O	△
		수출시장접근	X	O	△
		외자도입성과	X	O	△
	생산 Cost	노동력(임금·질)	O	△	O
		지대·임대료	O	△	△
중간적 투자환경	정치·사회적 안정성	정치적 안정성	X	△	△
		개혁·개방의지	X	O	O
	경영관리제약	물자구입	X	△	O
		제품판매	X	△	△
		외환관리	X	O	△
		노무관리	△	△	△
미시적 투자환경	세제혜택	기업소득세	O	△	O
		소득세 감면	O	O	O
		개인소득세	O	△	O
		관세	O	△	O
		송금세	O	△	△
	인프라	수송망	X	△	X
		전력	X	△	X
		통신	X	△	X

주: O 양호, △ 보통, X 열악

사가 부담하는 성과금, 보험료, 연금 등 사회복지 관련 부담금이 기본급의 150~200%에 달하여 실제 지급액은 기본급의 2~3배(100~180달러) 정도이며, 최근 들어 급격한 임금상승과 심각한 고급인력난 등의 문제가 있다. 북한 자유경제무역지대내 임금수준은 약 100달러 정도(최저임금 75달러)로 노동의 질을 고려한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북한이 투자유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베트남에 비교하면 2배에 달하고 있어 생각보다 투자유인이 크지는 않다.[150]

한편 토지가격체계는 지역, 용도, 토지등급, 인프라조건 등에 따라 다양하고 매우 복잡하여 평면적으로 북한과 중국, 베트남을 비교하는데는 문제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북한의 토지 관련 비용은 중국, 베트남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장려기업에 대해서는 토지임대료를 처음 3년간 면제와 그 이후 3년간 50%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는 반면,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에는 외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토지임대료 및 건물임대료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지 관련 비용에 대해서 북한이 유리한 위치를 갖게 될 것이다.

북한은 거시적 투자환경과 중간적 투자환경 등 실질적인 투

150) 북한은 동일 민족, 동일 언어라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투자시 겪게 되는 의사소통문제 등 문화적 비용(Culture Cost)이 해소 또는 감소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자환경이 중국보다 열세에 있음을 감안하여 세율혜택 등의 잠재적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미시적 투자환경 측면에서 중국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소득세는 전반적으로 베트남과는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낮다. 중국이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를 일반지역에서 33%를 부과하는데 비해 북한과 베트남은 25%를 부과하고 있다. 경제특구의 경우도 북한이 14%로 중국의 15%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 또한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과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 건설부문 등과 같은 투자장려부문의 경우 중국의 기업소득세가 15%, 베트남이 10~20%인 반면 북한은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외국인의 개인소득세에 대해서도 북한이 월 2,000북한원(약 930달러) 이하는 면세이고 소득액에 따라 초과누진세를 4~20%까지 부과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월 800元(약 95달러)까지 면세하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5~45%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베트남은 월 500만동(약 450달러)이하는 면세이고 초과소득액에 대해서는 10~50% 초과누진세를 적용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중국, 베트남과의 사이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상사주재원이나 파견 근로자의 개인소

득세 납부를 면제받는 등 이중과세의 부담이 없으나 북한과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이중과세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2. 북한의 비교열위부문

북한은 투자환경요인으로 앞서 제시한 6가지 주요 항목 가운데 시장성, 정치·사회적 위험도, 경영관리제약, 인프라의 4개 항목에서 열악한 환경조건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속적인 경제침체와 경직된 사회주의 통제경제의 결과로 열악한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EU 등 제3국으로의 우회수출기지로서의 활용이 어려워 해외투자를 하는 필요조건에 해당하는 수출시장 확보 자체에 문제가 있는 상태이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는 개혁·개방의지가 권력 상층부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외국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최근 북한의 부분적인 개방은 체제개혁 의지 없이 자력갱생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당장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는 최근의 외자유치 성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1979년 개혁·개방이 추진되기 시작한 이래 1994년 말까지 투자유치건수 22만 1,718건에 투자계약액은 3,03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경우는 1986년 도이모이 이후 개혁·개방에 박차를 가한 결과 1988년에서 1994년 말까지 투자유치건수 1,176건에 111억 6천만 달러의 투자유치실적을 이루었다. 반면 북한은 1984년 9월 「합영법」을 발표한 이후 1993년 말까지 투자건수 144건에 총투자액은 1억 5천만 달러에 머물고 있다.

외국투자기업의 경영관리에 있어서도 북한은 물자구입, 내수판매, 외환관리 면에서 모두 중국·베트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며, 노무관리는 비슷한 수준으로 여겨진다. 베트남·중국의 경우 외국투자기업이 독자적으로 물자구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은 물자구입시 국내물자 우선구입 강제원칙과 국내물자 구입도 국제가격기준에 따르게 하고 있다.

외국투자기업의 내수판매도 중국, 베트남에서는 제한규정이 없으나 북한은 독자적인 내수판매를 제한하고 있으며, 내수판매대금의 태환성 외환으로 교환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북한에서는 외국투자기업은 외화수지균형 의무에 따라 필요한 외화를 자체 조달할 수밖에 없는 반면 베트남은 외화수지균형 의무가 있으나 내수판매대금의 외환교환을 부분적으로 인정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외화부족을 보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중국은 1994년 1월부터 외환매입에 제한이 없는 개방적 외환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노무관리에 있어서는 중국, 베트남에서는 직접 고용이 가능한 데 비하여 북한에서는 노동

행정기관을 통한 고용만이 가능하다는 면에서는 조건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쟁의와 관련, 북한에서는 국가적 통제에 의해 파업발생 가능성이 낮은 편이나 베트남은 일반 근로자들이 임금인상과 근로조건개선을 위해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새로운 노동법이 승인되었으며, 중국에서도 우리 나라의 노동조합에 해당되는 공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규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노무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인프라부문 또한 북한의 투자환경요인에서 가장 열악한 분야이다.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우도 인프라 설비의 미비가 외자유치의 가장 큰 장애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중국에서는 개혁·개방에 따른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프라 시설 확충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프라 시설도 빠른 속도로 확충되고 있다. 해륙 연계의 관문에 위치한 나진·선봉지역은 현재에도 러시아, 중국과 철도 및 도로가 연결되어 있으며 지대 내와 인근지역에 나진, 선봉, 웅상, 청진항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철도의 대부분이 단선이며, 전력부족에 따른 철도운송 속도문제, 열악한 도장포장률, 화물처리능력, 항만하역시설 면에서 개발의 여지를 너무 많이 남겨 두고 있다. 또한 전력생산의 부족은 공장가동률 저해(30~40%)와 수송애로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통신분야는 인프라 시설 가운데 가장 취약한 상태이다.

이상과 같이 북한의 투자환경은 저임 노동력과 세제혜택 면

에서 다소 관심을 끌 수 있으나 그 이외의 투자여건은 열악하기 때문에 북한의 외국인 투자유치 성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외자유치를 활성화시킬 수 없으며 획기적인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것은 북한의 실질적인 투자환경 제약요인이 시장성 부재나 경영관리제약, 인프라 미비 등의 문제보다도 제한적 개방노선으로 표현되는 철저하지 못한 북한의 개혁·개방의지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대외개방과 함께 체제내적인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북한의 외자유치정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것이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침체의 극복도 어려울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권 율. 「베트남의 수출가공구 개발정책과 현황」.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김익수. 「두만강지역개발사업과 한반도」.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남궁영.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실태분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트남편람: 증보판」. 1995.3.

_____. 「중국편람: 증보판」. 1994.10.

대한무역진흥공사. 「남북경제교류 현황자료」. 1994.5.

_____. 「베트남투자환경」. 1993.

_____. 「북방통상정보」. 1993.5, 8, 9, 1994.2, 9.

_____. 「북한투자실무」. 1993.

_____. 「중국통상정보」. 1995.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남북합작 생산제품의 제3국 수출여건 분석」. 1995.9.

동용승·서양원. 「남북경협 이렇게 풀자」. 서울: 삼성경제연구

소, 1995.

박주욱.「베트남 운송체계의 현황과 개발과제」. 서울: 산업기술정보원, 1993.

삼성경제연구소.「베트남」. 1994.2.

신상진.「등소평 사후 중국의 국내정세 및 한반도정책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2.

안희완.「베트남 외국인투자법 BOT계약제도의 도입」. 서울: 베트남경제연구소, 1994.

오용석.「중국 경제특구의 평가와 한국기업의 대응」.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1.

李佑泓.「어둠의 共和國」. 서울: 통일일보사, 1990.

張世和.「동북아 운송체계의 현황과 전망」. 서울: 해운산업연구원, 1992.

전홍택·오강수.「북한의 외국인투자제도와 대북투자 추진방안」.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진·선봉지구 경제무역지대의 현 실태와 전망에 대하여」. 1992.

_____.「황금의 삼각주, 라진·선봉 개발계획」. 1992.4.

_____.「황금의 삼

각주: 라진·선봉」. 1993.

_____. 「황금의 삼각주: 라진·선봉, 투자대상 안내」. 1993.

中華經濟研究院 編. 白權鎬 譯. 「中國 經濟特區에 관한 硏究」. 서울: 산업연구원, 1985.

최수응. 「중국의 토지사용제도 분석」.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통신개발연구원. 「통신정책동향」. 1991.2.18.

통일원. 「북한경제종합평가」. 서울: 통일원, 각년도.

_____. 「남북한 경제지표」. 서울: 통일원, 각년도.

_____. 「북한의 합영사업 추진실태」. 서울: 통일원, 1994.

_____.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 서울: 통일원, 1995.10.

한국무역협회. 「남북경협」. 1994.11.

_____. 「대중국교역 및 투자안내」. 1994.8.

한국수출입은행. 「남북 경제협력 실무 안내」. 1994.12.

Aharoni, T. *The Foreign Investment Decision Process.*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66.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Korea: Procedural and Jurisdictional Questions Regarding Possible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Washington D.C.: The Library of Congress, November 29, 1994.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Vietnam: Procedual and Jurisdictional Questions Regarding Normalization of U.S. Diplomatic and Economic Relations.* Washington D.C.: The Library of Congress, Jury 17, 1995.

Paul Marer. eds. *Foreign Economic Liberalization: Transformation in Socialist and Market Economy.* Boulder: Westview Press, 1991.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Profile 1994~95, Indochina: Vietnam, Laos, Cambodia.* London: EIU, 1995.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Export Processing Zones in Development Countries.* UNIDO Working Papers on Structural Changes, No. 19, UNIDO/ICIS 176. New York, August 18. 1980.

_____. *List of Project Profiles from the DPRK* (July 1990).

US CIA.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8.

Vittal, N. ed. *Export Processing Zones in Asia: Some Dimensions.* Tokyo: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1977.

World Bank, *Export Processing Zones. Policiy and Research Series* 20, 1992.

2. 논 문

권 율. "베트남 투자환경 및 진출과제." 기업은행. 「경영과 기술」. 1995.7~8.

남궁영. "남북한 경제력 비교평가." 한국비교경제학회. 「남북한의 경제체제와 통합」. 서울: 박영사, 1995.

_____. "나진·선봉개발계획과 남북경협," 「북한연구」, 제6권 1호 (1995, 봄).

_____.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전망," 「통일경제」, 창간호 (1995.1).

_____. "북한의 외자유치정책 운용실태와 성과분석." 「統一硏究論叢」, 제3권 1호 (1994).

박종철.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경제개혁." 동남아지역연구회. 「동남아의 정치경제」. 서울: 21세기 한국연구재단,

1995.

오용석. "세계 경제특구의 유형 및 전략과 남북한 경제통합에의 적응." 한국비교경제학회 編. 「남북한의 경제체제와 통합」. 서울: 박영사, 1995.

이배석.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와 동북아세아 경제협력," 심양국제학술회의 1995.8.16~18, 북한측 발표논문.

이은호. "베트남의 사회주의체제 변화와 개방정책." 동남아지역연구회. 「동남아의 정치변동」. 서울: 21세기 한국연구재단, 1994.

李 浩. "북한경제의 딜레마 외채문제." 국토통일원. 「민족재결합의 모색」. 제34집 (1987).

陳吉相. "外國投資に關する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法." 「月刊朝鮮資料」. 1993. 8.

Department of State. "Eas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January 20, 1995.

Dunning, J. H. "Explaining the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Position of the Countries: Toward a Dynamic or Developmental Approach." *Weltwirtschaftliches Archiv.* 117 (1981).

Greenhouse, Steve. "New Study puts China Economy at 3rd Biggest."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y 19, 1993.

Grubel, Herbert G. "Towards a Theory of Free Economic Zones." *Weltwirtschaftliches Archiv.* Band 18, Heft 1, 1982.

Inotai, András. "Liberalization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Köves, András and Paul Marer. eds. *Foreign Economic Liberalization: Transformation in Socialist and Market Economy.* Boulder: Westview Press, 1991.

Namkoong, Young. "Political Economy of Korean Multinational Corporations: A Mercantilist Approach"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1989).

_____. "An Analysis of North Korea's Policy to Attract Foreign Capital: Management and Achievement."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9, No. 3 (Fall 1995).

Nehrt, L. C. "The Political Climate for Private Investment." *Business Horizons.* 15 (June 1972).

Russel Heng Hiang Khng, "The 1992 Revised Constitution of Vietnam: Background and Scope of Changes."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14, No. 3 (December 1992).

Simon, Jeffrey D. "A Theoretical Perspective on Political Risk."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5 (Winter 1984).

Sit, Victor F. S. "China's Export-Oriented Open Area," *Asian Survey,* Vol. XXVIII, No. 6 (June 1988).

Trigubenko, Marina Ye. "Industry of the DPRK."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1.

Long, Ngo Vinh. "Reform and Rural Development: Impact on Class, Sectoral and Regional Inequalities," Tureley, William S. and Mark Seldon. eds. *Reinventing Vietnamese Socialism: Doi Moi in Comparative Percpective.* Boulder: Westview Press, 1993.

Warr, Peter G. "Korea's Masan Free Export Zone: Benefits and Costs." *The Developing Economies.* Vol. 22, No. 2 (June 1984).

3. 기 타

「남포경공업기지에 관한 설명자료」. 1992.

「內外通信」. 1994.5.27.

_____. 주간판 제975호. 1995.10.19.

「東亞日報」. 1995.2.23.

「문화일보」. 1995.10.12.

미 스텐톤 그룹 Browne 사장의 상원에너지위원회에서의 증언 1995.1.

민족통일연구원 간담회에서의 귀순자 증언, 1994.6.10.

베트남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1993.4.16.

베트남 「특별경제가공구규정」. 1991.10.18.

북한 「세관법」. 1993.12.10.

북한 「외국인기업법 시행세칙」. 1994.3.29.

북한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1993.12.30.

북한 「자유경제무역지대법」. 1993.4.8.

북한 「토지임대법」. 1993.10.27.

북한 「합영법 시행세칙」. 1992.10.16.

「世界日報」. 1995.1.8.

「中國經濟新聞」. 1981.6.29.

「중앙일보」. 1991.10.11, 1995.10.20.

「韓國經濟新聞」. 1995.8.23, 10.17, 10.28.

「한국일보」. 1995.5.22.

Asiaweek. July 1995.

Business China. March 22, 1993.

Euromoney. September 1995.

Far Eastern Economic Review. October 10, 1991.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Asia-Pacific Telecommunication Indicators.* 1993.

JETRO.「中國經濟」. 1993.

SCCI. *Vietnam Investment Review.* Jan. 10~16, 1994.

빈 면

부 록

빈 면

<부록 1>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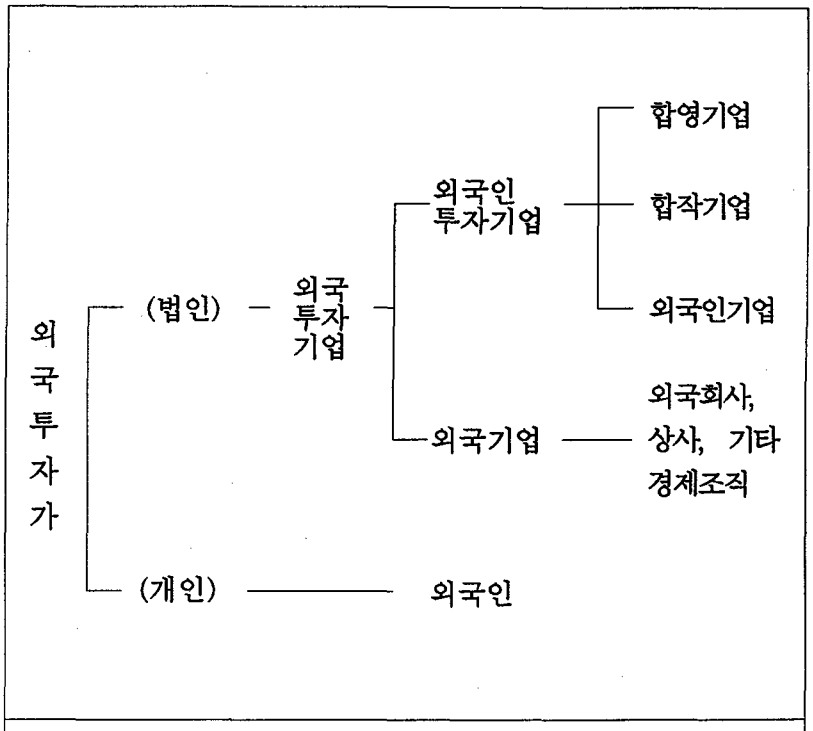

- 외국투자가: 북한에 투자하는 외국의 법인과 개인
- 외국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합영·합작·외국인기업
- 외국기업:
  - 상주기구를 설치하고 경영활동을 하는 외국회사, 상사, 기타 경제조직
  - 이자, 배당금, 임대료와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제공 등을 통해 소득원천이 있는 외국회사, 상사, 기타 경제조직

<부록 2>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비교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
투자방식		공동	공동	단독(외국측)
경영방식		공동	단독(북한측)	단독(외국측)
분배 방식	이익	공동(투자비율)	공동(계약조건)	단독(외국측)
	손실	공동(투자비율)	단독(투자국)	단독(외국측)
출자비율		당사자간 합의결정	합작계약에 따라	외국인 100%
설립지역		제한없음	제한없음	자유경제무역지대로 한정
설립승인 처리기간		50일 이내	50일 이내	80일 이내
경영조직		이사회(최고의결기관)	규정없음(다만 비상설공동협의 기구설치 가능)	규정없음
물자구입 및 생산제품 판매		- 원칙: 국내거래는 합영자재상사 - 기타: 무역기관, 합영합작회사 등을 통해서도 가능	규정없음	국내거래는 해당 무역기관과 통함을 기본으로 함
고용 및 해고		- 현지인고용: 노동알선기관을 통해야 함 - 외국인고용: 대외경제기관과 합의	- 현지인고용: 규정없음 - 외국인고용: 대외경제기관과 합의	- 현지인고용: 노동알선기관과의 계약에 따름 - 외국인고용: 대외경제기관과 합의
직업동맹(노조)		직맹의 활동보장	규정없음	직맹의 활동보장
보 험		북한 보험기관으로 제한	규정없음	북한 보험기관으로 제한
자본감축		허용않됨	규정없음	허용않됨
분쟁해결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 합의시 제3국 중재기관도 가능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
회계·세무감독		재정검열원(감사)	재정은행기관	대외경제기관과 재정기관

<부록 3> 북한의 경제특구내 외국인투자 유치 희망 프로젝트 리스트: 인프라부문

(단위: 만 달러)

	사 업 명	투자분야	프로젝트 규모	총 투자액	투자 방식
1	나진항 확장	항만부문	5,000만톤/연 (그중 컨테이너 500만 TEU/연)	152,000	합작 합영
2	청진 서항 확장	항만부문	1,000만톤/연	13,500	합영
3	선봉항 확장	철도부문	1,000만톤/연	150	합작
4	회령-학송 철도전기화	철도부문	전기화 연장: 168.2km	5,994	합작
5	구룡평-조산리 광궤 신설	철도부문	철로연장: 13.4km	2,640	합작
6	두만강 복선 철교 신설	철도부문	다리연장: 590m	1,420	합작
7	나진역 확장	철도부문	구내선: 12km	361	합작
8	두만강역 구내자동화	철도부문	신호장치 및 역 운영자동화	1,960	합작
9	청진-두만강 통신현대화	철도부문	연장: 129km 역수: 30개역	3,437	합작
10	나진-샛별 (고속도로)	도로부문	건설연장: 73km, 도로너비: 19~20m, 화물통과능력: 1,200~1,500만 톤/연	10,340	합영
11	청진-회령 (고속도로)	도로부문	건설길이: 82km, 도로너비: 19m 화물통과능력: 1,200~1,300만 톤/연	8,480	합영
12	나진-두만강 (고속도로)	도로부문	총연장: 45km(중첩: 7km, 건설: 8km) 도로너비(중첩구간: 24m, 건설구간: 19m) 화물통과능력: 1,200~1,500만 톤/연	920	합영

	사 업 명	투자분야	프로젝트 규모	총 투자액	투자 방식
13	청진-나진 (고속도로)	도로부문	건설연장: 67km, 도로너비: 19m 화물통과능력: 1,200~1,300만톤/연	9,370	합작
14	샛별-남양 (고속도로)	도로부문	노선연장: 43km, 도로너비: 19m 화물통과능력: 1,200~1,300만톤/연	4,600	합영
15	하여평-원정 (고속도로)	도로부문	노선연장: 7km, 도로너비: 19m 화물통과능력: 1,200~1,300만톤/연	940	합영
16	선봉공항 신설	항공부문	여객수송량: 2,000만명/연 화물수송능력: 250만톤/연 총부지: 870만m^2	72,856.3	합영 합작
17	나진통신 센터	통신부문	건설부지: 2만5천m^2 연건축면적: 1만1천m^2 교환능력: 4만회선	4,090.4	합작
18	위성통신 지구국 통신 분국 신설	통신부문	건물면적: 4,800만m^2×4 교환능력: 14만 7,800회선 (선봉, 웅상, 후창, 나진 일대)	14,766	합작
19	선봉화력발 전소 확장	전력부문	발전능력: 총 40만kw로 증가	16,000	합작
20	안주-신해 관광지 개발	관광부문	개발면적: 2,600만m^2	5,900	합작
21	우암-굴포 관광지 개발	관광부문	개발면적: 7,800만m^2	2,300	합작 합영 단독 투자
22	나진-선봉 개발촉진센터	관광부문	부지면적: 1만m^2 연건평: 2만 8,000m^2 층수: 18층	460	합작
23	나진호텔	관광부문	수용능력: 200석 총부지: 1만 7,000m^2 연건축면적: 9,710m^2	100	합작

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황금의 삼각주: 라진·선봉, 투자대상안내」(1993) 참조 작성.

<부록 4> 북한의 경제특구내 외국인투자 유치 희망 프로젝트 리스트: 공업부문

(단위: 만 달러)

	사 업 명	위 치	생산규모	업 종	총 투자액	투자방식
1	피복공장	청계지구 (나진)	여성의류 14만착	섬유, 의복	210	합영, 합작
2	피복공장		잠바 150만착 솜옷 200만착	섬유, 의복	2,140	합영, 합작
3	피복공장		코트 100만착	섬유, 의복	860	합영, 합작
4	피복공장		털외투 100만개	섬유, 의복	1,930	합영, 합작
5	편직공장	신흥지구 (나진)	셔츠 5,000만개	섬유, 의복	2,980	합영, 합작
6	양말공장		양말바지 1,500만개	섬유, 의복	800	합영, 합작
7	양말공장		양말 100만켤레	섬유, 의복	45	합영, 합작
8	타올공장		타올류 700만개	섬유, 의복	430	합영, 합작
9	자크공장		점착자크 300만m	기타제조	1,450	합영, 합작 단독투자
10	자크공장		수지자크 300만m	기타제조	320	합영, 합작 단독투자
11	수예품공장		15만개	섬유, 의복	2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12	운동화신발 공장	동명지구 (나진)	운동화신발 300만켤레	신 발	330	합영, 합작 단독투자
13	신발공장		사출신발 300만켤레	신 발	350	합영, 합작 단독투자
14	구두공장		가죽구두 100만켤레	신 발	170	합영, 합작 단독투자
15	청량음료 공장	선봉군 선봉읍	맥주 10만kl	음, 식료품	5,600	합영, 합작

	사 업 명	위 치	생산규모	업 종	총 투자액	투자방식
16	고기가공 공장	선봉군 사회리	고기가공 3만톤	음, 식료품	1,7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17	채소가공 공장	나진시 안주동	채소가공 1만톤	음, 식료품	1,100	합영, 합작
18	샘물가공 공장	선봉군 백학리	샘물 5만kl	음, 식료품	190	합영, 합작
19	국수공장	후창지구 (나진)	국수 1만톤	음, 식료품	710	합영, 합작 단독투자
20	콩기름 공장		콩기름 2만톤	음, 식료품	1,5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21	곡산공장		강냉이 10만톤 가공	음, 식료품	5,6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22	수산물 가공공장	나진시 안주동	수산물 2,500톤	음, 식료품	170	합영, 합작
23	보석가공 공장		보석가공 6만개	기타제조	1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24	완구공장	신흥지구 (나진)	완구 300만개	기타제조	4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25	가방공장		가방 40만개	가 죽	260	합영, 합작 단독투자
26	우산공장		우산 50만개	기타제조	210	합영, 합작 단독투자
27	가정용 냉동기 공장		냉동기 20만대	전기, 전자	3,3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28	재봉기 공장		재봉기 10만대	일반기계	4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29	전자계산 기 공장	백학지구 (선봉)	전자계산기 50만대	정밀기계	2,3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30	인쇄기판 공장		10만m^2	일반기계	9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31	고성기 공장		고성기 450만개	전기, 전자	1,0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사 업 명	위 치	생산규모	업 종	총 투자액	투자방식
32	수치제어 공장	백학지구 (선봉)	7,000대 공장기계용: 6천대 로보트용: 1천대	정밀기계	5,9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33	수상관공장 (천연색)		수상관 250만개	전기, 전자	19,0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34	텔레비젼 공장 (천연색)		텔레비젼 200만대	전기, 전자	15,0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35	녹화기 공장 (VTR)	백학지구 (선봉)	녹화기 30만대	전기, 전자	5,4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36	녹음기 공장		녹음기 100만대	전기, 전자	5,8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37	전자시계 공장		시계 100만개	정밀 기계	840	합영, 합작 단독투자
38	전자부품 공장		탄소피막저항기 10억개	전기, 전자	1,1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39	전자부품 공장		금속피막저항기 2억개	전기, 전자	7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40	전자부품 공장		수지축전기 1억개	전기, 전자	6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41	전자부품 공장		사기축전기 3억개	전기, 전자	1,300	합영, 합작
42	전자부품 공장		전해축전기 3억개	전기, 전자	1,400	합영, 합작
43	반도체 공장 (천연색)		반도체 2억개	전기, 전자	4,8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44	집적회로 공장		집적회로 1억개	전기, 전자	22,0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45	액정표시 소자공장		소자 3,000만개	전기, 전자	420	합영, 합작 단독투자

	사업명	위 치	생산규모	업 종	총 투자액	투자방식
46	전구공장	신흥지구 (나진)	전구 1억1천만개	전기, 전자	8,3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47	건전지 공장	후창지구 (나진)	건전지 500만개	전기, 전자	340	합영, 합작
48	통신기계 공장	백학지구 (선봉)	전자식자동교환기 10만회선	전기, 전자	5,7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49	수자조정 공작기계 공장	후창지구 (나진)	공작기계 1천대	정밀기계	5,5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50	전동기 공장		소형 및 중형 전동기 15만대	일반기계	1,100	합영, 합작
51	전기기구 공장		전기기구 300만개 교류접촉기 등	전기, 전자	870	합영, 합작
52	자동차 부속품 공장	창평지구 (나진)	화물 및 승용자동차 부속 1,000톤	수송기계	1,100	합영, 합작
53	극소형 전동기 공장	후창지구 (나진)	전동기 10만대	일반기계	3,000	합영, 합작
54	배수리 공장	창평지구 (나진)	대형 짐배 80척	수송기계	1,000	합 작
55	배해체 공장		10척/연	수송기계	450	합 작
56	포장재 공장	웅상지구 (선봉)	나무포장재 1천만개	목 재	6,0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57	고순도 시약공장	관곡지구 (나진)	시약 1,000톤	화 학	4,000	합영, 합작
58	가구공장	웅상지구 (선봉)	가구 3만점 건구 10만m^2	목 재	330	합영, 합작
59	깔판공장		깔판 15,000m^2	목재, 제지	160	합 작
60	보온재 공장		보온재 3,000톤	화 학	100	합영, 합작

	사업명	위 치	생산규모	업 종	총 투자액	투자방식
61	포장재 공장	관곡지구 (나진)	종이함 1천만개 수지포장재 1천만개	제 지	550	합영, 합작 단독투자
62	과즙수 공장	신흥지구 (나진)	과즙수 1만kl	음, 식료품	600	합영, 합작
63	자동차 조립 공장	흥의지구 (선봉)	화물차 5만대 8~10톤급 이상	수송기계	38,000	합영, 합작
64	도자기 공장	선봉군선 봉읍	유리그릇 800만개	비금속 광물	1,700	합 영
65	상표 인쇄공장	신흥지구 (나진)	3,000만매	인 쇄	400	합영, 합작
66	오토바이 공장	흥의지구 (선봉)	오토바이 10만대	수송기계	10,0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67	짐함공장 (컨테이너)	청진시 송평구역 월포리	짐함 1만개	일반기계	1,140	합 영
68	원유가공 공장	나진시 관곡동	원유가공 200만톤	화 학	150,000	합영, 합작

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황금의 삼각주: 라진·선봉, 투자대상안내」(1993) 참조 작성.

<부록 5> 북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각종 사용료 수준

구 분	용 도		비 용	
			북한원	미달러
수도료 (m^2당)	생활용 음료수		0.12	0.55
	공업용수		0.12	0.55
전기료 (kwh당)	조명용		0.10	0.05
	공업용		0.12	0.05
전화·통신비	전 화	가설	대당 1,000원	454.5
		사용료(사무실)	원24원	10.9
		사용료(주택)	원15원	6.8
		재가설	대당100원	45.5
	텔렉스	가설	대당 1,000원	454.5
		회선사용료	원48원	21.8
		임대료	원90원	40.9
		재가설	대당 115원	52.3
	팩 스	가설	대당 1,000원	454.5
		회선사용료	원24원	10.9
		임대료	원65원	29.5
		재가설	대당 115원	52.3
철도운임 (톤당)	구 역	대 상	운 임	달러운임
	나진-남양	곡 물	2.58	1.17
		석 탄	2.52	1.15
		비 료	2.58	1.17
	나진-두만강	곡 물	1.68	0.76
		석 탄	1.62	0.74
		비 료	1.68	0.76
	청진-남양	곡 물	2.70	1.23
		석 탄	2.64	1.20
		비 료	2.70	1.23
	청진-두만강	곡 물	1.80	0.82
		석 탄	1.74	0.79
		비 료	1.80	0.82

주: 적용환율 US $1 = 2.2북한원
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황금의 삼각주: 라진·선봉」 (1993) 참조 작성.

<부록 6> 자유무역항(나진, 선봉, 청진) 요금

No	항 목 별	단 위	요 금
1	항사용료(부두사용료, 정박료 포함)	원/순등록톤	0.50
2	등대사용료	〃	0.10
3	수로안내료	원/회/순등록톤	0.16
4	운반료	〃	0.07
5	정박비용		
	5,000톤 선박 이하	원/회	25.00
	8,001톤~1만톤까지	〃	35.00
	1만톤 이상	〃	50.00
6	갑판 승강구사용료(널판으로 된 덮개)		
	5,000톤 선박 이하	원/승강구당	30.00
	8,001톤~1만톤까지	〃	50.00
	1만톤 이상	〃	60.00
7	선창-청소비(산적짐)		
	5,000톤까지: 빗자루(Broom)	원/회	70.00
	톱밥	〃	120.00
	8,000톤~1만톤까지: 빗자루	원/회	90.00
	1만톤 이상: 톱밥	〃	180.00
	빗자루	〃	95.00
	톱밥	〃	200.00
8	노임	원/명/시간당	
	노동자	〃	2.50
	기술자	〃	4.00
9	오물청소료		
	안벽(501톤~3,000톤급배)	원/회	70.00
	야외정박(501톤~3,000톤급배)	〃	110.00
10	항구선박이용료	원/회	30.00
11	용수공급료		
	용수료	원/톤	2.50
	부두에서 공급	〃	1.00
	용수운반선을 통한 공급	〃	1.50

No	항 목 별	단 위	요 금
12	기름공급료		
	안벽에서 공급	원/톤	2.00
	야외정박지에서 공급	〃	4.00
13	톤세	원/순등록/톤	0.20
14	선박주선료	원/순등록/톤	0.20
15	운임세	%	1.5
16	화물검사료	원/톤	
	시멘트	〃	0.30
	금속(강판)제품	〃	0.40
	냉동화물	〃	0.70
17	항구시설이용료 및 설치료	원/마력/시간	
	① 예인선	원/적재능력톤시간	0.15
	② 바지선	〃	0.08
	③ 화물선	원/권양능력톤/시간	0.40
	④ 기중기배	〃	2.00
	⑤ 유조선(수조선)	〃	0.30
	⑥ 자동차	〃	2.00
	⑦ 트레일러	〃	2.50
	⑧ 적재기(Power Shovel)	원/마력/시간	3.00
	⑨ 블도우저	〃	0.30
	⑩ 자동차기중기	원/권양능력톤/시간	2.00
	⑪ 지게차	원/권양능력톤/시간	2..00
	⑫ 굴착기	원/마력/시간	0.20
	⑬ 기중기	원/능력톤/시간	2.00
	⑭ 방수포	원/m^2/시간	0.20
	⑮ 깔판(Pallete)	원/개/일당	0.20

No	항 목 별	단 위	요 금
18	소방차근무 요금(인화성, 발화성, 폭발성 화물배인 경우)	원/시간	4.00
19	짐보관료(포장짐)		
	창 고: 1일~10일까지	원/톤/일	무료
	11일~30일까지	〃	0.05
	31일~45일까지	〃	0.10
	45일 이상	〃	0.50
	야적장: 1일~10일까지	〃	무료
	11일~30일까지	〃	0.03
	31일~45일까지	〃	0.05
	45일 이상	〃	0.25
20	화물적재 및 하역료(임의의 장소-배현측, 배짐칸-평적 또는 쌓기)	원/톤	
	(1) 포장되지 않은 화물(Bulk Cargo)		
	① 석탄(유연탄)	〃	3.80
	② 비료	〃	5.15
	③ 빙정석	〃	4.90
	④ 알곡	〃	5.00
	(2) 포장화물		
	① 비료	〃	6.65
	② 화학제품	〃	7.75
	③ 알곡	〃	6.45
	(3) 적재 및 하역료		
	① 비포장화물: 석탄	원/톤	0.74
	(Bulk Cargo) 비료	〃	0.90
	빙정석(Cryorite)	〃	0.80
	알곡	〃	0.80
	② 포장화물: 비료	〃	0.95
	화학제품	〃	1.05
	알곡	〃	1.05

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황금의 삼각주: 라진·선봉」 (1993), 참조 작성.

빈 면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91-01 轉換期의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91-03 北韓體制의 變化: 現況과 展望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92-05 轉換期의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93-03 中國의 改革·開放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强의 立場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研究報告書〉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91-11 在野統一案 研究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Ⅰ)
91-13 北韓體制의 實相과 變化展望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査 結果

92-06 軍備統制 檢證 硏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92-07 北韓住民의 人性硏究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硏究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92-11 東北亞 經濟協力의 發展方向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硏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硏究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硏究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査 結果

93-02 金日成著作 解題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Ⅳ)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Ⅲ)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硏究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硏究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硏究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硏究
93-15 金正日著作 解題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硏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93-19 예멘 統合事例 硏究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畵 分析을 中心으로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硏究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硏究(改訂版)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93-26 日本의 核政策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硏究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硏究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94-07 金正日 리더쉽 硏究
94-08 北韓 民族主義 硏究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强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擧制度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硏究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94-16 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94-17 北韓의 對外經濟 開放政策 現況과 展望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 協力關聯
94-20 「조선전사」 解題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연구
94-24 韓國 民族主義 硏究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硏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硏究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硏究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94-34 統一 以後 國民統合 方案 硏究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硏究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硏究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硏究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95-10 김정일 體制下의 軍部 役割: 持續과 變化
95-11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統一情勢分析〉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 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91-02 고르바쵸프 權力의 現況과 展望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91-11 옐찐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7~9)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 地域協力의 發展方向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 改善을 中心으로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94-10 韓·러關系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94-18 美國의 中間選擧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1~3)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會議 結果를 中心으로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廢棄의 意味와 評價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世界主要事件日誌〉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年例情勢報告書〉

91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關係
94-02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4~1995

〈論 叢〉

統一硏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硏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硏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硏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硏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硏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硏究論叢 第4卷 1號(1995. 8)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1995)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3)
한미 WORKSHOP : US-Korean Relations at Time of Change
(1994)

〈資 料〉

92-01 統一 및 北韓關聯 硏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 北韓關聯 硏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硏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통일문화시리즈〉

94-01 統一文化硏究(上)
94-02 統一文化硏究(下)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研究報告書 95－15

發行處 民 族 統 一 研 究 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7－9288, FAX : 232－5341
印刷處 웃고문화사 전화 : 267－3956
印刷日 1995년 12월 일
發行日 1995년 12월 일